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경기도교육청 2009년도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진영종

공동연구자

김지수

박경태

오혜원

하승수

연구보조원

장계순

보조원

유윤종

2009년 11월 30일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방법

II. 선행연구

1. 학생인권 연구
2.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현황
3. 참고한 기준

III. 인권실태와 인권의식 설문조사

1. 조사기간
2. 설문지 구성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4. 설문지 분석결과

IV. 소수자학생 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
2. 장애학생

3. 이주민·다문화가정 학생
4. 성소수자 학생
5. 한부모 가정 학생
6. 운동선수 학생
7. 빈곤 학생

V. 학생인권조례 비교연구와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국내외 모델 비교 연구

1. 학생인권 관련 조례 비교연구
2. 인권구제기구의 모델

VI.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열개

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의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야 할 핵심적 내용

첨부

1. 초등학생용 설문지
2.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3. 교사용 설문지

4. 학부모용 설문지
5. 인터뷰 녹취록 정리
6.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예시)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인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실천된다는 보장은 없다. 인권침해가 일어날 개연성은 항상 있으며, 또 인권 실천 과정에서 긴장과 대립·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의 인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특별히 모색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99%를 넘고, 중·고등학생들이 하루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에서 학생 인권문제는 학교의 인권문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과거에 비해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학생인권 수준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여전히 입시준비를 위해 기본적 권리를 유보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의식과 스스로의 인권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기성세대 및 사회의 대한 이들의 저항도 생겨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의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연구자 간의 집중 워크숍과 공청회를 통해 종합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의 실태와 인권의식의 분석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접근과 풍성한 내용을 포함시켜 한 학생의 배제됨 없는 모든 학생의 인권을 포함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영역은 선행연구 및 이론적인 문헌연구 등을 통해 학생 인권 조례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경기도 학생들의 인권 관련 실태 및 인권의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최근 특목고 입시 전형에서 떨어진 한 중학생이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성적이 1학기 때보다 떨어졌다면 이를 비관해 목을 매 자살한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유서에는 “세상이 너무 싫어 먼저 갑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금지됐던 29개 조항을 폐지하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세워지면서 0교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의 부활로 학생들의 기본 건강권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중학교설립 및 일제고사 부활, 우열반 운영으로 학생들을 오로지 성적으로만 평가해 줄 세우는 성적지상주의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한 인권 침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으로 지난 4월 19일 촛불문화제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구호가 되기도 했지만 국제중학교와 일제고사 등이 현실화되면서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5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세는 2005년 29.9%에서 2007년 41.3%로 2년 새 무려 10%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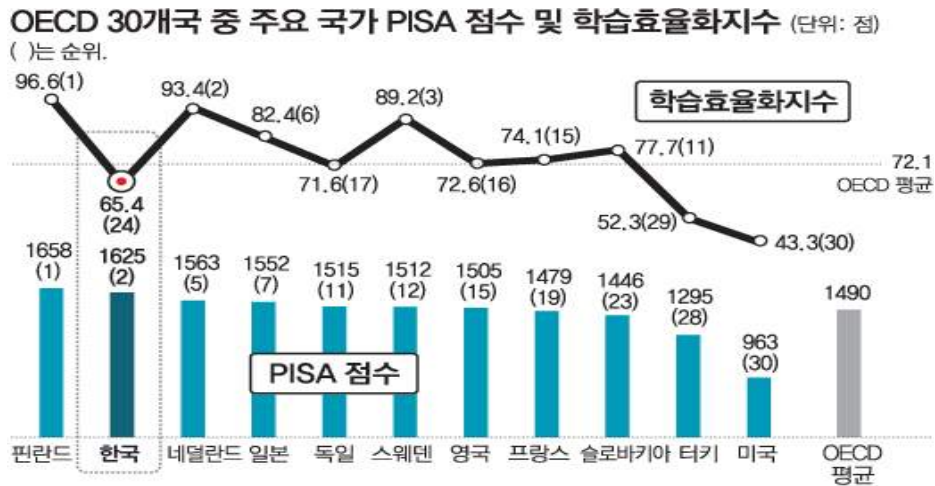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박장애(F42)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1만 1000천명, 2005년 1만 3000, 2008년 1만 8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4년 동안 40%이상(연평균 12%)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된다.

최근 4년 동안 연령대별 실진료환자수 증가율은 10대에서 최고를 보인 후 30대까지는 낮아지다가, 40대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했는데, 특히 10대 청소년의 실진료환자수가 2005년(1824명)보다 2008년(2878명)에는 58%증가해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최근 입시경쟁에 따른 부모의 과잉통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학습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학생들의‘학습효율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은 24위로 나타났다. ‘학습효율화지수’는 국제적인 학업 성취도 지표인 PISA점수를 학습시간으로 나눈 것으로‘PISA 2006’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30개국 중 종합 2위에 과목별로 읽기 1위, 수학 2위 등 상위권이였다.

그러나 학습효율화지수에서는 OECD 평균 72.1점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과도한 투자와 대학진학형 공부 등‘저효율성’학습은 결과적으로 경쟁력 약화와 창의성 부족

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08년 10월 31일자

성적과 돈이 동일시되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다양하고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보기도 전에, 즐겁게 뛰노는 것이, 또 열심히 땀 흘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지도 못한 채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에 떠밀려 기계적인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라는 어른들의 ‘행복론’에 길들여진 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숫자노름을 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는 아이들의 소박한 꿈도 허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일등만이 존재할 뿐 나머지 숫자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일등 아닌 나머지 아이들의 삶을 ‘낙오자’ 내지는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재의 교육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것 같다. 인권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반인권적 삶을 거부할 권리가 있듯이 학생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학생인권과 학생인권 속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일은 한치의 양보도 멈춤도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현실 자체를 인권친화적으로 바꾸는 주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학생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대안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의식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소수자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가와 당사자 학생들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의 국내외 비교연구 및 학생 보장 및 침해구제 기구의 국내외 모델 비교연구를 통한 이론적 논의를 한다.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담아야 할 학생인권의 목록을 작성하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열개를 완성한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제안한다.

나. 연구범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법체계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권이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중에는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법인체이고, 인권의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규정하는 조례는 마땅히 지역 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학생인권을 다루는 조례로 한정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단일한 법체계를 규정하는 문서로서의 개념을 넘어 학생을 둘러싼 제반의 환경을 다루는 규범이 되어야 하므로, 학생 인권과 관련한 전반의 환경이 명문을 넘어 학생의 환경을 둘러싼 현실적인 공간, 즉 학교 내의 학생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내의 여러 상황들을 두루 다루고자 한다.

한편, 조례는 현실적 규범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 과정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례내용의 열개를 만드는 과정에 학생인권의 제주체들, 즉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학생인권 규범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관련한 주요 쟁점과 대안에 대한 인권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자료를 고찰하고, 학생인권조례 비교연구를 위한 관련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나. 전문가 자문

학생 관련한 산·학·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방향 설정 및 조사도구 개발, 조사 수행,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수시로 연구자문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개발에 있어 소수자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가와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다.

다. 설문지 개발을 위한 학생 대상의 pretest 실시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학생들이 부딪치는 인권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학생그룹을 대상으로 pretest를 실시한다.

라. 설문조사

경기도 초등학생 934명, 중·고등학생 1,086명,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학부모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식은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입력값이 자동으로 코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입력 된 설문내용을 SPSS Window Version 17.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빈도

분석을 기초로 하였으며,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마. 심층면접 조사

심층면접은 4집단(학생, 교사, 학부모, 관련 단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 내용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생인권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일반 학생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와 소수 청소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조사하고, 경기도의 교육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와 대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녹음을 기본으로 녹취하여 풀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우선 집단 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세부 질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집단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각 집단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실태와 대안이 많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시

학생인권조례에 담아야 할 학생인권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제안한다.

II. 선행연구

1. 학생인권 연구

본래 학생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는 학교제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은 학교제도가 사회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새롭게 창출된 사회적 집단으로 학교의 존재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논리적으로는 학생을 전제로 한 직업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학생의 존재는 학교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학생은 교육주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생활 속에서 학교 및 교사에게 부여된 권력이나 권위에 의해 억압과 간섭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행사되는 학교 및 교사의 권력과 권위는 학생들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규정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헌법적 권리주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학교나 교사로부터 부당하게 제한 받거나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긍하도록 ‘조건화’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학교의 관행과 제도에 익숙해지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고, 대중 순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은 이런 맥락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부재의 학교현실 속에서의 학생인권은 천기누설처럼 비밀스런 존재다. 왜 이렇게 학생인권은 논의되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어왔을까? 이는 학생을 삶의 주체나 헌법적 권리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피교육자’, ‘약자’, ‘지시를 따라야 할 자’, ‘보호의 대상’, ‘미성숙한 자’ 등으로 인식하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연구가 삶의 질적인 측면 보다는 관리와 효율

성,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관계자들이 ‘학생인권’ 자체를 교권에 대한 도전이나 교권 침해로 인식하면서 사제 간의 대립과 갈등의 기본 원천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문화 요소로 인해 학교문화의 권위주의, 위계주의, 획일주의가 학교 내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학생인권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들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관련 이슈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학생인권 관련한 진정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를 받은 학생이 직접 진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두발제한과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학교폭력과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 성별, 장애, 학생/비학생 등과 관련한 차별문제, 부당한 징계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이들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소지 내용에 대한 개선, 교과서의 반인권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등 학교와 교육제도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한 권고도 있어왔다.

<표Ⅱ-1>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번호	내용	비고
----	----	----

1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	2002.9.9.
2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 내용관련직권 수정권고	2002.10.28.
3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관한 개선권고	2003.5.12.
4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2003.5.21. 03진인 26 결정
5	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2003.9.15. 03진차127 결정
6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2005.3.14. 04진인 3256
7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표명	2005.3.25
8	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2005.6.27. 05진차204외 2건
9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5.8.31. 05진인 1055
10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2005.9.28. 05진차 517
11	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	2005.9.28. 05진차 250
12	여학생 생리시 결석관련 인권침해	2005.12.26.
13	퇴학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2006.5.18. 06진인136
14	성별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차별	2006.5.29. 06진차 37
15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	2006.6.28. 06진인 1030
16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2006.11.28. 06진차 449
17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6.12.11. 06진차 411
18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 침해	2007.1.15. 06진인 3067
19	학생간 폭행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2007.1.15. 06진인 943
20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1.31. 06진인 2030

21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7.3.28. 06진차 418
22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4.16. 06진인 836
23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2007.9.7. 07진인 898
24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8.1.28. 08진차 13
25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2008.5.19. 07진차 1031
26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	2008.5.19. 07진차 459
27	학생 수업 중 경찰조사 등에 의한 인권 침해	2008.7.3. 08진인 1739
28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에 의한 인권 침해	2008.9.25. 07진인 4150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주요 결정례 검색.정리

최근 들어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대거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해 학생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학생의 인권의식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결정됨에 따라 그 동안 학교에서 당연시 되었던 성적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에 있어 교육은 국가가 부과하거나 베푸는 ‘수혜’나 ‘의무’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나 ‘공공서비스’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의 획득은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인권 실현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학생이 교육 소비자 내지는 교육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학생이라는 신분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교육상황에서의 학생 인권의 침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학생인권이란 광의의 의미에서는 ‘학생이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 볼 수 있으며, 협의의 의미로는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자유권 영역에는 기본적인 자유의 권리가 포함되고, 복지권 영역에는 신체 보존권 및 최소목적 행위권, 목적증가 행위권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권에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화받지 말아야 할 권리’, ‘학생들의 교육적 흥미에 영향을 끼칠 의사결정(교육과정 편성, 규칙 제정)에 참여할 권리’, ‘공부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부당하게 손해 받지 않을 권리(차별, 성적 고통 등)’, ‘삶을 보장받을 권리’,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사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문제는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풍토로 인해 억압적인 학교규율과 학내의 폐쇄적 의사 소통망, 교사의 ‘권위에 의한 지배 방식’ 등과 같은 교육 내적 요인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문제들에 대한 대안모색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학생들의 교육현황

경기도는 평준화 적용지역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과 비평준화 지역 의정부, 광명, 안산, 남양주, 구리, 용인 등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불공평한 교육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우열반, 0교시, 야간자율학습,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2008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비평준화 적용지역 학교 가운데 54%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비평준화지역에서는 관내 타 학교로 전학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적으로 학생 관련 데이터와 자료들이 조사되어 축적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거주 학생들의 욕구와 문화 변화추이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통계자료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지만 많은 부분은 관련한 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 전국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경기도의 청소년정책 또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경기도 학생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있어오지 못했으며, 31개 시군구라는 광범위한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경기도 지역마다의 상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지고 관찰되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교육환경은 어떤 ‘광역시, 도’ 보다도

열악하고 격차가 크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의 삶과 인권을 침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경기도의 학교현황

경기도 내에는 중등학교가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하여 516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243개와 전문계 고등학교 124개가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243개 중 15개는 과학고,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로 공립이 6개, 사립이 9개다.

과학고등학교는 수원시에 경기과학고등학교 1개가 있고, 체육 및 예술고등학교는 경기체육고등학교, 경기에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고양예술고등학교 등 5개가 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9개로 수원, 성남, 동두천, 안양, 과천, 김포, 고양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 용인시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와 의왕시에 명지외국어고등학교가 있다.

<표Ⅱ-2> 수도권 중·고등학교 현황

시군	중등학교				고등학교(일반)				고등학교(전문)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학 교 수	학 급 수	학 교 수	학 급 수	학 교 수	학 급 수	학 교 수	학 급 수	학 교 수	학 급 수	학 교 수	학 급 수
서울 특별시	110	2,606	257	8,302	140	5,436	77	2,824	59	1,591	19	676
인천 광역시	11	162	108	2,930	21	659	54	1,605	10	279	20	591
경기도	87	1,396	429	11,518	78	2,420	165	5,724	56	1,518	68	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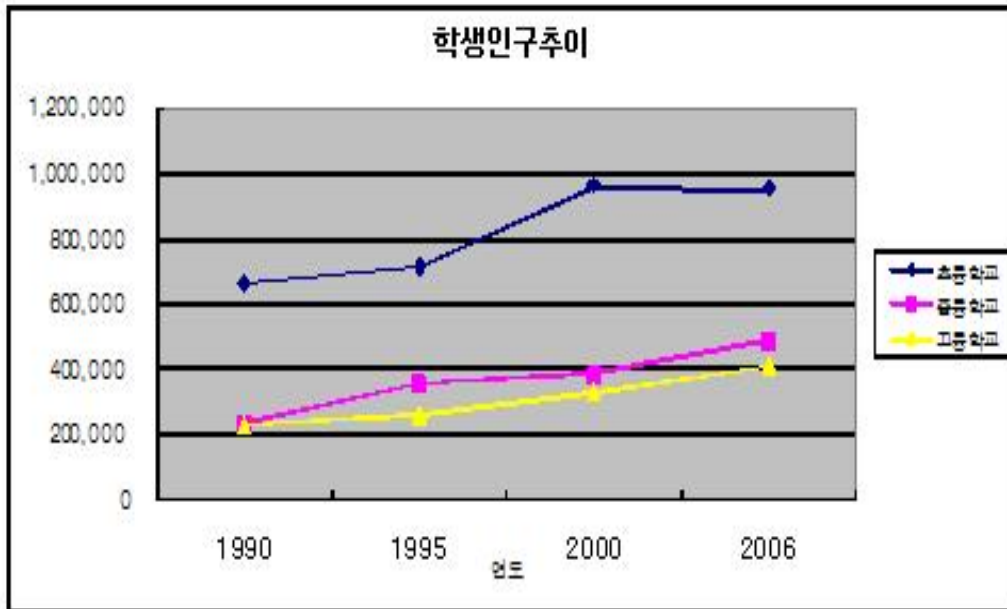
※경기도 교육청 통계자료 참조

경기도의 학생 수는 2006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 인구가 1,853천 명으로 2000년 1,673천 명보다 10.8% 증가하였다. 초등학생 수는 2000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중·고등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대비 학생 수의 비율은 2000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00년 이후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23.6%로 학생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군 내에서 인구 대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과천시로 인구 천명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고양시, 구리, 안양시를 중심으로 학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학생인구추이



※ 경기개발연구원GRI웹뉴스 2008년 6월 23일자 지도로 보는 경기도

2006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19.4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7.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인천광역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2.8명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13.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울산광역시가 16.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6.3명, 전라남도가 가장 적은 11.9명이다. 초·중·고교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나타났고,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3> 경기도 학생인구

구 분	1996	2001	2006	2006-2001
· 학생인구(천명)	1,700	2,076	2,335	259
· 인구대비 학생인구비율(%)	20.7	21.7	21.0	-0.7
· 학생인구중 여학생비율(%)	45.7	45.4	45.3	-0.1
- 초등학교	48.2	47.7	47.8	0.1
- 중학교	48.7	48.4	47.7	-0.7
- 고등학교	49.4	48.6	48.0	-0.6
- 대학교	32.0	35.7	36.1	0.4

※경기도 교육청 통계자료 참조

2006년 학생인구는 2,335천명으로 2001년 2,076천명보다 12.5% 증가했다. 학생인구중 여학생 비율은 절반이하인 45.3%이며 해마다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966천명, 중학교 487천명, 고등학교 385천명, 대학교 496천명이며 학교급별 여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0.1%포인트, 대학교가 0.4%포인트 증가를 보인 반면 중·고등학교 여학생 비율은 감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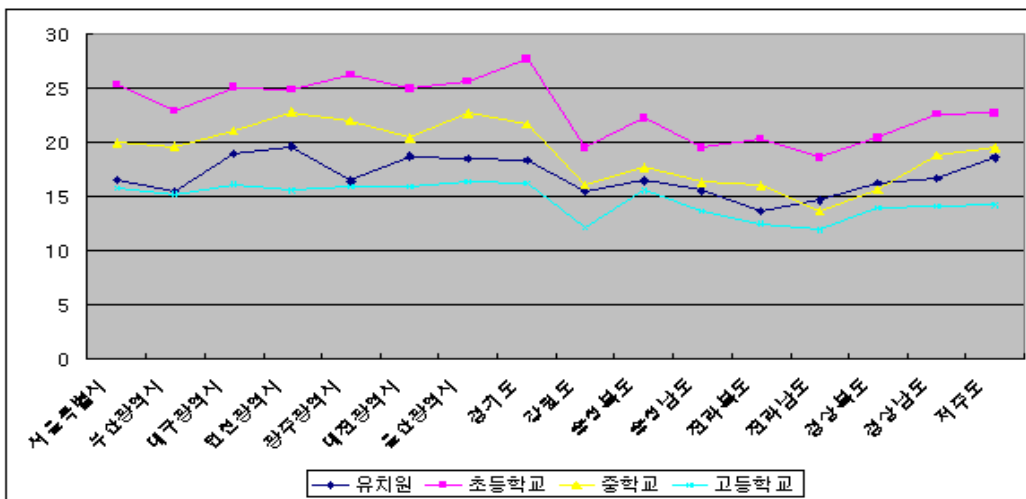
<표Ⅱ-4> 경기도 교육 인적 자원

구 분	2001	2006	2006-2001
· 교원1인당 학생수(명)			
- 초등학교	34.0	27.7	-6.3
- 중학교	24.0	21.7	-2.3
- 고등학교	19.9	16.3	-3.6
- 대학교	64.3	55.2	-9.1

※경기도 교육청 통계자료 참조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있어 많이 줄었지만 대학교의 경우는 증가하다 줄어들 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1991년도에 비해 10명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전국의 학생추이



※경기개발연구원GRI웹뉴스 2008년 7월 7일자 지도로 보는 경기도

2006년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 진학자는 83.6%로 2001년 67.7%보다

15.9%포인트 높아 졌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는 84.9%, 여자 82.2%로 남자의 진학률이 높고 2001년과 비교하면 남자 14.0%포인트 증가, 여자 17.8%포인트 증가했다. 계열별로 구분하면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88.5%, 실업계고등학교는 72.6%이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표 II-5> 2006년 시도별 진학률

구 분	전국	상위시도	...	하위시도
· 중학교→고등학교	99.8	인천99.9, 부산99.9, 울산99.8	광주99.7, 대전99.6, 제주99.6	
· 고등학교→고등교육	82.1	제주94.3, 울산89.9, 경남89.4	전북83.2, 전남82.7, 서울69.4	
- 남자	82.9	제주93.8, 울산91.0, 경남90.0	전남83.8, 전북83.3, 서울69.6	
- 여자	81.1	제주94.9, 경남88.7, 울산88.6	충남81.9, 전남81.6, 서울69.1	
구 분	경기	상위시군	...	하위시군
· 고등학교→고등교육	83.6	수원90.1, 여주89.1, 이천89.0	파주76.0, 가평76.0, 동두천 55.0	
- 남자	84.9	이천93.1, 여주92.7, 오산92.4	파주76.4, 가평75.9, 동두천 60.5	
- 여자	82.2	시흥90.1, 군포90.1, 연천87.9	오산75.2, 화성74.1, 동두천 49.3	

2006년 고등학교 졸업자(대학진학자 제외)중 취업률은 48.4%로 2005년 48.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43.4%, 여자 52.9%이고, 계열별로 구분하면 일반계고등학교 11.7%, 실업계고등학교 83.3%이다.

<표 II-6> 경기도의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단위: %)

구 분	자녀 대한 학교에 만족도			불만족한 경우 불만스러운 점										
	만족	보통	불만	학교 교육 시설	학 교 규 율	잡 부 금	학 부 모 치 바 람	교 육 방 법	교 육 수 준	교 사 의 자 질	생 활 지 도	학 교 주 변 경 관	학 생 들 의 분 위 기	기 타
2001	43.0	43.5	13.5	15.6	11.6	2.7	6.8	16.5	12.4	11.6	3.9	9.3	4.4	5.2
2002	43.5	44.8	11.8	21.8	13.0	1.9	5.7	14.8	13.1	7.1	3.7	7.5	4.2	7.1
2003	46.6	40.8	12.5	17.1	6.3	2.3	7.4	17.4	16.3	10.2	3.9	6.5	4.7	8.0
2004	45.9	45.4	8.8	15.1	7.3	1.5	7.7	19.5	12.8	12.5	3.5	5.8	5.2	9.2
2005	47.0	42.8	10.2	17.6	8.6	2.9	7.5	13.2	13.0	11.1	3.9	8.4	2.9	10.9
2006	46.1	43.7	10.2	18.1	5.5	1.8	4.4	17.4	18.9	10.9	4.1	6.9	4.5	7.5
2007	47.7	43.2	9.1	23.2	7.9	0.8	6.0	13.6	11.6	14.8	5.4	8.9	1.1	6.6

※ 경기도 통계자료 참조

<표 II-7> 경기도의 과외를 받은 학생의 비율(단위 : %)

구 분	과외를 받은 학생 비율	과외를 받은 이유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 비율	과외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					
		교 수 의 자 녀 수 보 다 아 서	학 교 수 업 을 잘 따 라 가 지 못 해 서	남 들 보 다 앞 서 기 위 하 여	남 들 이 부 하 까 하 지 않 아 서	모 르 는 것 을 보 는 사 이 에 서	기 타		교 수 만 로 충 분 하 지 않 아 서	경 제 적 사 유	자 녀 가 원 하 지 않 아 서	남 들 에 의 하 수 없 이 기 위 하 여	마 땅 한 생 이 학 을 지 지 해 지 못 해 서	기 타
2001	70.0	6.2	18.8	44.7	16.6	7.4	6.2	30.0	18.5	56.4	18.5	1.8	1.5	3.3
2002	75.9	4.3	16.6	50.4	14.9	7.2	6.6	24.1	21.4	52.4	18.4	1.7	2.3	3.7
2003	76.8	4.1	15.4	47.1	15.6	8.1	9.8	23.2	15.8	58.7	17.9	1.9	1.4	4.4
2004	76.8	4.4	12.9	51.6	13.3	8.1	9.8	23.2	15.3	60.3	18.8	0.9	1.4	3.4
2005	73.9	4.2	15.1	46.5	13.3	9.0	11.9	26.1	13.2	63.3	14.9	1.8	1.6	5.3
2006	76.0	5.2	12.5	54.2	11.4	7.4	9.3	24.0	12.8	62.5	17.2	1.3	0.8	5.5
2007	80.7	4.6	11.4	55.4	13.3	8.7	6.6	19.3	13.0	64.6	16.3	1.6	1.6	3.0

※ 경기도 통계자료 참조

경기도에서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01년에 비해 2007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과외를 받는 이유로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 받는다는 학생의 비율이 10%증가했으며, 나머지 이유는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2001년에 비해 2007년 11%감소하였으며, 과외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받지 않는다가 9% 정도 상승했으며, 나머지는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Ⅱ-8> 경기도의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 및 희망국가(단위 : %)

구분	의향 있다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있을 경우 주된 이유					유학희망국가					의향 없다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없을 경우 주된 이유				
		한국의 교육문제점	국제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어학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보내니까	기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기타		한국교육만으로는 충분하므로	경제적사정으로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자녀교육에 별도로 되지 않아서	기타
2004	39.3	29.3	37.3	31.4	0.2	1.8	31.7	7.3	30.4	22.1	8.5	60.7	26.5	44.1	5.4	17.6	6.4
2005	33.8	25.7	35.9	36.0	0.6	1.9	33.1	6.8	30.4	21.9	7.7	66.2	31.4	29.4	4.2	15.7	19.3
2006	42.7	31.9	29.5	36.9	0.6	1.2	31.0	7.1	33.0	23.4	5.5	57.3	25.0	42.7	6.6	14.1	11.8
2007	35.1	25.6	35.1	37.6	0.4	1.3	34.2	5.4	31.9	17.7	10.8	64.9	22.6	34.9	5.5	25.1	11.9

※경기도 통계자료 참조

경기도에서 자식을 조기유학 보낼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조기유학을 보내는 주된 이유는 어학공부를 시키기 위해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폭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자식을 조기 유학 보낼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는

소폭 증가하다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자녀교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였다.

<표Ⅱ-9> 경기도의 가구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단위 : 천원)

구분	가 구			학 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용도별 교육비		월평균 교육비	용도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2003	469.3	164.4	304.9	281.7	98.7	183.0
2004	483.6	165.8	317.8	288.8	99.0	189.8
2005	513.4	150.1	363.3	305.1	89.2	215.9
2006	594.7	177.4	417.3	351.5	104.9	246.7
2007	620.2	184.2	436.1	387.6	115.1	272.5

※경기도 통계자료 참조

경기도의 가구별 월평균 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교육비 보다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Ⅱ-10>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이동현황

구분	유예 및 면제자						재입 및 편입		사망		유학·이민		유급		
	합계		유예자		면제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2007	총계	8,442	3,851	8,385	3,830	57	21	3,365	1,612	95	31	3,503	1,620	14	3
	공립	8,437	3,849	8,380	3,828	57	21	3,363	1,611	95	31	3,499	1,618	14	3
	사립	5	2	5	2	-	-	2	1	-	-	4	2	-	-
2006	총계	6,182	2,805	6,098	2,768	84	37	2,753	1,299	4	35	3,279	1,538	9	5
	공립	6,146	2,790	6,062	2,753	84	37	2,753	1,299	84	35	3,275	1,538	9	5
	사립	36	15	36	15	-	-	-	-	-	-	4	-	-	-

※ 경기교육통계연보 2006. 2007년도 참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를 가지 못하고 유예되어 있는 아동이 8,385명으로 2006년에 비해 2천명 이상 증가했으며, 유급자도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다.

재입 및 편입학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유학민 이민학생의 숫자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

사망자수는 2006년 84명에서 2007년 95명으로 9명증가해 초, 중, 고등 학생 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사망 이유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1> 경기도 중등학교 학생이동현황

구분	유예및면제자						재입및 편입		사 망		유학·이 민		유 급		
	합 계		유예자		면제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2007	총계	5,351	2,512	5,269	2,479	82	33	2,010	920	56	33	1,340	629	45	20
	공립	4,949	2,321	4,882	2,291	67	30	1,861	858	48	26	1,288	600	25	10
	사립	402	191	387	188	15	3	149	62	8	7	52	29	20	10
2006	총계	4,057	1,897	3,939	1,833	118	64	2,409	1,083	54	19	1,269	591	39	13
	공립	3,698	1,732	3,588	1,673	110	59	2,281	1,033	49	17	1,221	571	33	11
	사립	359	165	351	160	8	5	128	50	5	2	48	20	6	2

※경기교육통계연보 2006. 2007년도 참조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면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퇴학이 없어졌으며, 이로 인해 중학교의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2006년 경기도 중학교학생 중 유예자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은 3,939명에서 5,269명으로 2천여 명에 가깝게 증가했으며, 유급청소년도 39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재입 및 편입생은 2006년 2,409명에서 2007년 2,01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유학 및 이민학생은 2006년 1,269명에서 2007년 1,340명으로 80여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숫자도 2명 정도 증가한 숫자며, 고등학생보다 많은 56명으로 나타났다.

<표Ⅱ-12>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이동현황

구분	학업중단자														사망		유학·이민		재입학(복학)자		유급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2007	총계	3,086	1,222	294	137	728	301	37	8	1,038	378	989	398	39	18	2,047	1,004	1,006	469	10	6	
	공립	2,142	816	197	81	454	178	24	6	698	250	769	301	28	13	1,383	660	643	300	1	1	
	사립	944	406	97	56	274	123	13	2	340	128	220	97	11	5	664	344	363	169	9	5	
2006	총계	2,232	900	234	103	496	185	20	10	654	249	828	353	28	9	1,937	944	861	408	3	2	
	공립	1,436	577	151	72	335	117	10	6	396	159	544	223	24	7	1,354	633	573	265	1	1	
	사립	796	323	83	31	161	68	10	4	258	90	284	130	4	2	583	311	288	143	2	1	

※경기교육통계연보 2006. 2007년도 참조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중단자가 2006년 2,232명에서 2007년 3,086명으로 1천 명 정도 증가했으며, 부적응과 가사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기타 유학과 이민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들도 소폭 증가했으며, 재입학(복학)자의 숫자도 소폭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유급자는 3명에서 10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사망자 수도 2006년 28명에서 2007년 39명으로 10명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13> 경기도 실업고 학생이동현황

구분	학업중단자												사망		유학·이민		재입학 (복학)자		유급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2007	총계	3,459	1,513	262	129	1,231	514	139	57	1,399	619	428	194	31	11	177	102	292	114	5	-
	공립	2,206	802	218	98	848	335	69	23	771	236	300	110	19	7	98	46	176	60	5	-
	사립	1,253	711	44	31	383	179	70	34	628	383	128	84	12	4	79	56	116	54	-	-
2006	총계	2,594	1,080	75	33	711	275	78	27	1,115	498	615	247	22	7	156	75	388	153	10	3
	공립	1,534	574	44	16	456	175	28	8	642	254	364	121	13	4	57	20	244	82	8	3
	사립	1,060	506	31	17	255	100	50	19	473	244	251	126	9	3	99	55	144	71	2	-

※경기교육통계연보 2006. 2007년도 참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자수가 2006년 2,594명에서 2007년 3,450명으로 900여명 증가했으며, 학업중단 이유로는 부적응과 가사 때문으로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사망, 재입학, 유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학과 이민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 고등학교 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숫자와 학생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자수는 더 많았다.

<표Ⅱ-14> 경기도 범죄발생건

구 분	1995	2000	2005	2005-2000
· 범죄발생건수(건)	204,439	281,651	341,952	60,301
- 인구천명당 범죄발생	26.2	30.4	31.5	1.1
- 경찰관1인당 범죄발생	23.6	24.0	26.6	2.6
· 소년범죄발생건수(건)	16,549	21,678	15,370	-6,308

※경기도 통계자료 참조

2005년 범죄발생건수는 341,952건으로 2000년 281,651건보다 21.4% 증가하고 인구천명당 발생건수는 31.5건으로 2000년 30.4건보다 1.1건 증가했다. 범죄발생건수 중 소년범죄는 15,370건으로 전체범죄 발생 중 4.5%를 차지하며 외국인범죄는 2,322건으로 0.7%를 차지했다. 범죄유형별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폭력범의 9.8%, 절도범의 9.2%가 소년범죄로 나타났다. 2005년 범죄피의자수는 376,542명으로 연령층을 보면 41-50세 31.1%로 가장 높고 36-40세 15.7%, 31-35세 13.2%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나. 일반 학생 인권의 현주소

2004년 46일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강의석 군은 “교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예배선택권을 보장받았고, 2005년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집회에 축각을 곤두세우면서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던 “No-Cut”운동은 학생 인권을 사회에 전면적으로 부각시켰고, 동시에 학생들의 세력화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두려움 서린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2004년 초 교육부의 0교시 강제 보충, 자율학습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학교까지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 강제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것으로 발생한 강제적 보충, 자율학습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0교시 폐지운동으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그 결과 교육당국과 교육단체들은 0교시 금지, 야간 보충수업 금지, 야간 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전면 보장 등을 합의하면서 4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수업 및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이런 합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가 원하다’, ‘성적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합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현상이 확산되었고, 실제로 상당수 고교에서는 0교시를 없애는 대신 8,9교시를 신설해 운영하는가하면, 반 강제적으로 보충수업 희망원을 받아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학부모의 암묵적 동조 아래 자행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지난 1월 8일부터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폐지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원운동이 시작한지 5일째인 12일 오전 9시 현재, 모두 1206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 인 것 같다.

이 처럼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문 안에서 학생만 아는 다시 원점으로 유턴하고 있다.

세계 IT기술력 1위, 세계 선박건조기술 1위, 선박전조량 1위, 자동차 생산량 2위, 인터넷 보급율 1위, 휴대폰 보급률 1위 등 세계에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80여개가 되지만 정작 2006년 국가별 남녀불평등 상황을 순위로 매긴 성 격차 지수는 115개국 가운데 92위로 하위에 머물렀다. 또한 교육열 세계1위, 입시지옥을 만들었음에도 세계 100

대 대학에 대한민국의 대학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생활 영역에서 측정된 20가지 인권침해 문항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했던 인권침해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참고문헌에 있는 조사자료 참조).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내용은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을 교실과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것으로 조사대상 학생의 81%가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겨울에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 교복선택의 폭이 좁은 것, 휴식이나 이동시간에 핸드폰 이용시 선생님께 혼나거나 압수, 가격에 비해 급식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한 것,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의 순으로 50%~62%의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학교에서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간부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것, 성적 때문에 차별 받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를 30%~49%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끝으로 소지품 검사, 외모로 인한 놀림이나 차별, 선생님의 체벌이나 폭언, 교내 동아리활동 참여의 권리가 없는 것, 성적계시와 같은 인권침해를 10%~20% 내외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성, 교급, SES, 지역, 성적,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차를 보이는 인권침해 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철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두발규제, 교복선택의 폭이 좁은 것, 외모 때문에 놀림 받는 것, 성적 때문에 차별 받는 것, 급식 메뉴나 반찬이 다양하지 못한 것,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체벌이나 선생님의 폭언과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겨울에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 성적을 이유로 차별 당한 것, 급식메뉴나 반찬이 다양하지 않은 것,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탈의실이 없는 것, 두발규제, 교복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소지품 검사 받는 것,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체벌과 같은 고충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중학생은 측정된 거의 모든 인권침해 문항에서 고등학생보다 경험도가 낮았지만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정도는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 학생들이 화장실 온수, 양호실, 냉난방, 급식 등 학교시설관련 불편에서 오는 인권침해의 경험도와 학교체벌관련, 그리고 성적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관련 인권침해 경험도가 중류나 상류층 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낮았다. 이를테면 서울 거주 학생들은 광역시, 중·소도시 거주 학생들보다 학교시설관련, 복장관련, 그리고 성적으로 인한 체벌이나 자율학습의 선택권 등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낮았다. 한편, 군·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내용에 있어서 서울 거주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험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광역시나 중·소도시 거주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련 인권침해

의 경험도가 서울이나 군·읍·면 거주 학생들보다 대체로 높다.

학교성적에 따라 분류된 하위집단들은 성적과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상위 40% 이하의 학생들이 그 이상의 학생들보다 성적 공개로 인한 수치심,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등의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다르지 않았으나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몇 가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교내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학교시설과 관련된 불편함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정도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화작업이 지속적으로 데이터화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들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기관으로 학교를 지목하고 교사의 폭언, 체벌, 차별 등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한국의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군사부일체라는 교육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교교실에서는 비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인권을 배려하는 행동양식을 가르치는 보금자

리가 되어야만 한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먼저 습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 소수자학생인권의 현주소

소외자학생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학생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주류 학생에서 소외된 학생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

근로 학생의 인권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행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학생을 공식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 그리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노동관행이 바뀌지 않는 학생에 대한 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장애 학생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시기에 있는 장애인의 절실한 권리인 학습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직업선택권, 직업재활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학생은 북한이탈 주민이면서 학생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 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언어 등으로 주변 다른 학생들에게 쉽게 따돌림을 당한다. 북한이탈 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여러 자원을 욕구에 맞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체계적으

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이주민이면서 학생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외래 이주민은 현재 116만 명으로 집계했고, 이중 30만 명 정도가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단체 등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정부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단속에 걸려 부모와 함께 추방당하는 아이들이 늘거나 부모와 생이별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비록 작지만 점점 모아지고 있다.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에 허용하게 됐다. 그러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해당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부모가 거주지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서는 거주 지역 내 다른 학교에 입학을 권유하거나 입학 허가를 거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명시적인 교육접근권 보장 없이는 초등학교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주아동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2002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의무교육화로 퇴학이 사라졌다. 대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무단결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질병, 장기입원)가 있을 경우, 제29조에 의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자의 경우 정원 외 관리로 학적을 처리해 진급대상에서 제외시켜 다음해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보류하는 ‘유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일종의 유급제도인 셈이다.

유예제도로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잦은 결석이나 소위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지 않는 방법으로 장기결석 70일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유예된 아이들이 갈 곳은 없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곱지 않은 어른들의 시선은 이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든다. 주로 PC방에서 게임에 몰입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무의도식하면서 하교시간까지 보내다 학교가 끝날 무렵 학교근처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노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중학생이기 때문에 알바 써주는 곳도 없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전동기 면허증도 만 16세가 되어야 딸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일도 사실은 불법이다. 집에서도 대부분 내놓은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궁핍한 일상을 보내야한다. 그러다 보니 돈을 구하기 위해 초등학생 뺑뺑이, 차털이, 가게에서 훔치기 등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경찰에 붙잡혀 보호감찰 6개월에서 2년까지 그러다 소년원까지 가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력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원치 않는 일에 개입되기도 한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하면서 술과 게임, 유희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든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매일 매일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학교에 복학했을 때도 나타난다. 같은 학년보다 한살 더 많은 데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또다시 유예되어 거리로 돌아오는 아이들도 많다.

이 아이들의 마음 둘 거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자신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고, 희망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곳, 사람으로 봐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조잘 거릴 수 있는 이들만의 아지트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권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아이들의 삶을 지켜줄 아이들의 거처가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든 인권침해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보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마다 7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이후 유급생 문제가 새롭게 발생되고 있다. 대학이 아닌 취업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57만 명 등 대한민국엔 입시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모든 학생들을 입시생으로 옅아맨 사회 시스템 속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실업계 고등학생들과 탈학교 청소년들...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입시생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세상에 존재하지만 보여 지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배제된 또 다른 청소년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세상과 다시 소통하면서 투명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모든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정책을 언제쯤이면 만나 볼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청소년이 입시생이 아닌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투명인간의 비애 끝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투명인간이어서 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함께 보듬어 안아야 하지 않을까?

2005년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청소년시기를 어떻게든 지나온 사람들이다. 그때의 청소년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때 그 바람들을 더듬으면서 더 이상 투명인간을 재생산해 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소수자학생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연령이 낮은 사람의 인권을 경시해 온 관습까지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특히,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학생의 권리를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사회적으로 성인에 못 미치는 처우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령의 성숙 정도에 상응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소수자 계층은 당사자의 권력이 약하기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변인 집단이 필요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소수자학생의 인권문제와 그 개선점을 조사·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참고한 기준

- 1948 세계인권선언, 특히 26조 교육의 권리
- 1960 유네스코, 교육에서의 차별방지협약
- 1966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 특히 13조 교육의 권리
- 1966 유엔시민·정치적권리규약, 특히 17조 프라이버시, 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4조 아동의 권리
- 1974 유네스코, ‘교육: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권고’
- 197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특히 10조 교육 분야에서의 남녀평등
-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7 ‘아동의 권리’
- 1990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관한 세계 선언”
- 1990 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Riyadh Guidelines) 유엔총회 결의안 45/112
- 1990 자유를 상실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범, 유엔총회 결의안 45/113
- 1990 제1차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국가행동계획’ 개발 약속;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에 관한 세계 선언 및 1990년대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 199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 1993 인권교육 10년, 유엔 총회 결의안 48/127, 비엔나 선언 78-82항에 기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 1996.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
- 1998 유네스코,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본 선언

-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교육의 목적’
-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1 ‘초등교육에 관한 행동계획’
-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2000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 2000 유네스코 Dakar 행동 구조(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우리의 집단적 약속 지키기, 세계 교육 포럼에서 채택
- 2000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0/6)
- 2001 유엔사무총장;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연구 착수, 유엔총회 결의안 56/138
- 200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 200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 (E/CN.4/2001/52)
- 200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
- 2002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기;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 2002.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2/60)
-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청소년의 건강’
-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

- 2003.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3/9)
- 2004 유엔사무총장 세계청소년보고서 2005에서의 권고 (A/60/61-E/2005/7)
- 2004.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4/45)
- 2004.12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 200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 ‘모국 외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처우’
-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체벌과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벌형태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 ‘장애아동’
- 2006.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
- 2006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6/45)
- 200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0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참고문헌

1.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2. 공현 외,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서울:메이데이, 2009
3. 길은배 외.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2001
4. 김영지외,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08

5. 김중섭,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서울: 오름, 2002
6. 박창남·심희기·윤찬영·이찬진.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2
7.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서울: 우리교육, 2000.
8. 사)함께여는 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운영 모형 개발 연구, 2006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9.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연구」. 성공회대학교인권평화센터, 2003.
10. 손승영외,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생각의나무, 2001
11. 안재희, 실업계, 암순이들의 보고서, 서울: 우리교육, 2003
12. 육성철, 세상을 향해 어퍼컷, 서울: 산티, 2008
13.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4.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5. 이용교 외(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서울:인간과 복지.
16.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날다, 서울: 사람생각, 2008
17.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저요 할 말 있습니다, 서울: 시대의창, 2007
18. 정준교,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 아동권리연구, 제6권(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02
19. 정희욱·길은배·김정래(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 진영중 외 8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21. 청소년교육전략21,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2. 하승수. “아동(특히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처
음처럼」 통권 38호 2003년 7-8월.
23.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Ⅲ. 인권실태와 인권의식 설문조사

1.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가. 인터넷설문지

인터넷 설문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초등학생 934명 ② 중·고등학생 1,086명
- ③ 보호자 345명 ④ 교사 586명

나. 심층면접

소수자학생관련 심층면접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심층면접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한부모가정 : 학생, 학부모, 전문가 ② 운동선수 : 학생, 전문가
- ③ 성소수자 : 학생, 전문가 ④ 다문화가정 : 학생, 학부모
- ⑤ 장애인 : 학생, 학부모 ⑥ 빈곤가정 : 학생, 전문가

2. 설문지 구성

가. 초등학생

구분	질문내용
학교에서 평소에 경험하는 사항	성별, 성적, 집안 경제적 조건 등 20개 항목
학교생활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관한 사항	화장실 이용의 불편한 점, 보건실 사용의 자율권 보장 등 21개 항목
총괄적 질문 사항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사항 평소 학교 공부에 대한 생각 정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생각한 정도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학교에서 평소 친구들 사이에 경험한 사항	외모나 신체적 특징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 정도 등 7개 항목
인권교육 관련 사항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켜지는지 정도 선생님 대상 인권교육 실시의 필요성 정도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는 지 여부
일반적 사항	학년/ 성별

나. 중·고등학생

구분	질문내용
두발복장 규제와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	두발규제와 복장규제 관련 규정 유무 두발복장규제 위반시 처벌 유형 소지품 검사 실시 정도와 압수 물건의 종류 휴대전화 소지 금지 여부 압수 된 소지품에 대한 규정 여부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관한 사항과 등학교 시간 관련 사항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 형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동의서 지출 여부와 형태 학교 등교시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입시나 성적, 진로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징계·체벌·폭력에 관한 사항	체벌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정도 직·간접적 체벌경험 사유 교사의 언어폭력 직·간접적 경험 정도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 유무 및 느끼는 정도 학생징계 사유 학교에서 징계 결정시 재심의 신청 여부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학생회 등을 통한 학교운영의 학생참여 정도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 규제 유무 학생회 관련 기구 중학교에 존재하는 기구 학생회 관련 기구 중학생 지도·자문위 기능 유무 동아리 활동의 보장과 지원 유무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어려운 점에 관한 사항	학교에서 차별하는 이유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21개 항목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학교의 전반적인 학생 인권 보장정도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
일반적 사항	학교/ 계열/ 학년/ 성별

다. 교 사

구분	질문내용
일반적 사항	소속 학교/ 남녀공학 여부 성 별 / 근무지역 근속연수
인권교육과 인권연수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실시의 필요성 정도 학교에서 인권교육 실시한 경험 유무 인권교육 실시를 통해 느낀 어려운 사항 교사가 된 후 인권연수 받아 본 경험 유무 연수를 받은 후 변화된 정도 인권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수업/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학생 선도부가 있다면 하는 활동들 선도부 활동에 대한 찬반 유무 선도부를 찬성 또는 반대 하는 주된 이유 학생회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의 필요성 정도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 정도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학생의 참여 필요성 정도 포상규정이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학생의견 반영 정도
체벌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	체벌을 대체할 수단으로 적합한 것 체벌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상벌제도 문제점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학생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징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관련 사항
학교환경 재구성 관련 사항	화장실 청소,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19개 항목에 대한 필요성 정도

라. 학부모

구분	질문내용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 및 징계관련 사항	학생생활관련 규정의 학부모 전달 정도 신상조사카드 작성 내용으로 적당한 것 징계기간(교내봉사) 중 수업 참여 정도 징계시 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이 보장정도
학교생활에서 자녀의 친구들과 관련된 자녀의 경험 사항	자녀가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 정도 자녀가 협박/폭력으로 돈/물건을 빼긴 경험 정도 자녀가 집단폭행을 당한 경험 정도 자녀가 괴롭힘과 따돌림 당한 경험 정도 자녀가 친구들끼리 욕설을 사용하는 정도 자녀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 정도 자녀가 협박/폭력으로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준 경험 정도
학생인권 관련 개선사항 및 정보관련 사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는지 아는 정도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의 내용을 아는 정도
일반적 사항	자녀 소속학교/ 성별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인터넷으로 조사된 설문지의 분석방법으로는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코딩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또한 결과분석에 있어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문항마다 응답한 응답자를 100%로 하여 백분율로 정리하였다.

면접에 응한 면접자들은 총 13명으로 소수자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당사자 학생과 보호자, 해당 활동전문가들을 면접대상으로 선별하여 인터뷰했으며, 본 연구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과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4. 설문지분석결과

가. 설문지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1) 초등학생 일반현황

<표Ⅲ-1-1> 초등학생 일반현황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학 년	5학년	280	30.0
	6학년	654	70.0
	합 계	934	100.0
성 별	남 자	444	47.5
	여 자	490	52.5
	합 계	934	100.0

초등학교 조사대상은 경기도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934명 중 5학년생 280명(30%), 6학년생 654명(70%), 남학생 444명(47.5%), 여학생 490명(52.9%)으로 구분되었다.

(2) 중·고등학생 일반현황

<표Ⅲ-1-2> 중·고등학생 일반현황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소속 및 계열	중 학 교	542	49.9
	일 반 고	520	47.9
	실 업 고	24	2.2
	합 계	1,086	100.0
학 년	1 학 년	304	28.0
	2 학 년	489	45.0
	3 학 년	293	27.0
	합 계	1,086	100.0
성 별	남 자	421	38.8
	여 자	665	61.2
	합 계	1,086	100.0

중·고등학생 조사대상은 경기도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3학년까지의 학생들이었다. 조사자의 일반현황은 전체 1,086명 중 중학생

542명(49.9%), 일반고등학생 520명(47.9%), 실업고등학생 24명(2.2%)으로 나타났다.

학년으로 볼 때의 인원구성은 1학년생 304명(28.0%), 2학년생 489명(45.0%), 3학년생 293명(27.0%), 성별은 남자 421명(93.8%), 여자 665명(61.2%)으로 구분하였다.

(3) 교사 일반현황

교사설문의 경우,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에 참가한 교사는 586명으로 초등학교 재직중인 교사 71명(12.1%), 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285명(48.6%),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230명(39.2%)이며, 성별은 모두 여자교사였다. 또한 재직중인 학교가 남녀공학인 교사는 532명(90.8%), 남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26명(4.4%), 여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는 28명(4.8%)으로 밝혀졌으며, 근무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에 재직중인 교사 152명(25.9%), 공단지역에 재직중인 교사 21명(3.6%), 도시지역에 재직중인 교사 395명(67.4%), 이외에 기타지역에 재직중인 교사 18명(3.1%)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가 0~5년까지인 교사는 179명(30.5%), 6~10년까지인 교사는 107명(18.8%), 11~15년까지인 교사 69명(11.8%), 16~20년까지인 교사 89명(15.2%), 21~25년까지인 교사 102명(17.4%), 26~30년까지인 교사 37명(6.1%), 31~33년까지인 교사 3명(0.7%)이었다.

<표Ⅲ-1-3> 교사 일반현황

구 분		빈 도	유효퍼센트
학 교	초 등 학 교	71	12.1
	중 학 교	285	48.6
	고 등 학 교	230	39.2
	합 계	586	100.0
성 별	남 자	0	0
	여 자	586	100
	합 계	586	100.0
남녀공학여부	남 녀 공 학	532	90.8
	남 학 교	26	4.4
	여 학 교	28	4.8
	합 계	586	100.0
근무지역	농어촌지역	152	25.9
	공 단 지 역	21	3.6
	도 시 지 역	395	67.4
	기 타	18	3.1
	합 계	586	100.0
근속년수	0~5년까지	179	30.5
	6~10년까지	107	18.7
	11~15년까지	69	11.7
	16~20년까지	89	15.1
	21~25년까지	102	17.3
	26~30년까지	37	6.0
	31~35년까지	3	0.7
	합 계	586	100.0

(4) 학부모 일반현황

〈표Ⅲ-1-4〉 학부모 일반현황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자녀가 다니는 학 교	초등학교	33	9.6
	중 학 교	196	56.8
	고등학교	116	33.6
	합 계	345	100.0
성 별	여 자	159	46.1
	남 자	186	53.9
	합 계	345	100.0

학부모의 설문은 경기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은 전체 345명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3명(9.6%),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96명(56.8%),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116명(33.6%)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186명(53.9%), 여자가 159명(4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초등학교 분석결과

학교에서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20개 문항으로 나누어 그 경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생님은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검사하신다’ 566명(60.6%)으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은 학급에서 좋지 않

은 일이 일어나면 단체로 벌을 주신다' 429명(45.9%),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은 벌하거나 폭언을 하신다' 424명(45.4%), '선생님이 떠든다고 벌하거나 폭언을 하신다' 385명(41.2%), '선생님은 숙제를 못해왔다고 벌하거나 폭언을 하신다' 380(40.7%), '선생님은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면 벌하거나 폭언을 하신다' 339명(36.3%)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일기장이나 다이어리검사, 단체기합, 학교규칙 위반시 벌이나 폭언 등 40~60%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은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 하신다' 235(27.1%),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벌을 주셔서 수업을 못 듣게 하신다' 232(24.8%), '급식시간에 선생님은 먹기 싫은 반찬이나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게 하신다' 222명(23.8%), '선생님이 지각이나 무단결석 등으로 벌하거나 폭언을 하신다' 217명(23.2%)으로 나타나 7~30%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항목별로 유의미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III-2-1>과 같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즉, 차별하지 않는다) 796명(85.2%), '아니다'(즉, 차별한다) 138명(14.8%)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별보다는 다소 낮은 14.8%의 초등학생들이 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1> 학교에서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 여자 또는 남자라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756	80.9	178	19.1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796	85.2	138	14.8
3.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868	92.9	66	7.1
4.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선생님은 벌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는다.	510	54.6	424	45.4
5. 학급임원 및 학생회임원이라고 선생님이 더 예뻐하지는 않는다.	799	85.5	135	14.5
6. 선생님은 체벌하실 때 손으로 얼굴 또는 기타 신체적 부위를 때리지 않는다.	754	80.7	180	19.3
7. 선생님은 가방, 소지품 등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	840	89.9	94	10.1
8. 선생님은 쌍스러운 욕을 학생들에게 쓰지 않는다.	806	86.3	128	13.7
9. 선생님은 학급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단체로 벌을 주지 않는다.	505	54.1	429	45.9
10. 선생님은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681	72.9	253	27.1
11.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벌을 주셔서 수업을 못 듣게 하지는 않는다.	702	75.2	232	24.8
12. 선생님은 숙제를 못해왔어도 벌하거나 폭언	554	59.3	380	40.7

을 하시지 않는다.				
13. 선생님은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도 벌하거나 폭언을 하시지 않는다.	595	63.7	339	36.3
14. 선생님이 지각이나 무단결석 등으로 벌하거나 폭언하시지 않는다.	717	76.8	217	23.2
15. 선생님이 떠든다고 벌하거나 폭언하시지 않는다.	549	58.8	385	41.2
16. 선생님은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검사하지 않는다.	368	39.4	566	60.6
17. 급식시간에 선생님은 먹기 싫은 반찬이나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게 하지 않는다.	712	76.2	222	23.8
18. 방과후 학교는 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청한다.	859	92.0	75	8.0
19. 우리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는다.	763	81.7	171	18.3
20. 학교행사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는다.	831	89.0	103	11.0

※ 총 합계 934명, 유효 퍼센트 100%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선생님은 벌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즉, 벌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는다) 510명(54.6%), ‘아니다’(벌하거나 폭언을 한다) 424명(45.4%)로 나타나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지키지 못할 시 다양한 벌이나 야단을 맞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학교규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엄격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은 체벌하실 때 손으로 얼굴 또는 기타 신체적 부위를 때리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즉, 때리지 않는다) 754명(80.7%), ‘아니

다’(즉, 때린다) 180명(19.3%)로 나타나 2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생님은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 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681명(72.9%), ‘아니다’(공개적으로 얘기한다) 253명(27.1%)로 나타나 3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벌을 주셔서 수업을 못 듣게 하지는 않는 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수업을 못 듣게 하지 않는다) 702명(75.2%), ‘아니다’(수업을 못 듣게 한다) 232명(24.8%)로 나타나 25%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벌을 받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생님은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검사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368명(39.4%), ‘아니다’ 566명(60.6%)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검사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저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국기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것은 일기의 본래 의미에도 맞지 않으며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의 공개나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가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고 검사 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한 서술이 어렵다”고 권고한바 있다. 또한

일기검사를 통한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개인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숙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 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라"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린바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763명(81.7%), '아니다' 171명(18.3%)로 나타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에 가까운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조사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데 불편하다'와 '수업시간 이외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가 각각 765명(82.0%)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시간이라도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539명(57.7%), '자리배치는 학생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는다' 438명(46.9%), '시간표는 중간에 바뀌거나 변경되어 진행할 때가 있다' 426명(45.6%), '학교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잘 구입이 되지 않는다'와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잘 나와 손을 씻거나 세수하기가 불편하지 않다' 418명(44.4%),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387명(41.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소통의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항목 8개의 범위가 40~82%안에 있어 많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급규칙과 급훈은 학급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다’ 274명(29.3%), ‘학급회의 때 나온 학생들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 않는다’ 234명(25.0%),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와 ‘학교내 급식가격 및 식단 등에 만족하지 않는다’가 각각 209명(22.4%), ‘선생님은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지 않는다’ 198명(21.2%), ‘숙제는 하루에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 숙제하는 데 어렵다’ 195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들도 대부분 12~30% 범위 안에 있어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유의미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II-2-2> 학교생활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소통이 어려웠던 사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잘 나와 손을 씻거나 세수하기에 불편하지 않다.	222	23.4	196	21.0	288	30.8	228	24.4
2. 수업시간이라도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96	21.0	343	36.7	262	28.1	133	14.2
3. 아플 때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8	5.1	71	7.6	369	39.5	446	47.8
4.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어 쾌적한 교실	71	7.6	138	14.8	422	45.2	303	32.4

에서 공부할 수 있다.								
5. 탈의실이 있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데 편리하다.	517	55.4	248	26.6	112	12.0	57	6.0
6. 학교내 급식가격 및 식단 등에 만족한다.	81	8.7	128	13.7	485	51.9	240	25.7
7. 방과후 학교도서관 이용은 자유롭고 편리하다.	58	6.2	68	7.3	334	35.8	474	50.7
8. 학교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잘 구입해 주신다.	148	15.8	270	28.9	353	37.8	163	17.5
9. 수업시간 이외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다.	559	59.8	207	22.2	101	10.8	67	7.2
10. 시간표는 중간에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고,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잘 진행된다.	106	11.3	320	34.3	360	38.5	148	15.9
11. 선생님은 지각이나 결석을 했을 때 이유를 먼저 물어보신다.	62	6.6	111	11.9	418	44.8	343	36.7
12. 학급규칙과 급훈은 학급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02	10.9	172	18.4	415	44.4	245	26.3
13. 학급회의 때 나온 학생들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선된 부분에 대해 알려주신다.	76	8.1	158	16.9	465	49.8	235	25.2
14. 자리배치는 학생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방법으로 한다.	214	22.9	224	24.0	319	34.1	177	19.0
15. 학교에서 어려운 일(왕따,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기타 고민거리)이 생기면 선	50	5.3	98	10.5	437	46.8	349	37.4

생님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								
16.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79	8.4	308	33.0	422	45.2	125	13.4
17. 선생님은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다.	73	7.8	125	13.4	476	51.0	260	27.8
18. 선생님은 학생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잘 들어주신다.	71	7.6	108	11.6	462	49.4	293	31.4
19.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따로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49	5.3	75	8.0	422	45.2	388	41.5
20. 숙제는 하루에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주셔서 숙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76	8.1	119	12.7	403	43.2	336	36.0
21. 학급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이다.	67	7.2	112	12.0	418	44.8	337	36.0

※ 총 합계 934명, 유효 퍼센트 100%

아플 때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446명(47.8%), ‘그렇다’ 369명(39.5%), ‘그렇지 않다’ 71명(7.6%), ‘전혀 그렇지 않다’ 48명(5.1%) 순으로 나타나 80% 이상의 초등학생들은 보건실 이용이 자유로웠으나 10% 이상의 초등학생들은 아파도 보건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탈의실이 있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데 편리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517명(55.4%), ‘그렇지 않다’ 248명(26.6%), ‘그렇다’ 112명(12.0%), ‘매우 그렇다’ 57명(6.0%) 순으로 나타나 8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 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표는 중간에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고,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360명(38.5%), ‘그렇지 않다’ 320명(34.5%), ‘매우 그렇다’ 148명(15.9%), ‘전혀 그렇지 않다’ 106명(11.3%) 순으로 나타나 45% 이상의 초등학생들은 시간표의 변경이 자주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간표의 변경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간표 변경사유가 정확하게 공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및 시간표 변경사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급규칙과 급훈은 학급회의를 통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15명(44.4%), ‘매우 그렇다’ 245명(26.3%), ‘그렇지 않다’ 172명(18.4%), ‘전혀 그렇지 않다’ 102명(10.9%) 순으로 나타나 대략 70%의 초등학생들은 학급규칙과 급훈을 학급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0%의 초등학생들은 학급회의 없이 교사에 의해 학급규칙이나 급훈이 결정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급규칙과 급훈들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토론과 협의의 중요성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급회의 때 나온 학생들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선된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65명(49.8%), ‘매우 그렇다’ 235명(25.2%), ‘그렇지 않다’ 158명(16.9%), ‘전혀 그렇지 않다’ 76명(8.1%) 순으로 나타나 75%의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5%의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아 자신들의 의견이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수월해 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왕따,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기타 고민거리)이 생기면 선생님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37명(46.8%), ‘매우 그렇다’ 349명(37.4%), ‘그렇지 않다’ 98명(10.5%), ‘전혀 그렇지 않다’ 50명(5.3%) 순으로 나타나 85%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사와 상담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22명(45.2%), ‘그렇지 않다’ 308명(33.0%), ‘매우 그렇다’ 125명(13.4%), ‘전혀 그렇지 않다’ 79명(8.4%) 순으로 나타나 60%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40%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들이

해마다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안전은 학생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예방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Ⅲ-2-3>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복수응답)

구 분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① 신체적 폭력(체벌)	255	7.3	27.3
② 별세우기	264	7.6	28.3
③ 많은 숙제	216	6.2	23.1
④ 잦은 청소	218	6.3	23.3
⑤ 잦은 학교시험	280	8.1	30.0
⑥ 불편한 학교시설(화장실, 도서관 등)	188	5.4	20.1
⑦ 성적에 따른 차별	195	5.6	20.9
⑧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생활지도	89	2.6	9.5
⑨ 언어폭력(기분 나쁘게 하는 말)	433	12.5	46.4
⑩ 집단 괴롭힘(왕따)	330	9.5	35.3
⑪ 일기장 검사	243	7.0	26.0
⑫ 학교급식	99	2.8	10.6
⑬ 돈이나 물건 빼김	215	6.2	23.0
⑭ 사생활 무시	201	5.8	21.5
⑮ 인권침해 없다	250	7.2	26.8

* 총 응답자 934명의 복수응답을 분석함.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언어폭력’ 433명(12.5%), ‘집단 괴롭힘’ 330명(9.5%), ‘잡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일기장 검사’ 243명(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의견들도 5% 내외로 제시되었다. 반면 인권침해가 없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250명 7.2%로 나타나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4> 평소 학교공부에 대한 생각 정도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매우 힘들다	40	4.3
힘든 편이다	110	11.8
적당하다	573	61.3
쉬운 편이다	126	13.5
매우 쉬운 편이다	85	9.1
합 계	934	100.0

평소 학교공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적당하다’ 573명(61.3%), ‘쉬운 편이다’ 126명(13.5%), ‘힘든 편이다’ 110명(11.8%), ‘매우 쉬운 편이다’ 85명(9.1%), ‘매우 힘들다’ 40명(4.3%) 순으로 나타났다. 20%의 초등학생들은 학교 공부가 쉬운 편으로 나타났으나 16%의 초등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숙제에 대한 적절성에서 20%의 초등학생들은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과 비슷한 결과여

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로 없다’ 321명(34.4%), ‘가끔 있다’ 296명(31.7%), ‘전혀 없다’ 204명(21.8%), ‘자주 있다’ 113명(12.1%)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44%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5> 학교에 가기 싫다고 생각한 정도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자주 있다	113	12.1
가끔 있다	296	31.7
별로 없다	321	34.4
전혀 없다	204	21.8
합 계	934	100.0

<표Ⅲ-2-6>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구 분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①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95	5.8	10.2
②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41	2.5	4.4
③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153	9.4	16.4
④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아서	59	3.6	6.3
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5	0.9	1.6
⑥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17	1.0	1.8
⑦ 성적이 좋지 않아서	62	3.8	6.6
⑧ 괴롭힘을 당해서	51	3.1	5.5

⑨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151	9.2	16.2
⑩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322	19.7	34.5
⑪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287	17.5	30.7
⑫ 기타	383	23.4	41.0

* 934명의 총응답자들의 복수응답을 분석함.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기타 383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322명(19.7%),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287명(17.5%),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153명(9.4%),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151명(9.2%)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았던 기타 의견으로는 ‘숙제를 못해서’ 또는 ‘숙제가 많아서’, ‘놀고 싶어서’, ‘그냥 가기 싫어서’, ‘학교와 학원을 같이 다니기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학교 가기가 귀찮아서’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학교생활에서 평소 친구들 사이에 경험한 것에 대한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포함한 응답결과를 보면, ‘친구들끼리 욕을 사용한다’가 761명(81.5%)로 가장 많았고,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이 620명(66.4%),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가 540명(57.8%),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가 342명(36.6%)으로 나타났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기거나 집단폭행, 협박이나 폭력으로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 준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18~27% 사이로 나타났으며, 자주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도 1%를 넘어 1,000명당 1

명 꼴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2-7> 학교생활에서 평소 친구들 사이에 경험한 사항

항 목	자주있다		가끔있다		거의 없다		전혀없다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93	9.9	263	28.3	264	28.3	314	33.6
2. 헐박이나 폭력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긴 경험이 있다.	13	1.4	46	4.9	189	20.2	686	73.5
3.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16	1.7	21	2.2	137	14.7	760	81.4
4.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27	2.9	115	12.3	200	21.4	592	63.4
5. 친구들 끼리 욕설을 사용한다.	235	25.2	348	37.3	178	19.0	173	18.5
6.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64	6.8	194	20.8	282	30.2	394	42.2
7. 헐박이나 폭력으로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 준 경험이 있다.	14	1.5	30	3.2	122	13.1	768	82.2

※ 총 응답자 934명, 유효 퍼센트 100%임.

친구들끼리 욕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가끔 있다’ 348명(37.3%), ‘자주 있다’ 235명(25.2%), ‘별로 없다’ 178명(19.0%), ‘전혀 없

다’ 173명(18.5%) 순으로 나타나 또래집단에서의 욕설사용이 60%를 넘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 314명(33.6%), ‘별로 없다’ 265명(28.3%), ‘가끔 있다’ 263명(28.2%), ‘자주 있다’ 93명(9.9%) 순으로 나타나 60% 이상의 초등학생들은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놀림을 받고 있지 않았으나 40%의 초등학생들은 외모나 신체적 특징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 592명(63.4%), ‘별로 없다’ 200명(21.4%), ‘가끔 있다’ 115명(12.3%), ‘자주 있다’ 27명(2.7%) 순으로 나타나 왕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15%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어 앞서 살펴본 집단 폭행이나 협박이나 폭력에 의한 금품갈취 경험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 394명(42.2%), ‘별로 없다’ 282명(30.2%), ‘가끔 있다’ 194명(20.8%), ‘자주 있다’ 64명(6.8%) 순으로 나타나서 학교에서 포괄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27%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8>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켜지는지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221	23.7
보장되는 편이다	410	43.9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101	10.8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38	4.1
잘 모르겠다	164	17.5
합 계	934	100

학교에서 학생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보장되는 편이다’ 410명(43.9%),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221명(23.7%), ‘잘 모르겠다’ 164명(17.5%),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101명(10.8%),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3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60%가 넘는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17.5%,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15% 등으로 나타나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9> 선생님 대상 학생 인권교육 실시의 필요성 정도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반드시 필요하다	256	27.4
필요하다	349	37.4
필요하지 않다	75	8.0
전혀 필요하지 않다	32	3.4
잘 모르겠다	222	23.8

합 계	934	100
-----	-----	-----

선생님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 349명(37.4%), ‘반드시 필요하다’ 256명(27.4%), ‘잘 모르겠다’ 222명(23.8%), ‘필요하지 않다’ 75명(8.0%), ‘전혀 필요하지 않다’ 3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은 6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11%에 머물렀다.

<표Ⅲ-2-10>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지 여부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받아 보았다	227	24.3
받아 본적이 없다	243	26.0
잘 모르겠다	440	47.1
기 타	24	2.6
합 계	934	100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 440명(47.1%), ‘받아본 적이 없다’ 243명(26.0%), ‘받아보았다’ 227명(24.3%), 기타 24명(2.6%)순으로 나타나 7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인권교육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인권교육 방법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인권교육을 받아도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닌 인권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받을 필요가 있으며, 어떤 내용들이 교육되어졌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중·고등학생 설문조사 결과

<표Ⅲ-3-1> 두발규제와 복장규제 관련 규정 유무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있 다	1,080	99.4
없 다	6	0.6
합 계	1,086	100

다니는 학교에서 두발규제와 복장규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 1,080명(99.4%), ‘없다’ 6명(0.6%)로 나타나 99% 이상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두발규제와 복장규제 규정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발복장규제를 위반했을 시 가장 많이 받는 처벌로는 재검사, 훈계, 악세서리 등 압수, 체벌, 벌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70~88%가 위반시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징계, 교복치마가 짧거나 색깔티를 입었을 때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압수한다가 50% 범위에 있었으며, 강제이발이나 고대기를 사용했을 시에

는 물을 뿌려 머리를 편다가 3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2> 두발복장규제 위반시 처벌 유형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강제이발	371	34.2	715	65.8	1,086	100
체 벌	812	74.8	274	25.2	1,086	100
벌 점	769	70.8	317	29.2	1,086	100
징 계	618	56.9	468	43.1	1,086	100
훈 계	959	88.3	127	11.7	1,086	100
악세서리 등 압수	949	87.4	137	12.6	1,086	100
재검사	1047	96.4	39	3.6	1,086	100
교복치마가 짧거나 색깔티를 입었을 때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압수한다	592	54.5	494	45.5	1,086	100
고대기를 사용했을 시에는 물을 뿌려 머리를 편다	332	30.6	754	69.4	1,086	100
기 타	119	28.1	304	71.9	423	100

다니는 학교에 소지품 검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만 소지품을 검사한다’ 542명(49.9%), ‘소

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176명(16.2%), '1달에 2~3회 정도 검사한다' 142명(13.1%), '1달에 1회 미만 검사한다' 127명(11.7%), '1주일에 1회 이상 수시로 검사한다' 61명(5.6%), 기타 38명(3.5%)순으로 나타나 80%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소지품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III-3-3> 소지품 검사 실시 정도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1주일에 1회 이상 수시로 검사한다	61	5.6
1달에 2~3회 정도 검사한다	142	13.1
1달에 1회 미만 검사한다	127	11.7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만 소지품을 검사한다	542	49.9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176	16.2
기 타	38	3.5
합 계	1,086	100

<표 3-4> 휴대전화 소지 금지 여부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571	52.6
수업시간 중 사용만 금지되어 있다	343	31.6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에 따라 규제하기도 한다	67	6.1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금지나 규제가 없다	24	2.2
기 타	81	7.5
합 계	1,086	100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571명(52.6%), ‘수업시간 중 사용만 금지되어 있다’ 343명(31.6%), 기타 81명(7.5%),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에 따라 규제하기도 한다’ 67명(6.2%),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금지나 규제가 없다’ 24명(2.2%) 순으로 나타나 휴대전화 소지조차도 학교에서 제한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3-5> 소지품 검사시 압수되는 물건의 종류(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휴대전화	775	21.1	71.4
MP3 등 전자/음악기기	337	9.2	31.0
소설, 만화, 잡지 등 책	547	14.9	50.4
담배	1,020	27.8	93.9
화장품(파운데이션, 고대기 등)	886	24.1	81.6
기 타	104	2.8	9.6
합 계	3,669	100	337.8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소지품 검사 및 압수시 압수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복수응답결과 ‘담배’ 1,020명(27.8%), ‘화장품’ 886명(24.1%), ‘휴대전화’ 775명(21.1%), ‘소설, 만화, 잡지 등 책’ 547명(14.9%), ‘MP3 등 전자/음악기기’ 337명(9.2%), 기타 104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많이 소지품 검사시 압수당하는 물건으로는 담배와 화장품, 휴대전화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II-3-6> 압수된 소지품에 대해 규정 여부(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규정이 있고,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 돌려준다	323	20.8	29.7
규정이 있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교사 재량껏 돌려준다	399	25.7	36.7
규정이 없고, 교사 재량껏 돌려준다	368	23.7	33.9
압수된 소지품 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405	26.1	37.3
기 타	55	3.5	5.1
합 계	1,550	100	142.7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압수된 소지품에 대해서 되돌려 주는 규정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결과, ‘압수된 소지품 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가 405명(26.1%), ‘규정이 있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교사 재량껏 돌려준다’ 399명(25.7%), ‘규정이 없고, 교사 재량껏 돌려준다’ 368명(23.7%), ‘규정이 있고,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 돌려준다’ 323명(20.8%), 기타 55명

(3.5%)순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소지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과 관계없이 교사 재량껏 돌려주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압수된 소지품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교사 재량껏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 학생들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표Ⅲ-3-6-1〉 경기도 중·고등학교 휴대폰 사용 규정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학생생활규정에 휴대폰 사용규정		생활규정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함	규정 위반시 휴대폰 압수기간 (해당란에 숫자 '1' 로 표시)			
	유	무		1일	1주일	2주일	1개월
중학교	411	94	283	40	185	35	61
고등학교	248	119	95	20	104	11	46

* 2009년 10월말 경기도교육청 조사자료: 중학교 505개교 및 고등학교 367개교에 대한 조사결과임.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휴대폰 사용 규정에 대한 결과에서 학생생활규정에 휴대폰 사용규정이 중학교는 411개교, 고등학교는 248개교로 나타났으며, 휴대폰 소지 금지 조항이 있는 학교도 중학교 283개교, 고등학교 95개교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소지시 압수되는 기간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1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정과 관계없이 휴대폰의 사용규제가 교사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조사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정에 위배되는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생이라서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학교규정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다니는 학교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형태를 살펴보기 위한 복수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II-3-7-1>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형태(야간 자율학습)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62	33.3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248	22.8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95	8.7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6	1.5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365	33.6
합 계	1,086	100.0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365명(33.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62명(33.3%),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248명(22.8%),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95명(8.7%),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6명(1.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0%의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3-7-2>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형태(아침 자율학습)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643	59.2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119	11.0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56	5.2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9	0.8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259	23.8
합 계	1,086	100.0

아침 자율학습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643명(59.2%),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259명(23.9%),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119명(11.0%),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56명(5.2%),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9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 자율학습의 경우도 야간자율학습과 비슷한 수준에서 참여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3-7-3>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형태(아침 보충수업-0교시)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86	35.5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130	12.0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52	4.8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2	1.1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506	46.6
합 계	1,086	100.0

아침 보충수업(0교시)의 경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506명(46.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86명(35.5%),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130명(12.0%),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52명(4.8%),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표III-3-7-4>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형태(오후, 저녁 보충수업)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420	38.7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221	20.3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105	9.7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6	1.5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324	29.8
합 계	1,086	100.0

오후, 저녁 보충수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420명(38.7%),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324명(29.8%),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221명(20.3%),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105명(9.7%),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6명(1.5%) 순으로 나타나 오후, 저녁 보충수업의 경우도 과

반수 이상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450명(41.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62명(33.3%),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190명(17.5%),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68명(6.3%),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6명(1.5%)순으로 나타나 방과후학교 참여도 40% 이상의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3-7-5>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형태(방과후학교)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62	33.3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190	17.5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68	6.3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6	1.5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450	41.4
합 계	1,086	100.0

<표Ⅲ-3-7-6>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형태(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86	35.5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245	22.6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97	8.9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5	1.4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343	31.6
합 계	1,086	100

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386명(35.5%),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343명(31.6%), ‘불참여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245명(22.6%),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97명(8.9%),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15명(1.4%) 순으로 나타나 40% 이상의 학생들이 방과 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도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설문에 참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 형태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40% 이상 60%까지로 나타나 평균 과반수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학교 내에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참여 방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표Ⅲ-3-8>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 여부(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보충수업	547	24.4	50.4
아침 자율학습	82	3.7	7.6

야간 자율학습	329	14.7	30.3
방학보충수업	538	24.0	49.5
방학자율학습	291	13.0	26.8
잘 모르겠다	363	16.2	33.4
기타	89	4.0	8.2
합 계	2239	100	206.2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보충수업 547명(24.4%), 방학보충수업 538명(24.0%), 잘 모르겠다 363명(16.2%), 야간 자율학습 329명(14.7%), 방학자율학습 291명(13.0%), 기타 89명(4.0%), 아침 자율학습 82명(3.7%)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대부분이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형식적이더라도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들이 준수되고 절차의 내용들이 민주적일 때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확장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3-9> 동의서를 받고 있는 형태(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학교방침에 따라 일괄 동의서 제출	411	34.9	45.5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동의서 제출	417	35.4	46.2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동의서 제출	173	14.7	19.2
잘 모르겠다	140	11.9	15.5
기 타	36	3.1	4.0
합 계	1,177	100.0	130.3

*1,086명의 응답자들의 결측값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니는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경우 동의서 받는 형태에 대한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동의서 제출’ 417명(35.4%), ‘학교방침에 따라 일괄 동의서 제출’ 411명(34.9%),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동의서 제출’ 173명(14.7%), ‘잘 모르겠다’ 140명(11.9%), 기타 36명(3.1%) 순으로 나타나 70%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에 의해 자율이 아닌 타율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3-10-1> 학교 등교 시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07:00 이전	29	2.7
07:00~07:29	186	17.1
07:30~07:59	453	41.7
08:00~08:29	412	37.9

08:30~08:59	6	0.6
합 계	1,086	100.0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7시 30분부터 7시 59분 사이가 453명(41.7%)로 가장 많았고, 8시부터 8시 29분까지가 412명(37.9%)로 많았다. 반면 7시 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도 20%로 나타나 아침 자율학습이나 0교시수업이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3-10-2> 하루 평균 수면시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8시간 이상	68	6.3
7시간~8시간 미만	182	16.8
6시간~7시간 미만	364	33.5
5시간~6시간 미만	320	29.5
5시간 미만	152	14.0
합 계	1,086	100.0

하루 수면시간을 묻는 질문에 6시간~7시간 미만이 364명(33.5%)로 가장 많았고, 5시간~6시간 미만이 320명(29.5%)로 많았다. 반면 5시간 미만도 1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소년권장수면시간인 8~9시간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청소년기에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그날 하루 배운 것들을 수면중 뇌활동으로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휴식을 위해 야간자율학습이나 아침자율학습 및 0교시 폐지 등의 조치들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많이 받는다 571명(52.6%), 조금 받는 편이다 429명(39.5%), 잘 안 받는 편이다 74명(6.8%), 전혀 안 받는다 12명(1.1%)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조금 받는 편이다 라는 의견까지를 포함하면 90%를 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3-11>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많이 받는다	571	52.6
조금 받는 편이다	429	39.5
잘 안 받는 편이다	74	6.8
전혀 안 받는다	12	1.1
합 계	1,086	100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4~2008년 초·중·고교생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 원인으로는 ‘가정 불화’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염세 비관’(19.6%), ‘학업 스트레스’(10.1%), ‘이성문제’(7.2%)가 뒤를 이

었다.

자살 원인별 증가폭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컸으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2004년 4명에서 2008년 17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고, 가정 불화도 15명에서 54명으로 3.6배 늘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으며,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살 충동 원인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자살 충동 원인은 성적 및 진학 문제(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불화’는 ‘외로움’(13.6%)보다 낮은 10.4%로 조사됐다.

따라서 학생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시급하게 마련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III-3-12> 체벌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	382	35.2
일주일에 2회 이상 경험한다	287	26.4
한 달에 4회 이상 경험한다	111	10.2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239	22.0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67	6.2
합 계	1,086	100

체벌(도구나 손발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등의 벌)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하여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 382명(35.2%), ‘일주일에 2회 이상 경험한다’ 287명(26.4%),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239명(22.0%), ‘한 달에 4회 이상 경험한다’ 111명(10.2%),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67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학생들이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도 과반 수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13> 직·간접적 체벌 경험 사유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① 두발복장규정 등 위반	718	72.5	273	27.5	991	100
② 지각이나 결석	680	69.2	303	30.8	983	100
③ 과제나 수업태도	754	76.0	238	24.0	992	100
④ 성적이 떨어져서	249	27.0	672	73.0	921	100
⑤ 야자를 빠져서	409	43.8	525	56.2	934	100
⑥ 보충수업을 빠져서	410	43.9	523	56.1	933	100
⑦ 거짓말을 해서	386	41.2	550	58.8	936	100
⑧ 교사의 지도 불응	561	58.6	396	41.4	957	100
⑨ 학교기물파손	263	28.7	653	71.3	916	100
⑩ 집단따돌림 및 폭력 행사	323	34.6	610	65.4	933	100
⑪ 금지물품 지참(담배, 만화책 등)	440	46.5	507	53.5	947	100
⑫ 기타	56	19.7	228	80.3	284	100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질문 항목에서 체벌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제나 수업태도’가 754명(7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발복장 규정 등 위반’이 718명(72.5%), ‘지각이나 결석’ 680명(69.2%), ‘교사의 지도 불응’ 561명(58.6%)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금지물품 지참, 야자를 빠져서, 보충수업을 빠져서, 거짓말을 해서 등의 이유는 40%선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기물파손 및 성적이 떨어지서는 각각 20% 정도로 나타났다. 직·간접적으로 체벌을 경험하는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경험정도도 20%~70%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해마다 학교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들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의 체벌로 인해 더 이상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학교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적 제도적으로도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부분이 명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3-14> 교사의 언어폭력 직·간접적 경험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	210	19.3
일주일에 2회 이상 경험한다	238	21.9
한 달에 4회 이상 경험한다	127	11.7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355	32.7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156	14.4
합 계	1,086	100

교사의 언어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355명(32.7%), ‘일주일에 2회 이상 경험한다’ 238명(21.9%),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 210명(19.3%),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156명(14.4%)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교사의 언어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경험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80%를 넘고 있는 반면, 교사의 언어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10%선에 머물렀다.

<표Ⅲ-3-15>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 유무 및 느끼는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상벌점제로 학교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아 체벌보다 더 나쁘다고 느낀다	301	27.7
상벌점제가 있어서 학교생활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고 느낀다	172	15.8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377	34.7
상벌점제가 없다	186	17.1
기 타	50	4.6
합 계	1,086	100

다니는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377명(34.7%), ‘상벌점제로 학교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아 체벌보다 더 나쁘다고 느낀다’ 301명(27.7%), ‘상벌점제가 없다’ 186명(17.1%), ‘상벌

점제가 있어서 학교생활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고 느낀다' 172명 (15.8%), 기타 50명(4.6%)순으로 나타났다.

벌점제나 상벌점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학생이 60%를 넘고 있는 반면, 상벌점제가 있어 학교생활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16%에 머물러,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실효성을 크게 얻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지난 11월 전국 20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08년 이후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한 아수나로에 따르면 그린마일리지제 등 상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중학생의 45.4%, 고등학생의 49.4%가 "더욱 통제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조사된바 있다.

<표Ⅲ-3-16> 학생징계 사유(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두발복장규제 위반	781	18.6	71.9
교내폭력 및 집단따돌림(왕따)	403	9.6	37.1
지각이나 결석	549	13.1	50.6
음주나 흡연	813	19.4	74.9
교사지도 불응	483	11.5	44.5
교사나 학교에 대한 반항	582	13.9	53.6
금품갈취 및 절도	439	10.5	40.4
학교단체행사 불참	64	1.5	5.9
허가받지 않은 집회참여	39	0.9	3.6
기 타	42	1.0	3.9

합 계	4195	100.0	386.3
-----	------	-------	-------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음주나 흡연’ 813명(19.4%), ‘두발복장규제 위반’ 781명(18.6%), ‘교사나 학교에 대한 반항’ 582명(13.9%), ‘지각이나 결석’ 549명(13.1%), ‘교사지도 불응’ 483명(11.5%), ‘금품갈취 및 절도’ 439명(10.5%), ‘교내 폭력 및 집단따돌림’ 403명(9.6%)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학교단체 행사 불참, 허가받지 않은 집회참여 등도 1% 내외로 징계 받는 사유로 조사되었다.

<표III-3-17> 학교에서 징계 결정시 재심의 신청 여부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가능하다	102	9.4
불가능하다	283	26.1
잘 모르겠다	687	63.3
기 타	14	1.3
합 계	1,086	100.0

학교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는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687명(63.3%), ‘불가능하다’ 283명(26.1%), ‘가능하다’ 102명(9.4%), 기타 14명(1.3%)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은 징계심의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6%의 학생들은 징계결정시 다시 심

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응답해 징계과정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학생들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다 철저하게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징계로 인한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Ⅲ-3-18〉 학생회 등을 통한 학교운영의 학생참여 여부

구 분	빈도	유효퍼센트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206	19.0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는 않는다	445	41.0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435	40.1
합 계	1,086	100.0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는 않는다’ 445명(41.0%),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435명(40.1%),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206명(19.0%)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통로와 절차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Ⅲ-3-19>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 규제 유무

항 목	그렇다		아니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①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98	82.7	188	17.3	1,086	100
② 학생회 지도·자문위가 있어 학생회를 좌지우지한다.	471	43.4	615	56.6	1,086	100
③ 학생회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401	36.9	685	63.1	1,086	100
④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 있다.	211	19.4	875	80.6	1,086	100
⑤ 학생회의 학교 행정 간섭이 금지되어 있다.	427	39.3	659	60.7	1,086	100
⑥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548	50.5	538	49.5	1,086	100
⑦ 학생회 선거 공약에 대해 학교가 통제하고 있다.	438	40.3	648	59.7	1,086	100
⑧ 학생회는 학생회에산승인 및 집행 권한이 없다.	646	59.5	440	40.5	1,086	100
⑨ 학교가 학생회임원에 대한 해임(휴학, 전학 제외)권을 가지고 있다.	437	40.2	649	59.8	1,086	100
⑩ 학생회 회의소집권한이 없다.	420	38.7	666	61.3	1,086	100
⑪ 학생회 회칙 제개정 권한이 없다.	497	45.8	589	54.2	1,086	100
⑫ 학생회 집행부를 학교에서 임명하고 있다.	476	43.8	610	56.2	1,086	100
⑬ 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교사 추천을 요구한다.	493	45.4	593	54.6	1,086	100
⑭ 학생회장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 형태로 선출하고 있다.	221	20.3	865	79.7	1,086	100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 규제에 대해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98명(82.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회는 학생회예산승인 및 집행 권한이 없다’ 646명(59.5%)으로 많았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548명(50.5%), ‘학생회 회칙 제개정 권한이 없다’ 497명(45.8%), ‘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교사 추천을 요구한다’ 493명(45.4%), ‘학생회 집행부를 학교에서 임명하고 있다’ 476명(43.8%), ‘학생회 지도·자문위가 있어 학생회를 좌지우지한다’ 471명(43.4%)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절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다. 반면 학생회장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 형태로 선출하고 있는 학교 20.3%로 나타났으며, ‘학생회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학생회의 학교 행정 간섭이 금지되어 있다’, ‘학생회 회의소집권한이 없다’는 학교는 3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회 운영에 있어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고 있는 학교들이 90%에 가까워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학생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측면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회 관련 기구 중에서 다니는 학교에 존재하는 기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결과, ‘학생총회’ 555명(24.7%), ‘학급회’ 472명(21.0%), ‘잘 모르겠다’ 465명(20.7%), ‘대의원회’ 292명(13.0%), ‘학생회 지도·자문위’ 249명(11.1%), ‘집행위 또는 운영위’ 197명(8.8%), 기타 17명(0.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총회와 학급회의가 각각 20%를 넘어 학교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III-3-20> 학생회 관련 기구 중 학교에 존재하는 기구(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학생총회	555	24.7	51.1
대의원회	292	13.0	26.9
집행위 또는 운영위	197	8.8	18.1
학급회	472	21.0	43.5
학생회 지도·자문위	249	11.1	22.9
잘 모르겠다	465	20.7	42.8
기 타	17	0.8	1.6
합 계	2247	100	206.9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학생회 관련 기구에서 학생회 지도·자문위가 있다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할 결과, ‘잘 모르겠다’ 665명(48.0%), ‘없다’ 235명(17.0%), ‘선거 지도관리’ 145명(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를 포함한 나머지 기능에 대한 것들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회 관련 기구에서 학생회 지도·자문위의 기능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21> 학생회 관련 기구 중 학생회 지도·자문위 기능 유무(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없다	235	17.0	21.6
잘 모르겠다	665	48.0	61.2
회칙 제개정	33	2.4	3.0
임원임명	55	4.0	5.1
학생회 해체	11	0.8	1.0
회의 소집 및 지도	110	7.9	10.1
선거 지도관리	145	10.5	13.4
학생회 지도 육성	104	7.5	9.6
기 타	26	1.9	2.4
합 계	1384	100	127.4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충분히 보장,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414명(26.3%),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337명(21.4%),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지원을 잘 해주지 않으며 폐쇄될 수도 있다’ 294명(18.7%),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도 충분하다’ 272명(17.3%),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183명(11.6%), 기타 73명(4.6%)순으로 나타났다.

30% 이상의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시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동아리 허가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40%를 넘고 있어 학교 안에서의 동아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치활동의 하나인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3-22> 동아리 활동의 보장과 지원 유무(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도 충분하다.	272	17.3	25.0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지원을 잘 해주지 않으며, 폐쇄될 수도 있다.	294	18.7	27.1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414	26.3	38.1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337	21.4	31.0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183	11.6	16.9
기 타	73	4.6	6.7
합 계	1,573	100	144.8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표Ⅲ-3-23> 학교에서의 차별 하는 이유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① 성적	622	57.3	464	42.7	1,086	100
② 성별	302	27.8	784	72.2	1,086	100
③ 나이나 학년	363	33.4	723	66.6	1,086	100
④ 성정체성, 성적지향(동성애 등)	91	8.4	995	91.6	1,086	100
⑤ 장애 여부	200	18.4	886	81.6	1,086	100
⑥ 인종	60	5.5	1026	94.5	1,086	100
⑦ 경제력	177	16.3	909	83.7	1,086	100
⑧ 외모, 신체적 특징	375	34.5	711	65.5	1,086	100
⑨ 가족형태(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	94	8.7	992	91.3	1,086	100
⑩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	447	41.2	639	58.8	1,086	100
⑪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	308	28.4	778	71.6	1,086	100
⑫ 기 타	34	10.6	288	89.4	1,086	100

학교에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경우 차별 사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성적에 의한 차별이 57.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가 447명(41.2%)로 많았다. 나이나 학년에 의한 차별, 외모, 신체적 특징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학생이 30%대로 나타났으며, 10~20%로 나타난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 장애여부, 경제력,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10%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308명(2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에 의한 차별이 과반 수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인권교육들이 학교현장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3-24-1>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와 손을 씻거나 세면하는 데 불편하지 않다.	452	41.6	261	24.0	272	25.1	101	9.3
2. 아플 때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8	15.5	291	26.8	489	45.0	138	12.7
3. 보충 및 야자시간까지 보건실운영이 되고 있다.	496	45.7	280	25.8	260	23.9	50	4.6
4.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	210	19.4	300	27.6	449	41.3	127	11.7
5. 탈의실이 있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데 편리하다.	595	54.8	275	25.3	175	16.1	41	3.8
6. 계절에 따른 교복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	584	53.8	257	23.7	214	19.7	31	2.8

투 등)와 디자인 등이 다양해 선택할 수 있 다.								
7. 강제전학이나 강제 자퇴 등으로 인한 학생 의 교육권 침해가 발생 하지 않는다.	251	23.1	379	34.9	388	35.7	68	6.3
8. 급식은 가격에 비해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 다.	331	30.5	277	25.5	353	32.5	125	11.5
9. 학교에는 성적 및 친구문제 등의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해 주실 선생님이 있다.	299	27.5	279	25.7	407	37.5	101	9.3
10. 학교내 화장실, 도 서실, 식당, 매점 등 학 생이용 시설들이 위생 적이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274	25.3	326	30.0	401	36.9	85	7.8
11. 등록금, 급식비 등 교육비를 내지 못했더 라도 학생들 앞에서 이 야기하거나 이름을 공 개하지 않는다.	202	18.6	212	19.5	426	39.2	246	22.7
12. 징계처분 내용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 하지 않는다.	218	20.1	198	18.2	450	41.4	220	20.3
13. 이성교재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268	24.7	316	29.1	399	36.7	103	9.5
14. 학생이 아르바이트 를 하는 것에 간섭하지	238	21.9	339	31.2	435	40.1	74	6.8

않는다.								
15. 가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251	23.1	356	32.8	412	37.9	67	6.2
16. 실습 기자재 등이 부족하지 않고 잘 갖춰져 있다.	206	19.0	306	28.2	490	45.1	84	7.7
17.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95	27.2	263	24.2	423	38.9	105	9.7
18.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272	25.0	249	22.9	445	41.0	120	11.1
19. 학교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및 위생 상태가 좋아 믿을 수 있다.	403	37.1	314	28.9	321	29.6	48	4.4
20.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수시로 알리고, 규정 바뀔 때마다 수시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282	26.0	275	25.3	407	37.5	122	11.2
21. 학교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학생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352	32.4	278	25.6	360	33.2	96	8.8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한 항목별 유의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플 때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89명(45.0%), ‘그렇지 않다’ 291명(26.8%), ‘전혀 그렇지 않다’ 168명(15.5%), ‘매우 그렇다’ 138명(12.7%)순으로 나타나 40%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아프더라도 보건실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충 및 야자시간까지 보건실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496명(45.7%), ‘그렇지 않다’ 280명(25.8%), ‘그렇다’ 260명(23.9%), ‘매우 그렇다’ 50명(4.6%)순으로 나타나 80% 이상의 학생들이 보충 및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질병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전 시간 동안 보건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UN아동·청소년권리협약”에서 최상의 건강 준수를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49명(41.3%), ‘그렇지 않다’ 300명(27.6%), ‘전혀 그렇지 않다’ 210명(19.4%), ‘매우 그렇다’ 127명(11.7%)순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학생들이 쾌적하지 못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탈의실이 있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데 편리하지 않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595명(54.8%), ‘그렇지 않다’ 275명(25.3%), ‘그렇다’ 175명(16.1%), ‘매우 그렇다’ 41명(3.8%)순으로 나타나 80% 이상의 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육을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 체육교구들이 구비되어 있듯이 수업준비를 위해 최소한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체육복을 갈아입는 데 필요한 공간은 교사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구교재 및 시설과 똑같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을 위해 교구교재, 시설이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 안전한 탈의실의 설치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계절에 따른 교복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투 등)와 디자인 등이 다양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584명(53.8%), ‘그렇지 않다’ 257명(23.7%), ‘그렇다’ 214명(19.7%), ‘매우 그렇다’ 31명(2.8%)순으로 나타나 80%의 학생들이 교복종류와 디자인에 대한 선택권이 주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스스로가 교복에 대해 만족하고 제대로 입게 하기 위해서도 교복종류와 디자인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선행된다면 복장단속을 통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388명(35.7%), ‘그렇지 않다’ 379명

(34.9%), ‘전혀 그렇지 않다’ 251명(23.1%), ‘매우 그렇다’ 68명(6.8%)순으로 나타나 60%의 학생들이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치명적인 권리침해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사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UN아동·청소년인권조약”에 명시된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에도 위배되는 문제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학교에 출석을 못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강제 전학이나 강제자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내 화장실, 도서실, 식당, 매점 등 학생이용 시설들이 위생적이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01명(36.9%), ‘그렇지 않다’ 326명(30.0%), ‘전혀 그렇지 않다’ 274명(25.3%), ‘매우 그렇다’ 85명(7.8%)순으로 나타나 55%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내 학생이용 시설들이 위생적이지 않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교내 학생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에 대한 기준과 점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해 시정해 나가는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학생이용시설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금, 급식비 등 교육비를 내지 못했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26명(39.2%), ‘매우 그렇다’ 246명(22.7%), ‘그렇지 않다’ 212명(19.5%), ‘전혀 그렇지 않다’ 202명(18.6%)순으로 나타나 40%의 학생들은 교육비를 내지 못해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의 경제적 상황 등 가족의 정보까지도 노출됨으로써 공개적으로 자존심이 손상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성적 공개보다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징계처분 내용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50명(41.4%), ‘매우 그렇다’ 220명(20.1%), ‘전혀 그렇지 않다’ 218명(20.1%), ‘그렇지 않다’ 198명(18.2%)순으로 나타나 40%의 학생들은 징계처분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계처분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40%의 학생들이 공개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학교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었을 시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 ‘그렇다’ 412명(37.9%), ‘그렇지 않다’ 356명(32.8%), ‘전혀 그렇지 않다’ 251명(23.1%), ‘매우 그렇다’ 67명(6.2%)순으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가출시 징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가출 청소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가출 청소년(14~19세)이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가출 청소년이 47,308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 11,198명(23.7%), 서울 9,453명(20%), 부산 4,039명(8.5%), 인천 3,435명(7.3%)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가출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가출이후 되돌아 왔을 때 또다시 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출이유에 대한 조사와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423

명(38.9%), ‘전혀 그렇지 않다’ 295명(27.2%), ‘그렇지 않다’ 263명(24.2%), ‘매우 그렇다’ 105명(9.7%)순으로 나타나 50%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과목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택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선택과목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선택과목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갖춰져야 할 내용과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지원되어야 하겠다.

학교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및 위생상태가 좋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403명(37.1%), ‘그렇다’ 321명(29.6%), ‘그렇지 않다’ 314명(28.9%), ‘매우 그렇다’ 48명(4.4%)순으로 나타나 학교내 매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6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교내 매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매점에 유통되는 식품들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수시로 알리고,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407명(37.5%), ‘전혀 그렇지 않다’ 282명(26.0%), ‘그렇지 않다’ 275명(25.3%), ‘매우 그렇다’ 122명(11.2%)순으로 나타나 50% 이상의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규정으로 부당한 규제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학생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감시받는 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360명(33.2%), ‘전혀 그렇지 않다’ 352명(32.4%), ‘그렇지 않다’ 278명(25.6%), ‘매우 그렇다’ 96명(8.8%)순으로 나타나 60%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내 CCTV설치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내 CCTV로 학교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껴 CCTV설치에 있어서도 중·고등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보완책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 및 각종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CCTV설치는 예방이 아니라 사건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범인을 찾아내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등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CCTV를 무절제하게 설치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이나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갈등해결 프로그램,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학생들의 생활패턴과 의식전환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학생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편이다’ 484명(44.6%),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331명(30.5%),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221명(20.3%), 인권을 ‘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 50명(4.6%)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3-35> 학교의 전반적인 학생인권 보장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	50	4.6
보장하고 있는 편이다	484	44.6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331	30.5
매우 많이 침해하는 편이다	221	20.3
합 계	1086	100

『UN아동·청소년권리조약』 제 28조 2항에서 당사국은 학교규율이 아동·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과반 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다니고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학교규율도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결과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도 현재 경기도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내 인권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N아동·청소년권리조약』에 비준국가로써 학교규율이 아동·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표Ⅲ-3-26>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두발규제	770	24.8	74.3
복장규제	580	18.7	56.0
단체기합 및 체벌	278	9.0	26.8
무작위 소지품 검사	125	4.0	12.1
학교폭력(집단따돌림)	209	6.7	20.2
벌점 및 상벌점제	194	6.3	18.7
학생의사표현 규제	277	8.9	26.7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규제	165	5.3	15.9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464	15.0	44.8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 차별	41	1.3	4.0
합 계	3,103	100.0	299.5

* 총응답자 1,086명의 복수응답 내용을 결측값을 제외하고 분석함.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한 결과 ‘두발규제’ 770명(24.8%), ‘복장규제’ 580명(18.7%),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464명(15.0%), ‘단체기합 및 체벌’ 278명(9.0%)순으로 조사되었다.

두발규제 및 복장규제를 합치면 과반수를 차지해서,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Ⅲ-3-27>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 도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489	16.0	47.6
인권교육 강화	261	8.5	25.4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188	6.2	18.3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68	12.0	35.8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78	9.1	27.1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237	7.8	23.1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124	4.1	12.1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325	10.6	31.6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	15.5	46.2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310	10.2	30.2
합 계	3,054	100.0	297.4

* 1,086명의 응답자들의 결측값을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한 결과, ‘입시경쟁 해소’ 489명(16.0%),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명(15.5%),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68명(12.0%),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325명(10.6%),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310명(10.2%)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입시경쟁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등 기타의 사항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III-3-2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947	87.4
반대한다	14	1.3
의견없음	123	11.3
합 계	1,084	100.0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 947명(87.4%), '의견없음' 123명(11.3%), '반대한다' 14명(1.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교사 설문분석결과

인권교육과 인권연수에 관련된 사항을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1>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 내용 아는지 여부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알고 있다	24	4.1
조금 알고 있다	222	37.9
잘 모르고 있다	258	44.0
전혀 모르고 있다	82	14.0
합 계	586	100.0

1991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24명(4.1%)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228명(37.9%)이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258명(44%)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고,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명(14%)이다.

<표IV-2>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실시 필요 여부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66	28.3
필요하다	403	68.8
필요하지 않다	16	2.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2
합 계	586	100.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166명(28.3%),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403명(68.8%)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응답이 97.1%에 달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16명(2.7%),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1명(0.2%)으로

2.9%밖에 되지 않는다.

<표Ⅳ-3-1>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예	271	46.2
아니오	315	53.8
합 계	586	100.0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71명(46.2%), 실시한 경험이 없는 교사는 315명(53.8%)이다.

<표Ⅳ-3-2>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안정적 정기적인 시간확보가 어렵다	138	44.2
옳게 가르치는지 인권교육의 내용에 자신이 없다	94	30.1
성적반영이 안되어 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다	41	13.1
체벌 등을 하는 동료교사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까 부담	16	5.1
기 타	23	7.4
합 계	312	100.0

* 586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인권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안정적 정기적인 시간확보가 어렵다’ 응답한 교사는 138명(44.2%), ‘옳게 가르치는지 인권교육의 내용에 자신이 없다’

에 94명(30.1%), ‘성적반영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다’에 41명(13.1%)의 교사가 각각 응답하였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사가 97.1%에 이르고 있지만, 인권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는 46.2%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Ⅳ-5〉 교사가 된 이후 인권연수 받아보았는가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예	100	17.3
아니오	478	82.7
합 계	578	100.0

* 586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교사가 된 후 인권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100명(17.3%), 인권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는 478명(82.7%)이다.

〈표Ⅳ-6〉 인권연수를 받은 후 변화

구 분	변화했다		변화하지 않았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인권연수를 받은 후 학생존중 언어 사용 노력	113	88.3	15	11.7	128	100
인권연수를 받은 후 신체적·정신적 모욕 주는 차별 안 함	108	89.3	13	10.7	121	100
인권연수를 받은 후 성적·외모·경제적 형편 등으로 차별을 안 하려고 노력	114	95.0	6	5.0	120	100
인권연수를 받은 후 학생들에게 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최대한 부여	71	62.3	43	37.7	114	100

여						
인권연수를 받은 후 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환경 구성 필요성 깨달음	101	87.1	15	12.9	116	100

* 586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인권연수를 받은 교사만은 대상으로 인권연수를 받은 후의 변화에 대한 항목을 질문한 결과, 학생들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교사가 113명(88.3%), 신체적·정신적 모욕감을 줄 만한 체벌을 하지 않게 변화했다는 교사는 108명(89.3%), 성적·외모·가정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교사가 114명(95%),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 등에서 선택의 권한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교사가 71명(62.3%), 인권존중을 위한 학교환경의 구성이 필요함을 알게 된 교사가 101명(8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권연수가 교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Ⅳ-7> 인권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다른 연수가 더 필요해서	88	17.9
정보를 접해보지 못해서	312	63.5
시간이 맞지 않아서	68	13.8
기 타	23	4.7
합 계	491*	100.0

* 586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인권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로 인권연수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

〈표Ⅳ-9〉 학생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들 전체 (복수응답)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447	26.0
인권교육 강화	227	13.2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197	11.4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176	10.2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108	6.3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119	6.9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76	4.4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76	4.4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207	12.0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88	5.1
합 계	1,721	100

*586명의 응답자들의 결측치를 제외한 복수응답 내용을 분석함.

학교에서 학생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입시경쟁 해소’가 447명(26%), ‘인권교육 강화’가 227명(13.2%),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이 207명(12%), ‘노후한 교육시설 개선’이 197명(11.4%),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이 176명(10.2%) 순으로 많이 나왔다.

인권교육과 인권연수, 학생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묻은 첫 번째 영역의 설문 결과, 97%에 달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

교에서의 인권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교사가 먼저 인권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인권연수를 접할 기회조차 많지 않아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권연수를 받은 후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였고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교사들에게 인권연수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충분히 인권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학교에서는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창의적 재량활동 등을 이용한 안정적인 시간 확보와 이를 담당할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청에서는 인권교육의 지도안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등의 뒷받침을 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입시경쟁 해소와 인권교육 강화,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선택권 보장, 학교의사결정에의 참여보장을 꼽았다. 또한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폭력(집단따돌림)과 야간자율학습 등의 강제 과잉학습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 보충수업 등의 학습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Ⅳ-10> 학생선도부가 하는 활동과 선도부 활동 찬성여부

구 분	한다		하지 않는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등하교시 교통지도	446	76.1	140	23.9	586	100
쉬는 시간 교내 순찰 활동	270	46.1	316	53.9	586	100
학생별점 정리 및 통계내기	252	43.0	334	57.0	586	100
점심시간에 무단외출학생 적발	372	63.5	214	36.5	586	100
점심시간 급식질서 도우미 활동	330	56.3	256	43.7	586	100
등교 시 교문지도에서 위반 적발	446	76.1	140	23.9	586	100
선도부의 활동에 대한 찬성 여부	449	76.6	137	23.4	586	100

학생 생활지도 역할을 맡은 학생조직(이하 선도부)과 관련한 질문이다. 선도부가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등하교시 교통지도’ 446명(76.1%), ‘점심시간에 무단외출 학생 적발’ 446명(63.5%), ‘점심시간 급식질서 도우미’ 330명(56.3%), ‘등교 시 교문에서 용의복장 불량학생 적발’ 446명(76.1%)으로 그 활동 비율이 높게 나왔다. 학교별로 학생도우미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선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학생적발이나 감시역할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별점 정리 및 통계를 내는 역할을 한다는 응답도 252명(43%)이나 되었다. 기타의견으로 기본생활 캠페인 등의 캠페인 활동, 등하교시 지각학생지도나 인사하기 지도, 학교행사 도우미, 흡연학생 지도, 야간 자기주도 학습 지도 등의 응답이 있었다. 선도부가 없다는 응답은 6번 있었다(??). 위와 같은 선도부의 역할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9명(76.6%)이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37명(23.4%)이다.

<표Ⅳ-11-1> 선도부에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교사의 학생지도업무를 도와주므로	51	11.3
학생들 스스로 서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260	57.6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어서 타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126	27.9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14	3.1
합 계	451	100.0

* 586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선도부의 활동에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학생 스스로 교칙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60명(57.6%), 타 학생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경우 126명(27.9%), 교사의 학생지도업무를 도와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1명(11.3%)이었다.

<표Ⅳ-11-2> 선도부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학생 간 감시, 적발을 위한 조직이므로	41	23.7
교사의 도우미 역할에 지나지 않으므로	20	11.6
학생 내부의 권력위계를 만들어 억압적이므로	40	23.1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으므로	66	38.2
기 타	6	3.5
합 계	173	100.0

* 586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선도부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6명(38.2%), 학생 간 감시와 적발을 위해 만들어진 학생조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명(23.7%), 학생 내부의 권력위계를 만들어 억압적인 학생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명(23.1%), 교사의 도우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명(11.6%)이었다.

〈표Ⅳ-12〉 학생회 활동을 제한하지 않게 하기위한 조치의 필요성 유무

구 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학생자치회의의 정례화	526	89.8	60	10.2	586	100
학생회장 선거 직선제로 운영	563	96.1	23	3.9	586	100
학생회칙 제·개정외 자율권 확보	493	84.1	93	15.9	586	100
학생회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물적 지원	562	95.9	24	4.1	586	100
학교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474	80.9	112	19.1	586	100
학생회 간부구성 시 교사추천제·임명제 폐지	326	55.6	260	44.4	586	100
학생 대표자회의 시 자유로운 안건선정 권한보장	547	93.3	39	6.7	586	100
교사대표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교환 및 조율	554	94.5	32	5.5	586	100
학생회의 설문조사 및 집단행동 등 자율적인 활동보장	456	77.8	130	22.2	586	100
학생회 건의사항을 교직원회의나 기획회의의 안건으로 채택	530	90.4	56	9.6	586	100

학생회자치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26명(89.8%), 학생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3명(96.1%), 학생회칙 제정과 개정의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명(84.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2명(95.9%)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74명(80.9%), 학생대표자 회의 시 자유로운 안건선정 권한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7명(93.3%), 교사대표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교환 및 조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4명(94.5%), 학생회의 설문조사 및 집단행동 등 자율적인 활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56명(77.8%), 학생회 건의사항을 교직원회의나 기획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은 530명(90.4%)이었다.

<표 IV-13> 학습권/수업권의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

구 분	침해된다		침해되지 않는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지역행사 등 외부행사에 참여	434	74.1	152	25.9	586	100
훈계나 징계 등을 이유로 수업시간에 별도의 징벌 실시	332	56.7	254	43.3	586	100
학교평가 등 교내행사준비를 위해 수업시간에 청소 실시	468	79.9	118	20.1	586	100
도 단위 논술평가·학업성취도고사 등 외부시험에 참여	277	47.3	309	52.7	586	100
동의 없이 월드컵 또는 올림픽 등 국제경기를 일방적으로 방송	427	72.9	159	27.1	586	100

학습권/수업권의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역행사 등 외부행사참여가 학습권/수업권의 침해라는 응답이 434명(74.1%), 훈계나 징계 등을 이유로 수업시간에 별도의 징벌을 실시하는 것이 학습권/수업권의 침해라는 응답은 332명(56.7%), 교내행사준비를 위해 수업시간에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수업권 침해라는 응답이 468명(79.9%), 동의 없이 올림픽 등의 국제경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업권의 침해라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한편 도 단위 논술평가나 학업성취도 고사 등의 참여가 수업권의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침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7%, 침해된다는 응답이 47.3%로 찬반의 의견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교육청에서 오는 급한 공문처리로 인해 수업권/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었다.

<표Ⅳ-14> 교육과정 결정 시 학생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

구 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개인의 선택교과 결정	505	86.2	81	13.8	586	100
계발활동 부서 선정	568	96.9	18	3.1	586	100
교과재량활동의 교과 선정	443	75.6	143	24.4	586	100
창의적 재량활동의 내용 선정	420	71.7	166	28.3	586	100
학사일정(수련활동, 축제, 체육대회 등 주요일정)	334	57.0	252	43.0	586	100

교육과정 결정 시 학생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개인의 선택교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5명(86.2%), 계발활동 부서 선정에 대해서는 568명(96.9%)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 교과재량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의 내용선정에도 학생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43명(75.6%), 420명(71.7%)이었고, 수련회나 체육대회 등의 주요 학사일정 결정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334명(57%)나 되었다.

<표Ⅳ-15> 학교규정을 정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가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여 결정	217	37.0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게시판 운영	130	22.2
학급자치회의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학생의견을 모아 찬반투표	126	21.5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알리고 의견 반영	110	18.8
기 타	3	0.5
합 계	586	100.0

학업성적관리 규정이나 학생생활규정 등을 정할 때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대표가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학생과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는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22%, 학급자치회의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21.5%,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8.8%로 여러 가지 방법에 고르게 응답하

였다.

수업과 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두 번째 영역의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수업과 교육에 관한 권리는 단지 교과 수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며 학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배워나가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표라 할 때 교과교육의 권리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자치활동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자치회의의 정례화나 학생회 자치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임을 위 설문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학생대표자 회의 시 자유로운 안건선정의 권한을 보장하고, 학생회칙제·개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다. 또한 학생회의 설문조사 및 집단행동 등의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도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학생회의 건의사항을 교직원회의나 기획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90% 가량 찬성하였다. 이것은 학생자치활동의 결과를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의 권한강화를 통해 활발한 의견교류와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도부를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공동생활의 규칙을 정하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서로를 감시·지도하도록 하는 억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규칙과 태도를 스스로 배워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업과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 행사에 동원된다든지 계획에 없던 학교행사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바탕을 두지 않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갑작스러운 공문처리 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벌이나 징계에 관련된 사항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도와 훈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체벌을 대체할 수단으로 교내청소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496명(84.6%),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응답은 404명(68.9%),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응답은 420명(71.7%), 상담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539명(92%),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6명(93.2%)이었다. 체벌을 대신할 수단으로 교사들이 상담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와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을 꼽은 것은 비중있게 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타의견으로 명상과 자기 돌아보기 등이 있었다.

<표IV-16> 지도와 훈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체벌을 대체할 수단

구 분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없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교내청소	496	84.6	90	15.4	586	100
독서와 글쓰기	404	68.9	182	31.1	586	100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노동	420	71.7	166	28.3	586	100
상담전문가와 상담과 치료	539	92.0	47	8.0	586	100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546	93.2	40	6.8	586	100

체벌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상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칭찬할 일조차 점수로 표현된다는 응답이 209명(35.7%)로 가장 높았고, 상벌 점수 기준의 자의적인 적용이 문제라는 응답은 100명(17.1%), 학생통제를 목적으로 한 상·벌점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89명(15.2%), 상벌제와 동시에 체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응답은 58명(9.9%), 학업성적 뿐 아니라 생활태도까지 점수화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57명(9.7%)이었다. 반면에 체벌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상벌제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3명(7.3%)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는다’, ‘상벌점이 남발된다’, ‘벌점을 받아도 학생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일부 교사들만 상·벌점 제도에 참여한다’,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및 애착이 없어

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Ⅳ-17> 체벌 대신으로 도입된 상벌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아무 문제없다	43	7.3
상벌 점수기준의 자의적인 적용	100	17.1
상벌제와 동시에 체벌이 여전히 존재	58	9.9
학업성적 뿐 아니라 생활태도까지 점수화	57	9.7
학생통제를 목적으로 한 상·벌점 기준 자체의 부당함	89	15.2
교사 학생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점수로 표현	209	35.7
기 타	30	5.1
합 계	586	100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과도한 교사업무 경감’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342명(29.8%), ‘과밀학급 해소’라는 응답은 249명(21.7%), ‘학생 간의 폭력금지’ 122명(10.6%), ‘일제교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17명(10.2%)이었다. ‘관리자의 열린 학교경영’이라는 응답은 107명(9.3%), ‘두발·복장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05명(9.1%), ‘강제적인 특기적성수업과 자율학습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2명(7.1%)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신뢰, 인성교육, 문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Ⅳ-18>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 (복수응답)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학생간의 폭력금지	122	10.6
과밀학급 해소	249	21.7
두발·복장규제 폐지	105	9.1
과도한 교사업무 경감	342	29.8
관리자의 열린 학교경영	107	9.3
일제고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변화	117	10.2
강제적인 특기적성수업과 자율학습 폐지	82	7.1
기 타	25	2.2
합 계	1,149	100

* 586명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학생 간 폭력, 금품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운영 강화’가 202명(34.5%),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166명(28.3%),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교육’ 108명(18.4%), ‘인권교육 실시’ 87명(14.8%)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풍토 조성,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강화, 두려움 없이 폭력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교육,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프로그램 운영,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해소, 배려심과 이타심 향상을 위한 가정교육,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생활지도단 구성, 학생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Ⅳ-19〉 학생 간 폭력/금품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인권교육 실시	87	14.8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교육	108	18.4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202	34.5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166	28.3
기타	23	3.9
합 계	586	100

징계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관한 문항에서 위원회의 소집여부가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1명(10.4%),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은 177명(30.2%)이었다. 한편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226명(38.6%),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2명(20.8%)이었다.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진술이 징계결정에 영향을 주는 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50명(8.5%),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은 375명(64%),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144명(24.6%),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7명(2.9%)이었다.

<표 IV-20>

징계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관한 문항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위원회 소집 여부가 사안이나 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61	10.4	177	30.2	226	38.6	122	20.8	586	100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에 결정을 준다	50	8.5	375	64.0	144	24.6	17	2.9	586	100
위원회에서 학생의 사안충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126	21.5	388	66.2	55	9.4	17	2.9	586	100
위원회 구성에 학생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123	21.0	237	40.4	178	30.4	48	8.2	586	100
징계 결정과 집행에 대해 위원회 단체와 연계한다	112	19.1	290	49.5	147	25.1	37	6.3	586	100
징계의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38	6.5	189	32.3	195	33.3	164	28.0	586	100
징계 후 학생의 행동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26	4.4	339	57.8	187	31.9	34	5.8	586	100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당해 수상이나 수훈에 참여할 수 없다	89	15.2	359	61.3	107	18.3	31	5.3	586	100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해당학생의 가정형편이나 사안의 맥락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26명(21.5%),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388명(66.2%)로 긍정적인 응답이 87.7%였다. 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상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친 응답이 360명(61.4%)이었고, 징계결정과 집행을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친 응답이 402명(68.6%)이었다. 또한 징계의 사유와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합쳐 359명(61.3%), 징계 후 학생의 행동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을 합쳐 365명(62.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1명(37.7%)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당해 연도 수상이나 학생회활동에 제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448명(76.5%)이었다.

체벌과 징계에 관한 세 번째 영역의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벌을 대체할 수단으로 많은 교사들이 상담전문가와 상담과 치료를 선택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지도와 훈계를 위해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역의 상담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연계를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지도의 폭을 넓혀 학생들이 체벌과 징계를 통해 학교에서 퇴출되기보다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징계의 경우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별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학생의 가정환경과 사안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징계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교사의 업무경감이나 과밀학급 해소, 일제고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교사들이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과 교육정책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학생간 폭력과 금품갈취 등의 학생폭력문제이다. 학생 내부에 형성된 권력의 서열과 그 서열에 따른 학생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응답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업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환경 재구성을 위한 사항을 18개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Ⅳ-21>

학교환경 재구성에 관한 사항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합 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 학교화장실에 온수가 나오도록 한다	281	48.0	290	49.5	14	2.4	1	0.2	586	100
2. 화장실 청소는 외부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에 위탁하도록 한다	305	52.0	232	39.6	40	6.8	9	1.5	586	100
3. 화장실에 휴지, 비누, 생리대, 자판기 등을 마련한다	256	43.7	284	48.5	42	7.2	4	0.7	586	100
4. 남녀학생 탈의실을 별도로 마련한다	296	50.5	260	44.4	29	4.9	1	0.2	586	100
5. 학생휴게공간을 마련한다	193	32.9	270	46.1	112	19.1	11	1.9	586	100
6. 냉난방을 임의가 아니라 온도가 기준에 따라 자동한다	258	44.0	299	51.0	24	4.1	5	0.9	586	100
7. 정규수업외의 학습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다	281	48.0	287	49.0	14	2.4	4	0.7	586	100
8. 아플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한다	228	38.9	307	52.4	49	8.4	2	0.3	586	100
9. 학교급식에 되도록 근거리 농산물 식자재를 사용한다	282	48.1	282	48.1	19	3.2	3	0.5	586	100

10. 급식에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244	41.6	328	56.0	13	2.2	1	0.2	586	100
11.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성을 살린 교과실 운영한다	281	48.0	281	48.0	21	3.6	3	0.5	586	100
12. 교무실이 아년별도의 상설을 충분히 확보한다	317	54.1	258	44.0	10	1.7	1	0.2	586	100
13.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상담사와 상담사상시 협조한다	328	56.0	252	43.0	5	0.9	1	0.2	586	100
14. 빈곤학생 특별히 필요한 위터나 지사와 조한다	304	51.9	273	46.6	7	1.2	2	0.3	586	100
15. 행정위 교무부서 학년부와 서체제로 한다	297	50.7	248	42.3	34	5.8	7	1.2	586	100
16. 예·결산 학교구성원 게알아볼 수 있도록 불여 공개한다	261	44.5	294	50.2	31	5.3	0	0	586	100
17. 학교운영 회의 회의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9	35.7	304	51.9	66	11.3	7	1.2	586	100
18. 연구시범 운영은 학생, 의의시행	243	41.5	270	46.1	60	10.2	13	2.2	586	100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 재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로 학교 시설 면과 관련된 질문인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71명(97.4%), 화장실청소는 외부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37명(91.6%), 화장실에 휴지, 비누, 생리대자판기 등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40명(92.2%), 남녀학생 탈의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56명(94.9%), 학생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463명(79%),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냉난방 시설을 갖춰 임의적 기준이 아닌 온도기준에 따라 가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57명(95.1%), 아플 때 누구나 쉴 수 있도록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35명(91.3%)이었다.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질문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 되도록 근거리의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64명(96.2%), 급식에 교사와 학생의 의견반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72명(97.6%)이었다.

교과수업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교과별 필요한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과별 특성을 살린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62명(95.9%), 정규수업외의 특기적성수업, 방과후학교 수업, 자율학습 참여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강제적인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를 합쳐 568명(96.9%)이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무실이 아닌 별도의 상담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를 합쳐 575명(98.1%),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상담전문가와 상시 연계하여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를 합쳐 580명(99%), 빈곤학생처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상시적으로 연계하여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를 합쳐 577명(98.5%)이었다.

교육청 공문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 위주의 교무부서 조직에서 탈피하여 학년부와 교과부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를 합쳐 545명(93%),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을 학교구성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를 합쳐 513명(87.5%), 학교의 예·결산을 학교 구성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이고 풀이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를 합쳐 555명(94.7%)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사 뿐 아니라 학생, 보호자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물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고와 필요하다고를 합쳐 513명(87.5%)이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학교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

생의 총체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하여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도 각종 규정이나 학사일정, 학교 예결산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된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90%가 넘는 교사들이 해설을 포함한 예·결산 공개가 필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한 결과로 볼 때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여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조직도 교육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감히 학년부나 교과부서 체제로 전환하여 교사들의 삶과 학생들의 삶이 보다 밀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학부모 설문지분석결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 12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학부모 자신과 자녀들의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생활관련 상벌규정 및 성적관리 규정이 학부모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다’는 응답에 195명(56.5%),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으로 104명(30.1), ‘잘 모르겠다’에 41명(11.4%) 기타의견에서도 성적 이외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학교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II-5-1> 학생생활관련 규정의 학부모 전달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다	195	56.5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104	30.1
잘 모르겠다	41	11.9
기타	5	1.4
합 계	345	100.0

<표 III-5-2> 신상조사카드 작성 내용으로 적당한 것

구 분	학생 주민등록번호		생활수준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넣어도 된다	203	58.8	123	35.7	167	48.4	99	28.7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118	34.2	161	46.7	112	32.5	162	47.0
넣어서는 안 된다	19	5.5	56	16.2	56	16.2	74	21.4
모르겠다	5	1.4	5	1.4	10	2.9	10	2.9
합 계	345	100	345	100	345	100	345	100

신상조사카드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의 직업의 경우에는 넣어도 된다라는 응답이 각 203명(58.8%), 167명(48.4%)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생활수준이나 부모의 학력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을 각각 161명(46.7%), 162명(47%)으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징계기간(교내봉사) 중 수업 참여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교육권침해이므로 수업 끝나고 받아야 함	196	56.8
징계를 받는 것이니 수업참여는 당연	66	19.1
부당하지만 징계니까 어쩔 수 없음	72	20.9
잘 모르겠다	6	1.7
기 타	5	1.4
합 계	345	100

징계기간(교내봉사) 기간 중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교육권보호차원에서 수업은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1항과 2항을 합하여 262명(76%)으로 수업참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나온 5명도 대체로 수업참여를 유도하면서 과외시간에 징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견이었다.

<표 III-5-4> 징계시 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이 보장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형식적으로만 보장됨	83	24.1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됨	101	29.3
실질적으로 반영됨	58	16.8
잘 모르겠다	103	29.9
합 계	345	100

학교 징계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는 의견이 101명(29.3%),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의견은 83(24.1%)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견도 103명(29.9%)로 나와서 징계와 관련한 당사자 의견진술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반영된 듯하다.

<표 III-5-5> 학교생활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녀가 경험했던 일

항 목	자주있다		가끔있다		거의 없다		전혀없다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 외모나 신체적 특징 (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21	6.1	111	32.2	110	31.9	103	29.9
2. 협박이나 폭력으로 돈이나 물건을 뺏긴 경험이 있다.	6	1.7	43	12.5	104	30.1	192	55.7
3.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6	1.7	22	6.4	63	18.3	254	73.6
4.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8	2.3	38	11.0	85	24.6	214	62.0
5. 친구들 끼리 욕설을 사용한다.	65	18.8	152	44.1	74	21.4	54	15.7
6.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17	4.9	85	24.6	122	35.4	121	35.1
7. 협박이나 폭력으로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 준 경험이 있다.	6	1.7	20	5.8	75	21.7	244	70.7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녀가 경험한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표 III-5-5>와 같다.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당한 경험이 가끔이나 자주 있다라는 응답이 132명(38.3%)로 나타났으며, 헐박이나 폭력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153명(44.3%)으로 나타나서 거의 과반수의 학생들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자녀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4명(26.4%)의 학부모가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학생들 간 집단 폭행으로 괴롭힘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자녀가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131명(약 38%)의 학부모가 자녀의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자녀걱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들끼리 욕설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4명(15.7%)의 학부모만이 자녀들이 친구들 간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뿐 75%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욕설을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끼리 언어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에서 자녀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121명(35.1%)만이 불공평한 경험이 없으므로 나타나고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조사대상의 65%가 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자녀가 헐박이나 폭력으로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 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0%에 가까운 수치의 적지 않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그런 경험이 있음을 인정했다. 단순한 협박이나 폭력을 넘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숙제를 대신하게끔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5-6〉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것들
(복수응답)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두발규제	103	10.1
복장규제	80	7.8
단체기합 및 체벌	109	10.6
무작위 소지품 검사	32	3.1
학교폭력(집단따돌림)	233	22.8
벌점 및 상벌점제	60	5.9
학생의사표현 규제	145	14.2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규제	56	5.5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152	14.8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 차별	54	5.3
합 계	1,024*	100

* 총응답자 345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복수응답(3순위까지 표기)에 22.8%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집단따돌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14.8%)와 학생의사표현 규제(14.2%)라고 응답하여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 과잉학습과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II-5-7〉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것들
(복수응답)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103	10.1
인권교육 강화	80	7.8
노후한 교육시설 개선	109	10.6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2	3.1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33	22.8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60	5.9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145	14.2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56	5.5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152	14.8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54	5.3
합 계	1,024*	100

* 345명의 총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복수응답 질문(3순위까지 표기)에 가장 많은 학부모가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22.8%), 그 다음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14.8)과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14.2%)라고 응답하여 앞서의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5-8>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는지 아는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잘 알고 있다	38	11.0
대체로 알고 있다	73	21.2
자세하게 모른다	140	40.6
전혀 모른다	94	27.2
합 계	345	100.0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30% 정도의 학부모만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70%에 가까운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5-9>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보장	30	8.7
조금 보장	185	53.6
조금 침해	101	29.3
매우 침해	29	8.4
합 계	345	100.0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에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7%의 학부모만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

머지 90%가 넘는 학부모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5-10>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인권교육의 부재	60	9.1
획일적인 학교 규정	125	18.9
교직원(교장, 교감, 교사 등)의 변하지 않는 인권의식	101	15.3
체벌 및 징계	69	10.5
입시위주의 교육	113	17.1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구조	86	13.0
보호자 및 성인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73	11.1
상벌점제의 도입	27	4.1
기 타	6	0.9
합 계	660*	100

* 345명의 응답자들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해당되는 것 모두 표기)라는 질문에 학부모들은 획일적인 학교 규정(18.9%), 입시 위주의 교육(17.1%)을 꼽고 있으며, 교직원의 변하지 않는 인권의식(15.3%)과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구조(13.0%)도 비중

있는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외에 보호자 및 성인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11.1%)과 차별 및 징계(10.5%)도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5-11>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의 내용을 아는 정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잘 알고 있다	13	3.8
조금 알고 있다	67	19.4
잘 모르고 있다	168	48.7
전혀 모르고 있다	97	28.1
합 계	345	100.0

한국이 1991년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에 가입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0%에 가까운 학부모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자녀들과 관련한 인권규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 공통질문에 대한 결과분석

대상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설문에 공통으로 들어간 설문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6-1>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두발규제	770	24.8	174	10.2	103	10.1
복장규제	580	18.7	117	6.8	80	7.8
단체기합 및 체벌	278	9.0	141	8.3	109	10.6
무작위 소지품 검사	125	4.0	52	3.0	32	3.1
학교폭력(집단따돌림)	209	6.7	410	24.0	233	22.8
벌점 및 상벌점제	194	6.3	89	5.2	60	5.9
학생의사표현 규제	277	8.9	151	8.8	145	14.2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규제	165	5.3	104	6.1	56	5.5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464	15.0	348	20.4	152	14.8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 차별	41	1.3	123	7.2	54	5.3
합 계	3,103	100.0	1,709	100.0	1,024	100.0

* 각 설문대상별 총응답자들 중 결측값을 제외한 응답자의 복수응답내용을 분석한 것임.

학교생활에서 평소 친구들과 사이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조사를 초등학

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통으로 질문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들과끼리 욕을 사용한다가 761명(81.5%)로 가장 많았고,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이 620명(66.4%),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540명(57.8%),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342명(36.6%)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친구들과 끼리 욕설을 사용한다 291명(84.39%)으로 가장 많았고,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242명(70.2%),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224명(64.9%) 순으로 나타나 거의 유사하게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도록 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규제 770명(24.8%), 복장규제 580명(18.7%),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464명(15.0%) 순으로 나타나 두발규제 및 복장규제를 합치면 과반수를 차지해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이 410명(24%)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자율학습 및 강제 과잉학습 348명(20.4%), 두발규제로 174명(10.2%)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 학교폭력(집단따돌림) 233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152명(14.8%), 학생 의사표현 규제 145명(14.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는 1순위가 학교폭력(집단따돌림)인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규제였으며, 2순위에서도 교사와 학부모는 야간자율학습 및 강제 과잉학습인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복장규제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공통적인 응답으로는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과잉학습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가고 싶은 학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6-2>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중·고등학생		교 사		학부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489	16.0	447	26.0	103	10.1
인권교육 강화	261	8.5	227	13.2	80	7.8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188	6.2	197	11.4	109	10.6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68	12.0	176	10.2	32	3.1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78	9.1	108	6.3	233	22.8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237	7.8	119	6.9	60	5.9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124	4.1	76	4.4	145	14.2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325	10.6	76	4.4	56	5.5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	15.5	207	12.0	152	14.8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310	10.2	88	5.1	54	5.3
합 계	3,054	100.0	1,721	100.0	1,024	100.0

* 각 설문대상별 총응답자들 중 결측값을 제외한 응답자의 복수응답내용을 분석한 것임.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경우 입시경쟁 해소 489명(16.0%),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명(15.5%),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68명(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는 입시경쟁해소 447명(26%), 인권교육 강화 227명(13.2%),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207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는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33명(22.8%),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152명(14.8),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145명(14.2%)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순위로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입시경쟁 해소로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라고 응답했으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공통으로 응답한 질문으로는 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과 교사의 의견이 비슷한 반면, 학부모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서로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1991년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에 가입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에게 양쪽에 질문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경우 잘 알고 있다가 13명(3.8%), 전혀 모르고 있다가 97명(28.1%)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4명(4.1%), 전혀

모르고 있다 82명(14.0)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보다 학부모가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에 대해서는 2배 가량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0~80%의 학부모와 교사가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6-3>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의 내용을 아는 정도

구 분	학부모		교사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잘 알고 있다	13	3.8	24	4.1
조금 알고 있다	67	19.4	222	37.9
잘 모르고 있다	168	48.7	258	44.0
전혀 모르고 있다	97	28.1	82	14.0
합 계	345	100	586	100

IV. 소수자 학생 심층면접 결과

1.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다수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 상황을 살펴보기에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학생 집단 속에서 소수인 학생들, 잘 드러나지 않는 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알아내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장애인, 이주/다문화, 성소수자, 한부모가정, 운동선수, 빈곤의 6개 영역 대해서 진행했으며 가능한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아동·학생 당사자를 면접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자가 섭외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면접조사하였다. 이 6개의 영역 외에도 10대 비혼모, 학생간 폭력 피해·가해 학생 등도 조사 대상일 수 있으나 심층면접 진행과정에서 실제로 빈곤, 한부모 가정 출신의 아동·청소년으로 포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6개 영역으로 제한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해당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기 위한 질문,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식 및 내용, 구제기구의 형태와 운영에 대한 의견,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2. 장애 학생 관련 면접 내용

장애학생 관련 면접은 장애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애 학생 관련 전문가와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 아동들은 학교에 취학, 진학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차별받게 된다. 면접대상자들은 특수학교의 정원은 장애 아동의 수에 비해 부족하고, 경기도 지역 특수학교의 수는 부족한 편으로 특수학교가 없어서 다른 먼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거나 입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수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특수 학급을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취학하게 되더라도 엘리베이터나 난간과 같은 시설이 미비하고 통학로와 교통수단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실질적으로는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통합교육은 물리적으로 한 반에 학생들을 넣어놓기만 할 뿐이라는 것도 지적되었다.

면접대상자들은 특히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학교생활에서 큰 문제점이라 답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형식적인 통합교육, 장애를 조롱거리와 멸시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회, 경쟁적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꼽았다. 또한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장애학생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지 여부는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있는지에 달려 있는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특수교육의 질 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했다. 면접대상자들은 교사들이 특수학급을 맡을 때 진급이나 승진 등과 관련하여 맡는 일이 많다고 하며, 현재와 같은 교사들 간의 경쟁이나 승진 문제 또한 장애 학생의

인권에서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그밖에도 수학여행 등의 학교 활동에서 장애 학생이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점도 학생인권침해로 거론되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장애 학생들에 맞춰진 교육이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 중심으로 짜여 있고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로 만들어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장애 학생들을 주체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되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비장애 학생, 교사, 보호자(부모 등)들도 장애 학생에 대해서 판단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장애 학생들을 시혜의 대상, 도와줄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애 유형 등에 맞추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과 의사표현을 지원하며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다.

장애 학생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례에는 장애로 인한 차별로 포괄될 것으로 보이나, 그 이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과 연계하여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운영 과정에서 구체기구와 교육청이 학교들을 감독하고 예산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들의 취학과 통학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도청·도의회와 협의하여 장애 학생들의 통학 수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면접대상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언급한 것은 인권교육이었다. 비장애/장애 학생들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차별 방지 교육 등이 정규 교과목처럼, 아니면 최소한 1달에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체험적 교육, 장애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교육,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멘토링, 활동보조 등을

통해 같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다. 교사들과 학교 관리자들도 의무적으로 직무연수 등을 통해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차별 방지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이주민 ·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면접 내용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한 면접대상자들은 유치원 때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고등학교 재학중인 남학생과 그 모친이었다. 학생의 성격이 사교적인 편이라 학교에서의 적응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 정부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가 서툰 경우,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한국 학생들의 눈에 낯설게 보이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최근에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이더라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일로, 면접대상자들의 경우에도 모친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이지만 학생은 초등학교 · 중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접근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주 아동도 존재하는데, 의무취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임의로 입학/전학을 허가하게 되어 있어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면접에서도 취학 이전에 아동을 감금시켜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이 언급되었는데, 초, 중, 고등학교 취학 연령보다 더 나이가 적은 아

동들은 보육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성장 환경은 이주민·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취학 이후에도 언어, 사회성 등 학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조건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교육을 시킬 수 없었고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가 불안정한 것은 학생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되고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이 이야기한 현실은 현재 다문화 정책의 허점을 보여준다. 사교육이 필수로 취급되는 한국 고등학교의 현실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 등이 결합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면접대상자들은, 보호자가 한국어에 서툰 이유 때문에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보호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가정통신문, 성적표 등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 면접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생활 조건이 주거, 의료, 경제적인 면에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이주노동자·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인권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다문화가정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와 같은 문제는 국적 관련 법률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정책·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신장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전에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이주민·다문화 가정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 외에도 다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은 이주민·다문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주민인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은 물론이며, 이주민·다문화 가정 특히 미등록이주자 가정의 경우 처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지침이나 교사 직무연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민·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무상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주민·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의료에의 접근 등을 학교가 제공하고 돕는 것 등도 학생들의 보편적 건강권을 증진시킬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다문화 이해 교육 등도 인권의 관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교 관리자, 보호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서 이주 아동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성소수자 학생 관련 면접 내용

성소수자 학생관련 면접은 학생 당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성소수자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닐 때 어려운 점으로 면접대상자들은 우선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힐 수도 없고, 또 성소수자가 당연히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이성애 중심적인 학교 문화를 지적했다. 면접대상자들은 교과서의 내용,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인식 등이 여전히 이성애 중심

적이며, 성별이분법·이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반검열’ 등의 사례들도 이야기되었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살게 된다고 한다.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냈을 때 학생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하거나 ‘아우팅’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교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성소수자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하거나 학생들을 차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도 성소수자 학생들은 잘 이해받지 못하고 차별에 노출되기 쉽다. 면접대상자가 이야기한 것들 중 두발복장규제 등을 비롯하여 아직도 학교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 등은 비단 성소수자 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것도 어려운 점 중 하나로 꼽혔다. 종교계 사립학교 등에서는 보수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데, 이때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직접 교육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종교계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회의 편견이 답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반검열’과 같이 제도적으로 차별과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인권 구제기구를 통한 개입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인권교육은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화를 바꾸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소수

자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성 전반에 대해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보호자들에게 교육이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성애 중심적인 내용의 교과서나 교육 내용 등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면접대상자의 의견대로,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신장계획을 세우거나 구제기구를 운영하면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성소수자인권단체, 전문적이고 인권옹호적인 상담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관련 전문 기관 등과 연계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5. 한부모가정 학생 관련 면접 내용

한부모 가정 학생관련 면접은 당사자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주변 학생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적다. 그러나 양부모 가정만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고 한부모 가정을 어딘가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동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문제적 존재로 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는 학교의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

호자가 학교에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난다. 면접 대상자들은 한부모 가정은 대개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신청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떼어서 제출하는 과정도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

면접대상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생각하지 않는 양부모 가정 중심의 교육과정, 매스미디어 등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 결과, 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동정하여 도우려고 하고, 보호자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여 학교에 거짓말을 하는 등의 일이 학생들에게는 더 부담스럽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서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힌 것 중 하나는 인권교육이었다. 학생들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학생 스스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면접대상자들은 교사와 보호자들, 어른들에게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가족 인권교육, 학교 인권교육 등 함께 받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거나 과제를 내는 것, 그리고 양부모 가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언행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운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묻는 가정환경조사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 사생활보호 등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하기 위한 무상교육, 복지정책 등을 실현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 운동선수 학생 관련 면접 내용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학생과 관련된 면접은 당사자 학생과 그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운동선수인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권문제는 폭넓은 것으로 보인다. 면접대상자들은,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 과도한 훈련량의 문제, 운동부에서의 폭력 문제, 학교에서의 차별 문제 등을 꼽았다. 면접대상자들은 운동선수 학생들은 운동경기,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하여 운동부 안에서 교사에 의한,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합숙을 하고 과도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때로는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면접대상자의 말에 따르면, 운동선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쟁적이고 소수의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현재의 체육관련 대학입시 시스템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때에도 수업을 받지 못하고 운동만 하다가, 특별한 상을 수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업하게 되면 운동선수로 발탁되지도 못하고 일반 학생들처럼 교육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또래 친구들을 폭넓

게 사귀지 못하고 다양한 학교 생활에도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선수 학생들은 차별에도 노출되어 있다. 우선 운동선수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당사자가 된다. 운동선수 학생들 중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 외에도, 면접대상자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운동부’ 학생이라는 것만으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그 학생을 무시하는 경향, 또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운동부 학생들이 수업, 학교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권·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면서 운동부 학생들의 수업 참여, 학교 생활에 참여 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체육계에서의 폭력 문제가 불거졌는데, 운동선수 학생들이 겪는 가장 가시적인 인권문제는 폭력·체벌 등이다. 대부분의 운동부에서는 구타, 기합 등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만연해 있다. 운동부라고 하여 체벌금지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체벌금지와 더불어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운동부 지도자,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입시성적을 올리기 위한 체육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와 한국 체육계의 시스템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운동부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동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7. 빈곤 학생 관련 면접 내용

빈곤학생 관련 면접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와 학교에서 빈곤학생들을 위해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자들은 빈곤 학생들이 대부분 가정 해체나 빈곤으로 인해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임이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학교 생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빈곤 학생들은 사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가정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들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습 능력도 떨어져서 성적도 낮을 수밖에 없으며, 대인관계 등도 서툴러서 다른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방임,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도벽이 있다거나 위축되어 자기표현력이 부족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빈곤 학생들이 겪는 차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면접대상자들은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노출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급식지원이나 방과 후 수강권을 지원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확인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수치심,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면접대상자들은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 등을 작성해오도록 하는 것도 빈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했다.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아파트(임대아파트 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빈곤 학생들 개개인이 겪게 되는 교육 격차, 불평등도 심하지만 지역이나 학교들 간에 존재하는 교육 격차도 심하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등은 학교 자체가 사람들의 편견의 대상이 된다. 중·고등학교 자체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 위치해있고 어느 지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느냐에 따라 서열화되는 것이다.

교복 등 용의복장규제의 폐지가 빈곤 학생들에게 더욱 열등감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자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두발복장 등은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고 규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빈곤 학생들의 입장에서서는 복장을 통해 경제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더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 또는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과 함께 학생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사생활보호를 명시하여, 빈곤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 의복상태 등에서부터 이미 편견이 작용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요구된다.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실시는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면접대상자들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모두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적·인권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빈곤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자선을 베푸자는 내용이 아니라 빈곤 학생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다른 학생들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과 부조리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복이나 용의복장규제의 문제 등은,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서로 다른 머리카락과 외모, 서로 다른 의복 상태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학생들에게 인권감수성을 교육하는 것은 본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현실에서 교육지책으로 용의복장규제 등으로 학생인권 제한을 옹호하는 상황처럼 되어버린 셈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학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의복으로 숨기려 하기보다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면서도, 빈곤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교육의 확산과 함께 교복, 용의복장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교육비 면에서 무상교육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빈곤은 삶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빈곤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운영 과정에서 교육청과 구제기구는 이러한 연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빈곤 학생들의 경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상황이 빈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V. 학생인권조례 비교연구와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국내외 모델 비교연구

1. 학생인권 관련 조례 비교연구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과 아동¹⁾ 인권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 이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선언들이 나왔지만, 국제조약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협약은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에서는 우선 아동들에게 보장되는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정보 접근권, 휴식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용어와 관련해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만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연령기준도 제각각(청소년 보호법 : 만 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 9세이상 24세 이하)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연령기준인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만약 사회통념상 “아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정한 연령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 중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을 “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상 대학생 이상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그 어느 국제조약보다도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수는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1995년까지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했다. 불과 6년 만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1991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일본도 1994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협약이 만들어지고 많은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국제적인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인권의 실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서조차도 어른들이나 아동들은 협약의 존재나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과 아동들이 조약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 아동인권과 조례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차원의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개정을 하기도 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 수준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굳이 지방화시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역이다. 특히 아동들의 삶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흔히 아동들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공간이 바로 가정, 지역사회, 학교이다. 그래서 이 세 공간에서 아동들의 인권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세 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국가적 노력보다는 지역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지역에서부터의 선도적 노력이 국가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지역차원에서 선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이 아동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²⁾

다. 외국의 사례

1) 개괄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실현하기 위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내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차원의 기구(옴부즈만 등의 명칭으로)를 만들거나,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옴부즈만 설치 움직임은 뒤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2) 현재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는 한국의 제도적 틀에서 보면, 일반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구분하여 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단위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학생인권에 관한 이슈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자기 국가, 자기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입법적 노력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법을 통해 학생들을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에 ‘학생 안전 및 폭력방지에 관한 법률(The Student Safety and Violence Prevention Act)’를 통과시켜,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장애, 성,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2007년에 ‘학생인권법(Student Civil Rights Act)’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2007년에 강화된 학생인권법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국가로는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유사한 점들이 많으므로 일본에서 아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이 활발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들이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 1월 현재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표 IV-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권리조례 제정 현황

구분	자치체명	제정연월	조례명칭
중 합 조 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2000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홋카이도	2002년 3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나이에쵸(奈井江町)			
	기후현 타지미시	2003년 9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도쿄도 메구로구(日黒區)	2005년 11월	아동조례	
	홋카이도 메무로쵸(芽室町)	2006년 3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도야마현 우오즈시(漁津市)	2006년 3월	아동의 권리조례	
	도쿄도 도시마구(豊島區)	2006년 3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기후현 기후시	2006년 3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미에현 나바리시(名張市)	2006년 12월	아동조례	
	이시카와현 하쿠산시(白山市)	2006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후쿠오카현 시메마치(志免町)	2006년 12월	아동의 권리 조례	
	도야마현 이미즈시(射水市)	2007년 6월	아동조례	
	아이치현 도요다시(豊田市)	2007년 10월	아동조례	
개 개 별 조 례	의 견 표 명 · 참 여	도쿄도 나카노구(中野區)	1997년 3월	교육행정에 있어서 구민참가에 관한 조례
		사이타마현 츠루가시마시(鶴ヶ島市)	2000년 3월	츠루가시마시 교육심의회설치조례
		나가노현 히라야무라(平谷村)	2002년 12월	촌합병여부에 관한 주민투표조례
	권 리 구 체	효고현 가와니시시	1998년 12월	아동인권옴부즈퍼슨 조례
		기후현 기난쵸(岐南町)	2001년 3월	아동인권옴부즈퍼슨조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2001년 6월	인권옴부즈퍼슨조례
		사이타마현	2002년 3월	아동권리옹호위원회조례

학 교 재 해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2001년 5월	학교재해구제급부금 조례	
	학 대 방 지	도쿄도 무사시노시(武藏野市)	2003년 12월	아동학대방지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미에현	2004년 3월	아동을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
		사이타마현 교다시(行田市)	2004년 12월	아동, 고령자 및 장애인 에 대한 학대방지조례
		후쿠오카현 시메마치(志免町)	2005년 9월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오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 市)	2005년 12월	아동을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
	방 범 · 안 전	나라현	2005년 7월	아동을 범죄피해로부터 지키는 조례
		도쿄도 아라카와구(荒川區)		아동을 지키는 조례
		시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	2006년 9월	아동을 범죄피해로부터 지키는 조례

시 책 추 진 의 원 칙 조 례	중 합 적 인 내 용	오사카부 미노시	1999년 9월	아동조례
		도쿄도 세타가야구	2001년 12월	아동조례
		오카야마현 니히구라무 라(新座村)	2002년 3월	아동조례
		오사카부 이케다시(池田 市)	2005년 3월	아동조례
		도쿄도 초후시(調布市)	2005년 3월	아동조례
	아 동	고치현	2004년 7월	아동조례

현 장 적 내 용			
	홋카이도	2004년 10월	아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자화(少子化) 대책추진조례
	도쿄도 히노데초(日の出町)	2005년 12월	아동육성기본조례
	시가현	2006년 3월	아동조례
	도치키현 카누마시(鹿沼市)	2006년 3월	마을만들기 추진조례
	아키타현 아키다시	2006년 5월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시민과 사회의 역할에 관한 조례
	아키타현	2006년 9월	아동·양육지원조례
	이시카와현	2007년 3월	아동종합조례
	오오사카부	2007년 3월	아동조례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2007년 3월	아동조례
	기후현	2007년 3월	안심하고 아동을 키울 수 있는 기후현을 만드는 조례
	아이치현	2007년 4월	소자화(少子化)대책추진조례
	교토부	2007년 7월	양육지원조례
	사가현 사가시	2007년 9월	사가시 미래를 맡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어른의 역할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2007년 10월	아동·양육지원 추진조례
	야마구치현	2007년 10월	양육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양육지원·소자화대책추진에 관한 조례
구마모토현	2007년 10월	아동조례	
양 육 지 원			

건 전 육 성	오사카부 다이토시(大東市)	2007년 10월	아동기본조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2001년 12월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의 역할에 관한 조례
	시마네현 이즈모시(出雲市)	2002년 3월	21세기 시 청소년네트워크 조례
	에히메현 마쓰야마시(松山市)	2004년 4월	아동육성조례
	오카야마현 아사쿠치 시(淺口市)	2006년 3월	아동육성조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佐世保市)	2006년 6월	아동육성조례
	효고현 오노시(小野市)	2007년 12월	이지메 등 방지조례

출처 : 子ども條例ハンドブック(子ども權利研究 第12号), 2008.2, 日本評論社 117-120쪽

2) 일본 아동인권조례의 분류

일본에서 제정되고 있는 아동인권 관련 조례는 크게 종합조례와 개별조례, 시책추진의 원칙조례로 나눌 수 있다.

종합조례는 2000년 12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1월까지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조례를 제정했다. 종합조례는 ‘아동의 권리보장’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아동권리에 대한 이념, 가정·학교·시설·지역 등 아동의 생활의 공간에서의 관계만들기, 아동의 참가와 구제시스템, 아동시책의 추진 및 검증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보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념, 제도·시스

템, 시책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종합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인 타지미(多治見)시의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의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타지미(多治見)시의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 목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 - 제4조)

제2장 아동의 권리의 보급(제5조, 제6조)

제3장 아동의 생활의 장에서의 권리보장(제7조 - 제9조)

제4장 아동의 의견표명·참여(제10조 - 제12조)

제5장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회복(제13조 - 제18조)

제6장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검증(제19조 - 제22조)

제7장 잡칙(제23조)

부칙

개별조례는 개별적인 문제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나 방침을 정한 조례를 말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그 중 1998년 12월에 제정된 조례가 효고현

가와니시(川西)시의 옴부즈퍼슨(オンブズペーソン, ombudsperson) 조례이다. 이 조례는 아동권리에 관한 구제기관인 아동옴부즈퍼슨을 설치하고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책추진의 원칙조례’란 종합조례나 개별조례처럼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수단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의 지침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례들은 다시 종합적인 내용을 정한 것, 아동현장적인 내용을 담은 것, 양육지원, 건전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 있다(子ども権利條約綜合研究所 2008, 113-114).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 조례들 중에서 주목할만한 조례는 종합조례이다. 아동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 최초로 아동인권에 관한 종합조례를 제정한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시(川崎市)의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가와사키시의 사례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는 2000년 12월 12일에 가와사키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가와사키시 조례는 일본 최초의 종합적인 아동인권조례로 평가받고 있다(小宮山 健 治 2003, 8). 조례의 내용 속에 아동인권과 관련된 기준, 아동인권 침해시의 구제절차, 아동참여 등 아동인권 실

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사키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과정도 모범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참여, 아동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와사키시는 1998년 9월에 조례안 제정의 자문역할을 할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조례 검토 연락회의」를 두었다. 그리고 실제 조례안 작성을 담당할 「조사연구위원회」를 두고 조사연구위원회에는 성인 위원과 함께 9명의 아동 위원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례안을 아동의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해 「아동위원회」를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의 위원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시민살롱」을 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의 시민들이 월 1-2회 모여 연구와 대화를 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와사키 시에서는 200번이 넘는 회의를 했고, 많은 어른들과 아동들이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했다.

가와사키시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만들어졌지만, 한 도시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국제조약의 정신을 좀더 구체화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제조약에서는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조례로서 그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와사키 시 조례에서는 ‘인권옴부즈퍼슨’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아동 인권 침해사태에 대해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아동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하게 한다든지, 아동회의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조례 제정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당부서(아동 권리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여러 관련 부서들과 조정하는 조직인 ‘아동권리 시책추진 부회’를 설치했다.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11월 20일을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로 정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아동권리의 날 행사에는 250-4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를 소개하는 팸플렛(아동용, 일반용)과 권리학습용 교재를 만들고, 교육과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동참여기구로서 가와사키시 아동회의를 설치하여 아동을 공개모집하여 회의를 열고 있다.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동회의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에는 매월 1,3번째 일요일에 아동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총 25회가 개최되었다. 참가한 아동은 48명이었다. 아동회의에서는 가와사키 아동집회를 기획·운영하고 시장에게 보고회도 열고 있다.

가와사키 인권옴부즈퍼슨³⁾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상담업무와 인권구

3) 인권옴부즈퍼슨(ombudsperson)은 아동과 남녀평등에 관한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쉽게 편하게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2002년 12월 23일 푸른부천²⁾에서 개최한 “부천-가와사키 아동인권조례 간담회 자료집” 중에서).

1.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을 받아 조언하고 지원 2.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 필요

제업무를 하고 있다.

아동 권리상황을 검증하기 위한 제3자적 기관으로 아동권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개모집한 시민을 포함한 10인의 아동권리위원(학식경험자 8명,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2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가와사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아동 관련 시책들을 검증하고 있다(小宮山 健 治 2003, 9).

라. 국내의 사례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며,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에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특

에 따라 조사 3. 당사자간을 조정하고 관련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4 시 소속기관에 대해 제도개선의 의견표명과 시정(是正)권고를 실시 5. 인권에 관한 과제에 대해 의견공표

2003년 2월 기준으로 인권옴부즈퍼슨 2명, 전문조사원 4명, 사무국직원 3명, 비상근직원 1명이 일하고 있었다(小宮山 健 治 2003, 9).

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존재하고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일반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갖는 상임위원회이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집행기관이 작성·제출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다. 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한 조례를 집행기관이 발의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제도적 특성은 아동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감안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동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교육·학예 영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일반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2) 국내에서의 두 가지 방향의 시도

먼저 교육·학예의 영역에서 아동인권(학생인권)을 다루는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틀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발의에 의해 교육

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2005년경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다. 당시에 광주광역시에서는 흥사단, 광주YMCA, 청소년 포럼 준비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었다. 20여회에 걸친 회의와 16차례의 내부 논의 및 1차례의 준공청회를 거치면서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 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 검토, 가와사키시 조례 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 설정,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지 제작, 설문 실시와 분석 작업, 조례안 초안 제정 및 수정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 조례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들어 다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반 지방자치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있었다. 경기도 군포시가 2003년도에 청소년인권도시선언을 했고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실제 조례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경기도 부천시의 지방의제21(푸른 부천 21 실천협의회)에서 아동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역시 실제 조례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 일본 및 한국의 아동(학생) 인권 관련 조례 (안) 비교

일본에서 최초로 제정된 아동인권에 관한 종합조례인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와 비록 조례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조문화 작

업을 거쳐 공청회까지 개최했었던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는 총 8개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이념적 규정과 실체적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각 장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아동권리보장의 이념이나 원칙에 관한 기본적 내용(전문, 1장, 2장), 아동의 생활공간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시책에 관한 내용(3장), 구체적인 제도나 시스템에 관한 내용(4장, 5장, 6장, 7장)을 담고 있다.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의 목차>

전문

제1장 총칙(1조 ~8조)

제2장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소중한 권리(9조 ~16조)

제3장 가정, 양육·교육시설 및 지역에서 아동권리의 보장(17조 ~ 28조)

제1절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2절 양육·교육시설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절 지역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4장 아동의 참여(29조~34조)

제5장 상담 및 구제(35조)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36조~37조)

제7장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의 검증(38조 ~40조)

제8장 잡칙(41조)

그리고 가와사키시의 경우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로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퍼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와 남녀평등에 관한 인권침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총칙을 포함하여, 교육받을 권리, 자치에 관한 권리,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 · 연수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표Ⅳ-2> 가와사키시 조례와 광주광역시 조례(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안)
목적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시 등의 책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가정, 양육·학교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모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 및 학교 등(이하 학교)과 교직원 등(이하 교사)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함
보장하고 있는 주요 권리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자신을 지킬 권리, 놀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교육받을 권리, 자치에 관한 권리,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사생활

	할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참여할 권리	을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아 동 (학생) 의 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에서 아동의 참여권에 대해 규정 - 시는 아동이 시정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양육·교육시설 기타 활동의 거점으로 되는 공간에서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또는 지역에 있어서 문화, 스포츠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반 시책에있어서 보장해야(제29조) - 시정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가와사키시 아동회의 개최. 아동회의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함. 아동회의는 그 주체인 아동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아동의 총의(總意)로서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제출된 의견을 존중해야 함(제30조) - 시는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들만이 자유롭게 안심하며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함(제31조) -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제32조) - 아동, 부모, 기타 지역주민에게 좀더 열린 양육·교육시설을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보장. 필요시 정해진 절차에 의거 발언할 수 있음. - 학교는 아래의 안전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도화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함. (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교외활동 (2)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의 학생용품 선정 (3) 보충 자율학습의 실시 등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관련한 안전 (4)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 관련 교칙의 제·개정에 관한 안전 - 학교는 다양한 건의통로를 마련하고,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함. -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기구의 개정발의권을 보장해야 함.

	<p>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제33조).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동의 참가의 방법 등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함(제34조)</p>	
<p>구 체 적 인 실 천 계 획 의 수 립 과 이 행 등</p>	<p>-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 행동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제36조)</p> <p>-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제37조)</p> <p>(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는 것</p> <p>(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p>	<p>규정없음</p>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권리구제기구	<p>-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p> <p>-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함.</p>	<p>-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되는 교내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함. 자세한 것은 학교규칙으로 정함.</p> <p>-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교육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그 역할과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음.</p> <p>(1) 구성 : 교육청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 1~2인, 교사 2~3인, 학부모 2~3인, 법률전문가 2인, 인권전문가 2인 기타 시민단체 대표 등 15인 내외</p> <p>(2) 역할 :</p> <p>① 각종 정책이나 시책, 교육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p> <p>② 학생 인권을 보호·신장하는 정책 연구·개발 및 건의</p> <p>③ 학생 인권 침해 사례나 분쟁에 관한 조정</p> <p>④ 본 조례안 및 각종 학생인권관련 규정의 해석</p>

		⑤ 기타 학생 인권 보호 및 신장과 관련한 활동
홍보·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그 홍보에 노력해야 함(제6조) - 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가운데,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 등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시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직무상 관계된 자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지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시는 아동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주적인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학기당 1시간 이상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교육의 내용은 학생회와 사전 협의함 - 교육청은 모든 직무 연수 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1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의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위한 개발 및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함
조례 이행에 대한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 위원회’를 둬.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함(제38조) -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시장 기타 집행 	규정없음

	<p>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권리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함. 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권리위원회는 보고 및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함.</p>	
--	--	--

가와사키시 조례와 광주광역시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가와사키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참여시스템(아동의회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조례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권침해시에 독립기구인 인권옴부즈퍼슨에 상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광주광역시 조례(안)의 경우에는 권리를 나열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으나, 실제로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 권리구제를 담당할 기관의 독립성 보장에는 미흡하다. 또한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아동이나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는 그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권리침해 시에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와 옴부즈퍼슨과 같은 독립적 구제기구의 설치라는 점에서 광주광역시 조례(안)은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교육청에 설치한다는 인권보호기구의 경우에는 실효성, 독립성의 보장이 미흡하다. 교육청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하는 인

력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보호기구에는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사는 배제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보호기구는 학생인권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형태로 인력이 구성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신속한 상담 및 구제조치를 위해서는 합의제 형태보다는 독임제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담아야 할 핵심내용인 권리구제 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이 존재한다.

한편 권리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그에 대한 해석,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권고 등에 의해 제시된 내용들이 있다. 물론 국가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기준을 조례를 통해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기구설치, 절차마련 등이 필요하다. 단지 권리기준을 제시한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참여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학교이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단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생참여기구도 필요할 것이다.

2. 인권구제기구의 모델

가. 협약 비준 후의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에 아프리카통합기구(OAU), 유럽, 미주기구(OAS)에서는 각자의 인권조약을 제정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1996년에 「아동의 권리행사에 관한 유럽조약」을 체결하였다(長谷川眞人 編 2006, 24-25).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헌법개정이나 법률개정들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5년에 아동을 대등한 인격체로 보는 규정을 헌법에 포함시켰고, 아이슬란드는 1995년 헌법개정시에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법률정비를 추진한 국가들 중 몇 개 국가의 예만 들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1991년 「아동보호 및 교육에 관한 법」 제정했고, 몰디브는 1991년 28개조로 된 「아동권리보호법」을 제정했다. 뉴질랜드는 종래의 「아동 및 청년법」을 개정하여 1989년 「아동, 청년 및 가족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서는 아동복지와 소년사범 영역에 비중을 두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아동의 의견존중 원칙을 강화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1990년에 267개조로 된 「아동 및 청소년법」을 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법률을 집행할 기구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長谷川眞人 編 2006, 34-36).

또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청소년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구제절차·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 아동인권구제기구의 설치의 움직임

아동인권 침해 구제기구와 관련해서는 아동인권에 관한 ombudsman⁴⁾(오부

4)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민오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민감사오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의 시민오부즈만은 반상근 형태(주

즈퍼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옴부즈만(Ombudsman) 또는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이란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옴부즈만 또는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구제기능, 행정부통제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만든 법률, 조례 등에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와 옴부즈퍼슨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서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옴부즈만은 업무관할 범위에 따라 일반옴부즈만과 전문옴부즈만으로 구분된다. 일반옴부즈만은 전체 행정 전반을 관할대상으로 한다면, 전문옴부즈만은 특정한 분야 또는 특정한 기관을 관할 대상으로 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4, 13).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전문옴부즈만 중 하나가 아동옴부즈만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1996년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아동을 위한 유럽의 전략”을 통해 아동을 위한 커미셔너(옴부즈만)의 임명이나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을 제안했다. 그 이후 유럽에는 각국에 설립된 독립된 아동인권 관련 기구들간의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줄여서 ENOC)도 설립되었다. ENOC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24개국 32개 기구가 가입해 있다. ENOC에 가입된 국가별 기구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거나 독립된 (인권)기구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EOC의 완전한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입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3일 근무)이고,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다. 2008년 12월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다.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기구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기능을 해야 하고, 그 기능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 기구가 스스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법조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나 ENOC의 기준에서 제시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법조항도 있어서는 안된다.
- 기구는 아동인권의 옹호·증진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거나 그런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옴부즈퍼슨, 커미셔너,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제도는 법률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고, 권한에 관한 조항과 책임 관련 제도도 갖추어야 한다.

<표 IV-3> ENOC의 구성원

국가	기구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인권보호국(Office of the Human Rights Defender of the Republic of Armenia)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옴부즈퍼슨(Ombudsperson for Styria-Austria)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인권커미셔너(Office of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벨기에	아동인권 커미셔너(Children’s Rights Commissioner-Belgium)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아동 옴부즈퍼슨(The Ombudsperson for Children-Republic of Croatia)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아동인권 커미셔너(Commissioner for Children’s Rights of the Republic of Cyprus)

덴마크	덴마크 아동인권위원회(Danish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핀란드	아동옴부즈만(Ombudsman for children in Finland)
프랑스	아동옹호국(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Defenseure des Enfants-France)
그루지아	그루지아 공익옹호국 아동인권센터(The Office if the Public Defender of Georgia; Child's Rights Center)
그리스	그리스 아동인권옴부즈만(Independent Authority Ombudsmen of the Hellenic Republic Department of Children's Rights-Greece)
헝가리	헝가리인권커미셔너(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Civil Rights-Hungary)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동옴부즈만(Ombudsman for the Children-Iceland)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동옴부즈만(Ombudsman for Children-Ieland)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아동옴부즈퍼슨(Ombudsperson for Children-Lithuania)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동옴부즈위원회(Ombudscommittee for the Rights of the Child-Luxembourg)
몰타	몰타 아동커미셔너(Commissioner for Children-Malta)
몰도바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아동·청년커미셔너(Northern Ireland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동옴부즈만(Ombudsman for Children-Norway)
폴란드	폴란드 아동옴부즈만(Ombudsman for Children-Poland)
포르투갈	포르투갈 옴부즈만(Office of the Ombudsman of Portugal)
러시아	모스크바 옴부즈만(Ombudsman for Moscow-Russian Federation)

세르비아	보이보디나 지방옴부즈만(The Provincial Ombudsman-Autonomous Province of Vojvodina)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인권옹호국(Office of The Public Defender of Rights-Slovak Republic)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인권 옴부즈만(Slovenia Human Rights Ombudsman Office)
스페인	마드리드 아동옴부즈만(Children's Ombudsman in Madrid-Spain) 카탈루니아옴부즈만-아동인권을 위한 부옴부즈만(Office of the Catalan Ombudsman-Deputy Ombudsman for Children's Rights) 안달루시아 아동옴부즈만(Children's Ombudsman in Andalusia-Spain)
스웨덴	스웨덴 아동·청년 옴부즈만Ombudsma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Sweden
영국	웨일즈 아동 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UK) 잉글랜드 아동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UK) 스코틀랜드 아동커미셔너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출처 : <http://crin.org/enoc/members/index.asp>

ENOC에 따르면, 아동인권을 위한 독립적 기구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는 것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서 아동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하는 것. 아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
- 정부 내·외부로 제안해서 법이나 정책, 실천을 변화시키는 것
- 모든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역할을 촉진하는 것

것

-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
- 아동의 관점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것. 정부와 공중이 아동의 관점을 적절하게 존중하도록 하는 것
- 아동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출판하는 것. 또는 정부가 적절한 정보를 수집·출판하게 하는 것
- 아동과 어른사이에서 아동인권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그를 촉진하는 것
-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옹호 및 고충처리시스템에 아동의 접근성을 점검하고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것
- 아동으로부터의(또는 아동을 대리하는) 개별적인 고충에 답하는 것 또는 아동을 위한 법적 행동을 시작하거나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성(Independence), 명확한 관할권과 적절한 권한(defined jurisdiction and adequate powers), 접근성(Accessibility), 협력(co-operation), 운영의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아동인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ombudsman을 설치하는 이유는 * 아동인권의 특성상 아동인권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 관료기구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 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平野裕二 2001, 254).

아동인권ombudsman이 설치된 개별국가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아동ombudsman법(The Children's Ombudsman Act)에 의하여 아동ombudsman이 설치되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아동ombudsman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1980년대에 논쟁이 있었으나, 1990년에 스웨덴이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면서 ‘아동옴부즈만 설립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옴부즈만을 설립할 것을 건의하여 여론의 지지하에 1993년에 아동옴부즈만이 설치되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아동옴부즈만의 임기는 6년이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4, 67-71).

핀란드의 경우에는 임기 5년의 아동옴부즈만이 임명되고 있고, 아동옴부즈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동옴부즈만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며, 아동옴부즈만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 지방 차원의 인권구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아동인권구제기구 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의 아동인권구제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같은 해인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특별한 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있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지방(8개 지방)에서 아동옹호관 또는 아동옴부즈만(children’s advocate/ombudsman)이 설치되어 있다(Campbell & Rose-Krasnor 2007, 214). 캐나다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시의원 중 1명을 (children’s advocate)로 임명하고, 그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 차원에서는 옴부즈만과 같은 인권구제기구들을 설치하는 곳들이 있다. 예를 들면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1994년에 제정

된 아동옴부즈만법(The Children's Ombudsman Act)에 의해 아동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아동옴부즈만은 주지사가 주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다. 아동옴부즈만은 법이나 정책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진정에 대해서 조사도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에 각각 아동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를 설치하고 있다. 웨일즈 지방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아동커미셔너법(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Act)를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에 「가와니시시 아동인권 옴부즈퍼슨조례」에서는 아동옴부즈퍼슨을 아동 고유의 상담·구제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 이익의 옹호자”, “대변자”, “공적 양심을 환기시키는 사람”으로 위치지우고 있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는 아동의 권리구제, 권리침해의 방지,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제언 등이다. 이렇게 아동에 관한 옴부즈퍼슨을 둔 것은 아동권리 침해 및 구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 대신에 ‘권리옹호위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일본에서 종합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인 타지미(多治見)시의 경우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아동권리옹호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타지미시 아동권리옹호위원은 3인 이내이며, 위원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타지미시 아동권리옹호위원은 아동의 권리침해사태에 대해 상담하고 구제나 회복을 위한 조언이나 지원을 한다. 필요한 경우

에는 조사, 조정, 권고,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자세히 살펴본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에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퍼슨조례」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침해와 남녀평등에 관한 인권침해를 상담하고 구제하는 기관으로 인권옴부즈퍼슨을 설치하고 있다(子ども權利條約綜合研究所 2008, 113). 아래에서는 가와사키시의 인권옴부즈퍼슨 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라.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퍼슨의 사례

가와사키시의 인권옴부즈퍼슨은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남녀평등에 관한 인권침해사건을 관할한다(조례 제2조).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퍼슨은 2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대표옴부즈퍼슨으로 한다. 인권옴부즈퍼슨은 인격이 고결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우며 인권문제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인권옴부즈퍼슨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인권옴부즈퍼슨은 반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는다.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퍼슨의 직무는 ①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언, 지원을 하는 것, ②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 조정, 권고, 시정요청을 하는 것, ③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④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 ⑤ 인권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공표하는 것이다.

특기할 점은 자기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구제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옴부즈만은 설명요구, 장부·서류 등의 열람,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조사한 이후에는 관계기관에 시정,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2005년의 경우에는 인권옴부즈퍼슨이 243건의 상담(아동 본인으로부터의 상담은 137건)을 했다. 상담내용은 이지메 59건, 학대 11건, 기타 173건이었다. 구제신청은 9건이 들어왔으며, 그 중 3건이 아동 본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었다.

마.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가차원에서나 지방차원에서나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정 이후에 옴부즈만, 옴부즈퍼슨, 커미셔너, 권리옹호위원 등의 이름으로 아동인권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내에는 반드시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상담,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조치기능, 제도개선 권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내용의 권리기준을 조례에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조례(안)에서 이 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 인권은 그 침해가 있을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VI.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열거

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의⁵⁾

첫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서, 보다 가까운 규범, 보다 구체성있는 규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학생과 성인들에게 보다 가까우면서도 구체적인 법규범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기도 내의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가까운 법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둘째, 조례제정 과정과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적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게 된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서 학생이나 성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부분은 담게 되면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학생인권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들을 제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지역이나 학교, 또는 학급차원에

5) 이 부분 중 일부는 하승수, “아동(학생)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의의, 참고사례”,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자료집, 20-21쪽을 수정·보완했다.

서 교사, 부모,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도하거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아동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 제도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조례를 통해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진 노력들이 확산되고 안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의 인권이 실제로 위협받거나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침해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지역 내의 여러 기관, 시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만들 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만약 일본 가와사키시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같은 것이 도입된다면, 경기도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의 참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청소년 참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규모 등으로 인해 실효성있는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아동의회 등의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참여기구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경기도 차원, 지역교육청 차원, 학교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참여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 당혹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잘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을 때에만, 학교폭력, 따돌림,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야 할 핵심적 내용

앞서 살펴본 여러 국내외의 사례 등을 종합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인권에 관한 기준 제시, 인권교육, 정기적인 실태조사, 권리구제기구의 설치와 운영, 참여의 보장,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 등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조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들에는 국제조약이나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현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에 7시 30분 이전에 등교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과도한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셋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쉼 권리를 박탈하게 될 수 있는 과도한 0교시 수업에 대해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경우 강제참여(35.5%), 반강제적 참여(8.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인권교육의 실시와 지원

인권교육은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모두 필요하다. 이런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가 조례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고, 또한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평화감수성,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인권문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교육이나 홍보 등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조사결과는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실천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도 있다.

한편 조례라는 규범은 추상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의 이행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실천계획에는 조례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실천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역할을 할 심의기구(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심의기구에서는 조례 및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는 학생인권옹호관, 전문가, 도민 등이 참여하되, 도민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민 중에서 임명되는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기구 설치

인권침해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한 상담기능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조사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 및 문제해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문제해결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책임있는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려면 ombudsman(옴부즈퍼슨)의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필요가 있다.

1) 경기도 교육청에 두는 ‘학생인권옹호관’은 * 학생인권침해 및 예방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 *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 학생인권실태조사 * 연차 보고서 발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합의제의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태가 매우 악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독임제 형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처럼 관할구역이 넓고 인구규모도 큰 경우에는 1개의 위원회에서 각지에서 일어나는 상담, 구제신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다.

3) 경기도의 관할구역이 넓고 학생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최소 5명 이상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이들이 관할구역을 정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별로는 학생인권상담

실을 두고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담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들에 구체신청을 해서 조사를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4)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교사 포함)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5) 학생인권옹호관은 기본적으로 상근직은 아닌 형태로 운영하되, 복무에 있어서는 반상근 정도로 근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나 보수에 대해서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는 「부천시민옴부즈만 조례」 외에 별도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학생의 참여 보장

학생의 참여는 학교단위, 지역교육청 단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단위로 구분하여 참여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학교단위에서는 학칙 및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의 참여, 학생의 권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권, 학생자치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단위에는 학생참여위원회를 구

성하여,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집행, 실천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200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 제도』, 2006
- 이기우·하승수,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 하승수, 2005, “아동(학생)인권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참고 사례”,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자료집
- 하승수, 2009, “학생권리의 발전과정과 이슈들”, 이해원 외,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한울
- 子ども權利條約綜合研究所 編, 2002, 『川崎發子どもの權利條例』, 東京: エイデル研究所
- 子ども權利條約綜合研究所, 2008, “子ども條例制定の動向と特徴”, 『子ども條例ハンドブック(子ども權利研究 第12号)』, 東京: 日本評論社, 112-116
- 半田勝久, 2001, “ノルウェー子どもオンブズペーソン”, 喜多明人・吉田桓雄・荒牧重人・黒岩哲彦 編, 『子どもオンブズペーソン』, 東京: 日本評論社
- 小宮山 健 治, 2003, “川崎市子どもの權利に關する條例”, 『子どもの權利研究』 第2號, 東京: 日本評論社
- 長谷川眞人 編著, 2006, 『子ども權利條例』, 天津: 三學出版
- 平野裕二, 2001, “子どもオンブズペーソンの國際的 動向”, 喜多明人・吉田桓雄・荒牧重人・黒岩哲彦 編, 『子どもオンブズペーソン』, 東京: 日本評論社
- 荒牧重人, 2001, “子どもの權利救濟のこれから”, 喜多明人・吉田桓雄・

荒牧重人・黒岩哲彦 編, 『子どもオンブズペーソン』, 東京: 日本評論社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1, *Assembly Bill 537 Advisory Task Force Report*

Campbell, K. and L. Rose-Krasnor. 2007.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 : Canada's Track Record." pp. 209-239. in R. B. Howe and K. Covell (eds.) *A Question of Commitment*, Waterloo, Ontario :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Equality of California, *Fact Sheet Student Civil Rights Act*, 2007

Flekkoy, M. 2001. "The Role of an Ombudsman for Children : Securing the child's right to education." pp.155-178. in S. Hart, C. P. Cohen, M. F. Erickson and M. Flekkoy (eds.) *Children' Rights in Education*,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Siriani, C. 2009. *Investing in Democracy*. Washington, D.C., N.W.: The Brookings Institution

<홈페이지>

<http://crin.org/enoc>

<http://www.city.kawasaki.jp>

첨부 1. 초등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 조사는 경기도지역의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초등학생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들은 학생인권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향을 연구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하고 써주신 소중한 개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인권이 경기도지역사회에서 지켜질 수 있고, 경기도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문 하나하나에 깊이 생각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

※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학교에서 평소에 경험한 것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항 목	그렇다	아니다
1. 여자 또는 남자라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3.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4.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선생님은 벌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는다.		
5. 학급임원 및 학생회임원이라고 선생님이 더 예뻐하지는 않는다.		
6. 선생님은 체벌하실 때 손으로 얼굴 또는 기타 신체적 부위를 때리지 않는다.		
7. 선생님은 가방, 소지품 등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		
8. 선생님은 쌍스러운 욕을 학생들에게 쓰지 않는다.		
9. 선생님은 학급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단체로 벌을 주지 않는다.		
10. 선생님은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도 다른 학생		

들 앞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11.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벌을 주셔서 수업을 못 듣게 하지는 않는다.		
12. 선생님은 숙제를 못해왔어도 벌하거나 폭언을 하시지 않는다.		
13. 선생님은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도 벌하거나 폭언을 하시지 않는다.		
14. 선생님이 지각이나 무단결석 등으로 벌하거나 폭언하시지 않는다.		
15. 선생님이 떠든다고 벌하거나 폭언하시지 않는다.		
16. 선생님은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검사하시지 않는다.		
17. 급식시간에 선생님은 먹기 싫은 반찬이나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게 하지 않는다.		
18. 방과후 학교는 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청한다.		
19. 우리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는다.		
20. 학교행사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는다.		

2. 학교생활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항 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 지 않다	③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잘 나와 손을 씻거나 세수하기에 불편하지 않다.				
2. 수업시간이라도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아플 때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				
5. 탈의실이 있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데 편리하다.				
6. 학교내 급식가격 및 식단 등에 만족한다.				
7. 방과후 학교도서관 이용은 자유롭고 편리하다.				

8. 학교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잘 구입해 주신다.				
9. 수업시간 이외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다.				
10. 시간표는 중간에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고,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잘 진행된다.				
11. 선생님은 지각이나 결석을 했을 때 이유를 먼저 물어보신다.				
12. 학급규칙과 급훈은 학급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3. 학급회의 때 나온 학생들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선된 부분에 대해 알려주신다.				
14. 자리배치는 학생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방법으로 한다.				
15. 학교에서 어려운 일(왕따,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기타 고민거리)이 생기면 선생님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				
16.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17. 선생님은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다.				
18. 선생님은 학생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잘 들어주신다.				
19.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따로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20. 숙제는 하루에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주셔서 숙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1. 학급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이다.				

3.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5개만 고르세요.)

하게 합니까? 다음 중 다니는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구 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로 참여	② 불참 이유를 말하면 불참 가능	③ 불참 이유를 말해도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	④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강제로 참여시킴	⑤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야간 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아침 보충수업 (0교시)					
오후, 저녁 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8. 다니는 학교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보충수업 ② 아침 자율학습
 ③ 야간 자율학습 ④ 방학보충수업
 ⑤ 방학자율학습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 ⑥번에 답하신 분은 10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세요.)

9. 다니는 학교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경우 동의서 받는 형태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학교방침에 따라 일괄 동의서 제출()
 ②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동의서 제출()
 ③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동의서 제출()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10.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과 하루 수면시간은 보통 몇 시간인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요.

10-1. 등교시간		10-2. 수면시간	
① 07:00 이전		① 8시간 이상	
② 07:00~07:29		② 7시간~8시간 미만	
③ 07:30~07:59		③ 6시간~7시간 미만	
④ 08:00~08:29		④ 5시간~6시간 미만	
⑤ 08:30~08:59		⑤ 5시간 미만	

11.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많이 받는다 ② 조금 받는 편이다 ③ 잘 안 받는 편이다 ④ 전혀 안 받는다

III. 다음은 징계·처벌·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체벌(도구나 손발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등의 벌)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 ①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 ② 일주일에 2회 이상 경험한다.
 ③ 한 달에 4회 이상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 ⑥번에 답하신 분은 14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1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항목이 체벌의 이유였는지 표시해 주세요.

항 목	그렇다	아니다	항 목	그렇다	아니다
① 두발복장규정 등 위반			⑦ 거짓말을 해서		
② 지각이나 결석			⑧ 교사의 지도 불응		
③ 과제나 수업태도			⑨ 학교기물파손		
④ 성적이 떨어져서			⑩ 집단따돌림 및 폭력 행사		
⑤ 야자를 빠져서			⑪ 금지물품 지참(담배, 만화책 등)		
⑥ 보충수업을 빠져서			⑫ 기타()		

14. 교사의 언어폭력(욕설, 비하, 폭언, 모욕 등)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 ①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
- ② 일주일에 2회 이상 경험한다.
- ③ 1달에 4회 이상 경험한다.
-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 ⑤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15. 다니는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 ① 상벌점제로 학교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아 체벌보다 더 나쁘다고 느낀다.
- ② 상벌점제가 있어서 학교생활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고 느낀다.
- ③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④ 상벌점제가 없다.
- ⑤ 기타 ()

16.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4개만 표시)

- ① 두발복장규제 위반
- ② 교내폭력 및 집단따돌림(왕따)
- ③ 지각이나 결석
- ④ 음주나 흡연
- ⑤ 교사지도 불응
-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반항
- ⑦ 금품갈취 및 절도
- ⑧ 학교단체행사 불참
- ⑨ 허가받지 않은 집회참여
- ⑩ 기타 ()

17. 학교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① 가능하다
- ② 불가능하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IV. 다음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예산, 학칙제개정, 교육과정 등)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까?

- ①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②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는 않는다.
- ③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19.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 규제에 대해 다음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그렇다	아니다	항 목	그렇다	아니다
①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학생회는 학생회에산승인 및 집행 권한이 없다.		
② 학생회 지도·자문위가 있어 학생회를 좌지우지한다.			⑨ 학교가 학생회임원에 대한 해임(휴학, 전학 제외)권을 가지고 있다.		
③ 학생회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⑩ 학생회 회의소집권한이 없다.		
④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 있다.			⑪ 학생회 회칙 제개정 권한이 없다.		
⑤ 학생회의 학교 행정 간섭이 금지되어 있다.			⑫ 학생회 집행부를 학교에서 임명하고 있다.		
⑥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⑬ 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교사 추천을 요구한다.		
⑦ 학생회 선거 공약에 대해 학교가 통제하고 있다.			⑭ 학생회장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 형태로 선출하고 있다.		

20. 학생회 관련 기구 중에서 다니는 학교에 존재하는 기구를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학생총회 ② 대의원회 ③ 집행위 또는 운영위
 ④ 학급회 ⑤ 학생회 지도·자문위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21. 학생회 관련 기구에서 학생회 지도·자문위가 있다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없다 ② 잘 모르겠다 ③ 회칙 제개정
 ④ 임원임명 ⑤ 학생회 해체 ⑥ 회의 소집 및 지도
 ⑦ 선거 지도관리 ⑧ 학생회 지도 육성 ⑨ 기타()

22.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충분히 보장,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 ①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도 충분하다.
 ②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지원을 잘 해주지 않으며, 폐쇄될 수도 있다.
 ③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④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 ⑤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⑤ 기타 ()

V. 다음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어려운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학교에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경우 차별 사유에 대해 표시해 주세요.

항 목	그렇다	아니다	항 목	그렇다	아니다
① 성적			⑦ 경제력		
② 성별			⑧ 외모, 신체적 특징		
③ 나이나 학년			⑨ 가족형태(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		
④ 성정체성, 성적 지향(동성애 등)			⑩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		
⑤ 장애 여부			⑪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		
⑥ 인종			⑫ 기타 ()		

24. 다음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와 손을 씻거나 세면하는 데 불편하지 않다.				
2. 아플 때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보충 및 야자시간까지 보건실운영이 되고 있다.				
4.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				
5. 탈의실이 있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데 편리하다.				
6. 계절에 따른 교복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투 등)와 디자인 등이 다양해 선택할 수				

있다.				
7.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8. 급식은 가격에 비해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다.				
9. 학교에는 성적 및 친구문제 등의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해 주실 선생님이 있다.				
10. 학교내 화장실, 도서실, 식당, 매점 등 학생이용 시설들이 위생적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11. 등록금, 급식비 등 교육비를 내지 못했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12. 징계처분 내용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는다.				
13. 이성교재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14.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간섭하지 않는다.				
15. 가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16. 실습 기자재 등이 부족하지 않고 잘 갖춰져 있다.				
17.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8. 수학여행, 수련회 등 비용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19. 학교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및 위생 상태가 좋아 믿을 수 있다.				
20.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수시로 알리고, 규정 바뀔 때마다 수시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21 학교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학생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감시받는 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VI. 다음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인권을 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 ②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편이다.
 ③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④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다.

26.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개만 표시해주세요.)

항목	순위	항목	순위
① 두발규제		⑥ 벌점 및 상벌점제	
② 복장규제		⑦ 학생의사표현 규제	
③ 단체기합 및 체벌		⑧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규제	
④ 무작위 소지품 검사		⑨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⑤ 학교폭력(집단따돌림)		⑩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 차별	

27.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개만 표시해주세요.)

항목	순위	항목	순위
① 입시경쟁 해소		⑥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② 인권교육 강화		⑦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③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⑧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④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⑨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⑤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⑩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2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의견없음

29.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입니다. 응답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학교		계열		학년		성별	
중학교				1학년		남	
고등학교		인문계(특목고포함)		2학년			여
		실업계(전문고)		3학년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인권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3.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 조사는 경기도 지역의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칭)’에 교사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므로 이번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하면서 교사의 인권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처리 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의 분석 결과는 학생인권관련 조례안 제정 및 정책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 해주신다면, 학생인권 신장과 경기도 교육환경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소 속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남녀공학	① 남녀공학 ② 남학교 ③ 여학교		
근무년수	_____ 년		
근무지역	① 농어촌 지역 ② 공단지역 ③ 도시지역 ④ 기타 ()		

I. 먼저 인권교육과 인권연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글씨체 바꿈)

1. 1999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아동·청소년인권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2.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기타 ()

8.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개만 표시해주세요.)

항목	순위	항목	순위
① 두발규제		⑥ 벌점 및 상벌점제	
② 복장규제		⑦ 학생의사표현 규제	
③ 단체기합 및 체벌		⑧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규제	
④ 무작위 소지품 검사		⑨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⑤ 학교폭력(집단따돌림)		⑩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 차별	

9.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개만 표시해주세요.)

항목	순위	항목	순위
① 입시경쟁 해소		⑥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② 인권교육 강화		⑦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③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⑧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④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⑨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⑤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⑩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II. 이번에는 수업/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10. 학생 선도부(학생 생활지도 역할을 맡은 학생 조직, 이하 선도부)가 있다면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 목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① 학생자치회의의 정례화		
② 학생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운영		
③ 학생회칙 재·개정 의 자율권 확보		
④ 학생회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물적 지원		
⑤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		
⑥ 학생회 간부 구성 시 교사추천제와 임명제 폐지		
⑦ 학생대표자 회의 시 자유로운 안건선정 권한 보장		
⑧ 교사대표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교환 및 조율		
⑨ 학생회의 설문조사 및 집단행동 등 자율적인 활동 보장		
⑩ 학생회 건의사항을 교직원회의나 기획회의의 안건으로 채택		
⑪ 기타		

13.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침해된다	침해되지 않는다
① 지역 행사 등 외부행사에 참여		
② 훈계나 징계 등을 이유로 수업시간에 별도의 징벌 실시		
③ 학교평가 등 교내 행사준비를 위해 수업시간에 청소실시		
④ 도 단위 논술평가, 학업성취도 고사 등 외부 시험에 참여		
⑤ 동의 없이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경기를 일방적으로 방송		
⑥ 기타		

14. 아래의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참여 영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 개인의 선택교과 결정		
2. 계발활동 부서 선정		
3. 교과재량활동의 교과 선정		
4. 창의적재량활동의 내용 선정		
5. 학사일정(수련활동, 축제, 체육대회 등의 주요일정)		

15. 학업성적관리규정 내 포상규정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가 함께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여 결정
- ②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견게시판 운영
- ③ 학급자치회의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학생의견을 모아 찬반투표 등을 실시해 반영
- ④ 각규정의 항목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
- ⑤ 기타 ()

III. 다음은 체벌이나 징계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6. 지도와 훈계가 필요한 학생의 지도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모욕감을 주는 체벌을 대체할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각 항목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없다
① 교내 청소		
② 독서와 글쓰기		
③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노동		
④ 상담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		
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⑥ 기타		

17. 체벌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상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아무 문제없다
- ② 상벌 점수기준의 자의적인 적용
- ③ 상벌제와 동시에 체벌이 여전히 존재
- ④ 학업성적 뿐 아니라 생활태도까지 점수화
- ⑤ 학생통제를 목적으로 한 상·벌점 기준 자체의 부당함
- ⑥ 교사 학생 간에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칭찬할 일 조차 점수로 표현
- ⑦ 기타 ()

18. 체벌을 원하는 교사는 많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손쉬운 학생통제 방법인 체벌에 의존하게 됩니다.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학생간의 폭력 금지
- ② 과밀학급 해소
- ③ 두발·복장규제 폐지
- ④ 과도한 교사 업무 경감
- ⑤ 관리자의 열린 학교경영
- ⑥ 일제고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 변화
- ⑦ 강제적인 특기적성수업과 자율학습 폐지
- ⑧기타()

19. 학생폭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학생 간 폭력, 금품갈취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권교육 실시
- ②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교육
- ③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 ④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 ⑤ 기타 ()

20. 징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 표시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위원회 소집 여부가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2.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진술이 징계결정에 영향을 준다.				
3. 위원회에서 해당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사안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4. 위원회 구성에 학생상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5. 징계결정과 집행을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다.				
6. 징계의 사유와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7. 징계 후 학생의 행동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9.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당해 연도의 수상이나 학생회 활동에서 제외되는 등 제약을 받는다.				

IV. 아래의 표에 제시된 것은 학교환경 재구성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21.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재구성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해당란에 V표시해 주세요.

문 항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필요 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학교화장실에 온수가 나오도록 한다.				
2. 화장실 청소는 외부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외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3. 화장실에 휴지, 비누, 생리대자판기 등을 마련한다.				
4. 남녀학생 탈의실을 별도로 마련한다.				
5. 학생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6. 효과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 임의적 기준이 아닌 온도 기준에 따라 가동한다.				
7. 정규수업외의 특기적성수업, 방과후학교 수업, 자율 학습 참여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강제적인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한다.				
8. 아플 때 누구나 쉴 수 있도록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한다.				
9.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 되도록 근거리의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0. 학교급식에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기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11. 교과별 필요한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과별 특성을 살린 교과교실을 운영한다.				
12.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교무실이 아닌 별도의 상담실을 충분히 확보한다.				
13.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상담전문가와 학교가 상시적으로 연계하여 협조한다.				
14. 빈곤학생처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상시적으로 연계하여 협조한다.				
15. 교육청 공문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위주의 교무부서 조직에서 학년부와 교과부서 체제로 전환한다.				
16. 학교 예결산을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이고 풀이하여 공개한다.				
17.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학교구성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9.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시범 학교 운영은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물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첨부 5. 인터뷰 녹취록 정리

1. 장애 학생 부모·전문가 관련 면접

정○○(시흥시장애인학부모회), 류○○(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시흥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

(2009년 11월 9일,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에서 2명 집단 면접)

Q. 어떤 일을 해온 분인가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류 : 류○○이라고 한다.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이사이고, 시흥시장애인학부모회 활동. 시흥교육청 특수교육 관련해서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정 : 정○○이라고 한다. 시흥시장애인학부모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Q. 장애 아동의 취학 및 진학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취학 이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겪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경우들이 있을까요?

류 : 장애 학생이 취학하려면 두 가지다. 특수 학교 아니면 특수 학급. 시골에서는 학교가 아예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특수 학교도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원 때문에 못 간다, 라고 배제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수학급 같은 경우도, 학교에 그 학급이 있어야 가는 건데, 그런 걸 요청하면 학교 측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답변을 하곤 한다. 지금까지는 그럴 때 진짜 공간이 없는 건지, 만약 없다면 도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학급을 증설하게 해달라고 요구

하고, 그 기능을 부모회가 담당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학교에 취학 후 학교 시설 면에 문제는?)

류 : 문제 있다. 가장 문제인 것이 지금은 엘리베이터나 난간대 등이다. 많이 좋아지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인 것 같다. 그래도 턱이 있다가거나 하는 학교 안의 물리적인 환경들은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학교까지 가는 교통수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더 있다. 휠체어가 간다가거나 하면 길에 턱이 있거나 해서 스스로 갈 수 없게 된다거나,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은 부모가 다 손에 손 잡고 등교시켜준다.

(입학 후 학교 생활에서는?)

류 : 폭력적인 문제가 있다.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들이 어떤 걸 요구하나 하면, 뭐뭐뭐 뭐 해 보라 얘기를 한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 여학생하고 가서 한 번 껴안아 보라, 가서 뽀뽀 한 번 해 보라. 이렇게 하면 이 장애학생은 그대로 한다는 거다. 또는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놀리거나 때리거나, 뭐 왕따는 뭐 계속 이제 와 있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비장애 아이들도 왕따는 뭐 많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수학여행이든 뭐든 학교 생활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곧잘 배제된다. 수학여행을 경주나 이런 데를 가려면 2박3일 정도 가는데. 학교에서는 걱정인 거다. 그래서 부모들한테는 강요를 한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가겠습니까? 이렇게 부담을 준다. 부모는 학교에 아이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입장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무엇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부모들도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한다.

Q. 학교의 교육 내용 중에서 장애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 중에서 불리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류 : 장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과서가 없다. 아이들이 특수학급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 쪽 아이들은, 영역별로 나뉘었으면 좋겠다. 신체장애인/발달장애인 등등이 나뉘어져야 한다. 지적 능력이 비장애인과 같은 레벨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거나, 나눌 필요가 있다. 교과 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몇 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발달장애 학생들한테는 그것에 맞는 체험이나 직업교육,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일상영역에 활동 등을 많이 할 수 있는 교과 과정으로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영수 같은 교육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교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곤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정 : 조례 하에 교과목이 바뀌어 들어가야 한다. 학교에서 14년 동안 붙잡고 있지만, 졸업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국어, 수학, 이렇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 교과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옷을 갠다든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없다.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더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류 : 일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생들이랑 같이 해야 통합교육인데, 지금은 말로만 통합교육이다. 반은 특수학급, 반은 통합학급 식이다.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 가면 판나라 세상에 온 것 같다.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선생님은 하나고, 반 학생들은 또 많고... 이걸 물리적인 통합이다. 한반에 그냥 넣어주는 걸 통합교육이라고 하고 있

다. 진짜 통합교육이 아니다. 이견 문제가 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실제로 호홉하고 함께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비장애 학생과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5분 이상 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교과 과목들도, 그런 것조차 통합은 전혀 아니다. 35명 중에 그냥 1명만 있는 거. 그게 문제다.

Q. 장애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교사나 보호자/부모에 대한 교육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 :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장애에 대해 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비장애 아동들은 장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장애 아동은 조롱거리, 멸시의 대상, 그게 자연스럽게 교육화 아닌 교육이 되어 있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 편이다. 일단 중학교 들어가면 경쟁 그런 체계에 들어가다 보니 장애 아동은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된다. 분풀이 대상이 된다. 모든 면에서 장애에 대해 인식이 안 되어있다는 것. 국영수 수업 들어가듯이 장애에 대해 인식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 조례에 인식 개선, 그런 시간이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들 모양만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류 : 장애학생들을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라든지 비장애 학생이라든지 또는 비장애 학생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애가 무엇인지, 또 장애 유형은 무엇이고 그 장애 유형별 에티켓은 무엇이고, 또 어떡하면 장애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놀리지도 않을 것이고, 때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시하지도 않고 할 것이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아이다, 그러면은 이 발달장애 아이도 360명이면 360명이 다 다르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그럼 이

성향을 그 주변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알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A라는 발달장애 아이는, 예를 들자면, 주변 환경이 빼뺏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바로잡으려 한다고 하자. 그럼 문제가 생긴다. 이 아이는 이런 행동 특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키고 장애 아이를 중심에 놓고 주변이 변해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됐으면 좋겠다.

(시간이나 인권교육 회수, 내용 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정 : 일주일에 한 번, 요즘에는 음악 이런 시간도 빼버려서 걱정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교사들은 연수시간에 필히 장애 관련해서 몇 시간 들어가는 것. 부모교육도 마찬가지다.

류 :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체험교육이 더 필요하다. 휠체어를 타본다거나, 눈가리개 하고 지팡이를 짚고 가본다거나. 지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체험할 도구는 없지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역할극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상황극을 만들어본다거나.

정 : 그리고 활동보조인은 있겠지만, 대학 같은 곳 보면 멘토링 같은 게 있다. 학급 중에 멘토링처럼, 알림장 같은 것들을 멘토링하는 도우미 학생들이 써줄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 조례화가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장애아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적을 정확히 두고 학습이면 학습, 체육이면 체육,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아이들 사이에 차별이나 그런 벽들이 많이 무너질 것 같다.

Q.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인권조례가 장애 학생의 인권 상황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류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진정 넣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혹시 다른 나라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인권조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차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장차법에 다 나와있다고 본다.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까지 있다. 특별히 인권조례안을 만든다면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장애인식 교육이나 성폭력, 그런 폭력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폭력에 관한 것도 조례가 있다. 장애 쪽으로 다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보장해서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싶다. 그리고 부모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정 : 그 역할을 더 강화하고, 더 구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면 좋지 않을까.

(구제기구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류 :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의 폭력 행위가 있다고 하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랬을 때 입증 책임을 누구로 할 것이냐가 문제다. 부모는 보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비장애 학생들이 목격했더라도, 입 다물고 있다.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럴 때 교장에게 입증 책임 등을 더 물으면 교장의 인권교육을 더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장차법, 이것만 지켜도 조례 더 따로 만들 필요 없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것만 들면 어떨까. 인권위원회 같은 거, 구성도 당사자 중심으로 하고. 학교

내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지역/도교육청 속에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제 문제점이라거나 개선할 방안,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를 만들면 좋겠다.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도, 그냥 밥만 먹고 끝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런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한다.

Q. 그밖에 장애 학생의 인권 문제에 rrr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

류 :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한 학년 올라가는 것,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하는 것들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 왜냐면 특수교육의 질은 좋은 교사 만나는 게 최고다, 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한다. 우습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이고 사랑이고 그런 건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어떡하면 좋은 선생님 만날까, 이 걱정하고 있으시다. 점수나, 진급이나 이런 것 연연해하지 말고, 준비빨기 해서 진 사람이 장애 학생을 맡는다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진실 속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과연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장애 학생 또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들도조차 우리 아이가 부족하고 의사소통능력이 또 부족하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아이들의 의사표현,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된다. 너는 이거 못 하니까.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커피하고, 녹차가 있으면, 그냥 녹차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커피하고 녹차가 있는데 너는 어떤 거 먹고 싶니? 이렇게 해서, 만약 언어능력이 부족하면 손짓으로라도

해서 그 결정권을 따라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의사에 의해서 또 표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2. 이주/다문화 학생 관련 보호자 면접

A (몽골출신 어머니, 학생은 고등학생)

(2009년 11월 1일, 면접자의 집에서 면접)

Q. 사는 지역, 나이, 다니는 학교, 가족 구성과 가정의 상황 등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A : 몽골국의 48세 여성으로 10년 이상 몽골에서는 러시아로 유학하고 돌아와 화학교사를 하였으나, 둘째 아이 출산 후 TV나 신문광고에서 한국 가면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다. 그 대행업자를 따라 많은 몽골인들과 함께 한국에 왔으나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1달짜리 관광비자로 받고 일하던 중 1달이 지난 후 그 업자는 도망치고 비자는 만료되어 그때부터 한국에 불법체류하며 식당 종업원, 미싱보조원, 건설현장 밥집 일 등 다양한 종류의 직종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년 정도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한국에서 송금한 돈은 모두 남편이 지출하고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2명의 자녀양육을 책임지게 되었다. 집 한 칸 없는 형편에 살 길이 막막하여 아이들을 친정부모에게 맡겨두고 2~3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싶어 한국으로 다시 와서 불법체류하며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친정부모들이 둘째인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를 그

리워해 병이 생겼다면 돌아오기를 종용했고 2년 정도 지나서 돌아가 보니 아들의 몸골은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처럼 뼈만 앙상하고 남은 채 말라있었다. 아들 보고 고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보려고 했으나 겨우 방한 칸 마련할 돈만 벌어난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과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서 다시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불법체류하며 일하게 되었다. 지금은 전자부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장내 외국인은 나 혼자다. 불법이주노동자라 만약 정부에 걸리면 회사측에도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어 서로 조심하고 있다.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다. 한국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마쳤다. 현재는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Q.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점, 불만사항,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시 왔을 때는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들을 어디 맡길 때가 없어서 방에 아들을 혼자 두고 먹을 것과 장난감을 주고 문을 잠그고 일하러 다녔다. 그 사실을 알고 주위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그러다 아이에게 큰일 난다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소개해주었다. 그때부터 공부방 유치원을 다녔고 직장일이 늦어지거나 해도 그 공부방에서 아이를 돌봐주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 집에 혼자 있던 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며 생기를 찾았고 유치원 선생님이 잘 돌봐주시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배우는 한국말을 아들은 유치원 다니면서 몇 개월 되지 않아 금방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시는 교장선생님 학교에 특별히 부탁해서 입학하게 되었다. 일단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도 진학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큰 문제없이 고등학교도 진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입학하고 다니게 되니 학교에서 오히려 배려를 많이 해줘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다른 문제없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었다.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었고,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중학교도 무상교육이어서 교육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목사님의 주선으로 방과후에 학원도 50%할인 받아 다닐 수 있어서 학교공부도 중간이상으로 곧잘 따라가는 편이었다. 아들은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고 있으므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다. 특별히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다. 성격이 활달하고 사회성이 뛰어난 편이라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Q. 학교에서 자신이 이주/다문화 학생이다, 또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인가요?

A : 고등학교까지 어려움 없이 진학할 수 있었으나,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불법체류자라서 대학교 진학이 불가능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가 불투명해지다 보니 공부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고 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는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Q.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처음에 친해지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 유치원 때부터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별로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Q.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도 가끔씩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숙제 등을 학부모들이 도와주는 일도 많이 있지요. 부모님(또는 부모님 중에 이주한 분)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학교 운영에 참가하거나 간식을 사는 데 돈을 보태거나, 교사와 의사소통하거나 등등)을 처리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A : 한국말로 의사표현이 대강 가능하지만 읽고 쓰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학교에서 성적표나 가정통신문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거의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들도 처음에는 조금 설명하는 듯 했으나 조금 지나면서 ‘엄마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그런 게 있어’ 등 그러려니 하더니 이제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다.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잘 지낸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편이다. 성적도 그럭저럭 하는 편이라고만 말한다.

Q. 학교 외에도 지역 사회(동네)에서 살면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이 있다면?

A : 불법체류나 은행거래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고, 4대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다닐 수가 없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기나 몸살이 걸려도 병원 가는 걸 절대로 피하고 있다. 다행히 아들도 그렇고 나도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친 적이 없어 다행임. 한번은 몸이 너무 아파하니까 직장동료가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를 빌려주면서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돌아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괜찮을 것이라고 조언해주더라. 그렇게 병원 가서 가슴 졸이며 치료를 받고, 직장 핑계를 대면서 자리 비우기 힘들다며 가급적 오랫동안

안 약처방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1주일 정도의 약을 처방 받은 적이 있다. 은행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 사람의 명의를 빌려야 한다. 현재 거주하는 집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는데 불법체류외 국인이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지도 않고 월세도 얻기 힘들다.

Q. 이주, 인종, 피부색 등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교사나 보호자/부모에 대한 교육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A : 자신의 경우, 학교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크게 차별받거나 어려운 점을 없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Q. 교육청은 학교를 감독하고 학교 운영 등을 바꿀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는 교육청이 꼭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아들만이라도 국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 잘못 만나 아들이 꿈이 좌절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몽골의 국가체제가 바뀌면서 내가 교육받을 땐 유학을 가더라도 국가가 모두 학비를 대줘서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련체제가 붕괴되고 몽골국가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교육은 개인들의 몫으로 바뀌었다. 욕심 없이 현실에 안주해서 살면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살다보니 오늘까지 왔다.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돌아가려했으나 큰 딸아이 교육문제로 독일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 더 연장되었고 아들 중학교 졸업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마침 딸이 결혼하여 출산하게 되어 다시 그 비용을 마련해야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한국을 한번 출국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서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친정어머니를 대신 보냈고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하려니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결국 아들은 한국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출산된 아이의 경우 독일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 딸아이는 걱정이 없다. 그렇게 한시름 더 나했더니 이제는 아들 진로가 걱정이 된다. 아들의 경우, 유치원부터 한국에서 살다보니 몽골말은 다 잊어버리고 거의 한국사람이 다 되었으며, 몽골로 돌아가도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제대로 적응하여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해보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나도 불법체류라는 것 이외에 다른 잘못이 없다. 그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에 왔고 그때그때 상황을 극복하려다 보니 한국에 머물게 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아들이 희생된 꼴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에 살든 몽골로 돌아가든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겠으나 아들은 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진학도 어렵고 취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몽골로 돌아가면 아마도 아들은 군대가 될 시기가 될 텐데 말이 안 통하니 군대내에서 왕따 당하기 십상... 몽골사람이 몽골말을 못하고 한국말만 한다고 재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한 일이다. 먹고살기 어렵다 보니 아들에게 몽골말을 제대로 가르칠 겨를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아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줄 수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도 공허하기만 하다. 부디 아들만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도 가고 취직도 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볼 뿐이다.

3. 성소수자 학생 관련 전문가 인터뷰

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9년 10월 27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면접)

Q. 어떤 일/연구를 해온 분인지 질문

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잘해보지라고 한다. 2007년부터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지원, 브릿지 프로젝트라고, 신촌 공원을 중심으로 10대 이반들의 가출 및 생활문화 실태에 대해 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 10대 이반들이 많이 고립되어있다, 라는 결과를 통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리상담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Q. 성소수자인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겪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경우들이 있을까요? (학교의 관행이나 제도, 교사의 언행, 학생들의 언행, 수업 내용 등)

소 : 일단은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입시교육만 진행되는 그런 공간이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기 존재를 밝히거나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10대 성소수자 또한 자신이 레즈비언이거나 게이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교 관행 상 학교에서 한창 유행되었던 것은 2003년부터 “이반검열”이라는 것. 보이쉬한 차림을 하는 학생들을 이반으로 간주해서 그 친구들에게 점수, 벌점

제를 매기거나 징계를 하거나 혹은 어떤 친구의 인터뷰에 의하면 머리가 짧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변태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친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직접적으로 학교를 추천을 해주거나 써줄 때는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뭔가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진로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런 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것에 중고등학교 사이에 편차가 있다. 중학교 때는 ‘땡’ 동아리도 있고, 인기 있는 F4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 입시교육이나 그런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런 다양한 이야기나 모험하거나 하는 것들이 통제적인 것 같다.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소수자 학생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나는 언급도 안되네, 라는 반응. 또 하나는 뼈뺀 시선이다. 이성교제 하지 말랬으니까 나는 동성교제 해야지라는. 특히 요즘은 인터넷문화가 발달해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도 발달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점이 빨라졌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스스로 커밍아웃 하는 사례들도 많아짐. 그러나 그에 비해서 커밍아웃 이후의 여파에 대해서 얘기를 터놓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웃팅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는 많아졌다.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또래 집단은 중요한 영역이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에 대한 고민도 빨라지고 있는데, 난 친한 친구라고 믿었는데, 난 게이야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아웃팅 시키는 일도 있다. 커밍아웃하면 처음 반응이, “너 나도 좋아하니?” 같은 반응과 질문이 시작

이 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게 되어서 힘들어 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친한 친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학교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자퇴로 이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자퇴 비율이 높을까요?)

신촌 공원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확실히 자퇴 비율은 높다. 근데 그게 정체성의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반 청소년들과 다른 맥락에서 예컨대, 연애는 중요한 삶의 이슈인데. 부모님에게 발각되었을 경우에 큰 이슈가 되면서 “너 정신병원에 가야되지 않겠니?”라는 이야기로 이어져서 더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맥락이 있기는 하다. 공부를 잘하거나 가정환경이 좋거나 그렇진 않아서, 계급적 지위에 따라서 학교에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이 영향을 받곤 하는데, 그런 기대 자체가 애초에 많지가 않다.

(미션스쿨 등에서는 다른 학교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미션스쿨, 어쨌거나 성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영향은 있다.

Q. 성소수자인 학생들이 지역 사회(동네)나 가정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과 학교 생활 사이의 관계는?

소 : 일단 10대 성소수자 상담을 하다보면 성소수자 당사자 친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거나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걱정이 많다. 당사자보다는 환경이 이 친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한다. 한 친구는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모님이 이 친구에게 거

는 기대가 컸었다. 그런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레즈비언인데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했다. 당사자 친구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가 밝혀지고 전해지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했었다. 교사 같은 경우도 이 친구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권하거나 하는 조언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Q. 그런 경험이 성소수자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소수자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소 : 학교가 좀 무서운 건, 폐쇄적이어서 그 공간 안에서 정상적인 학생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건, 굉장한 공포감과 낙인당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친구들이 좀 여성스럽게 행동한다, 싶으면 게이로 읽히는데 그러면 공포감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두렵게 느낀다.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신을 위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지지 집단이 없다면 학교 공간 안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혐오적이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학교 못지않은 지지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신을 긍정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Q. 학교의 교육 내용 중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소 : 학교 시스템 자체가 이성애주의적인 공간이라서 일반 교과서에도 연인관계라고 했을 때는 남녀의 이성관계를 전제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가족의 형태가 이성애중심적인 가정

형태만을 추구한다. 거기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동거를 하거나 동성 연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과서 분석을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라틴에서 했다. 도덕 교과서에 이성교제와 아름다운 가정생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이런 이야기도. 예전에는 보건 교과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라지긴 했다. 성별에 대한 이분법, 여자는 빨강, 남자는 파랑, 두발복장규제 같은 것들. 근본적으로는 그런 식의 성별 차이는 왜 두는 걸까, 성별 차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를 봤을 때, 남성성과 여성성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 남성답지 못한 남자, 여성답지 못한 여자는 문제다, 라고 보는 것부터가 이성애를 전제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단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

Q. 성소수자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교사나 보호자/부모에 대한 교육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 : 모든 교사들이 직무연수 과정에서 섹슈얼리티나 성적인 부분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8살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해서, 부모님도 이 아이가 트랜스젠더라서 이름도 바꾸고 주민번호도 바꾸고, 이런 작업을 했다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인권교육 내용이나 방식 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내용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지금 성교육도 불안하다. 지금이라도 잘됐으면 좋겠다. 그거 의무적으로 받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비디오 하나 튼다거나...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결국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대 때는 가지고 놀고, 금기가 주는 공포와 압박에서 벗어나고 가지고 노는 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너는 왜 여자라고 생각해?”부터 시작해서, 넌 행복하고 성관계는 어떤 사람과 하고 싶고, 즐겁고 행복한 섹스는 뭘까? 이런 질문도 하고. 편견을 없애야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성에 대해 나에 대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10대 때 첫관계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성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걸 전하는 건 중요한 것 같다. 교사 내부에서 진보적인 성의식이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뭔가를 조직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인권교육 등에서 지역 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청소년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일 것이다. 쉼터를 많이 꼽곤 하는데, 사실 청소년들은 쉼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쉼터는 또 다르게 통제와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일반 청소년들은 자기 정체성을 위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반면에 10대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위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쉼터 선생님들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덜하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10대 성소수자 내부에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줌 차이가 있고, 동성애자 내부에서도 남성 여성 차이가 있다. 신

촌공원에 최근에 게이들이 많이 오는데, 쉽터와 연계를 해보려고 남자 청소년 쉽터를 다 전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자 쉽터보다 남자 게이들이 입소한 경우가 전례가 없다. 여자 쉽터보다 더, 인식 자체가 많이 겁내는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이 게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쉽터 내에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되었다.

(얼마전 국정감사 때, 성소수자 상담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상담 등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트랜스젠더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분은 한 상담교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가능성은 좋은 것 같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받음으로써, 감수성을 키워서 이런 고민을 당사자 친구들과 신뢰관계에서 얘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수준이 된 경우. 좋은 예인 것 같다. 초반에 누구를 만나서 고민을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과정이 중요한데,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그 과정이 얘기되는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다만 내부에서 인권교육이 자칫하면 위협할 수도 있는 게, 학교 자체가 기독교적이거나 호모포비아적 색깔이 강한데 이런 인권교육이 당위나 명목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오히려 내용이 담보되지 않고 어긋날 수도 있다.

Q.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성소수자인 학생의 인권 상황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소 :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서 기존의 보호주의적인 성교육을 넘어

가서, 자신의 성에 대해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성교육 자체를, 질문과 시작을 달리하는 성교육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성소수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따돌림 같은 문제는 정서적인 측면과 당사자의 고통으로 직결된다. 문화를 바꾸는 일은 어려운데, 가장 기본적인 건 교육이 전제되고 내가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구석,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다.

상담교사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전제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징계하거나 피해자 학생을 보호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구제기구에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나오면, 이 학교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는 것이 대놓고 드러나는 일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그래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으론 꼭 학교 안에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든다.

Q. 그밖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

소 :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 학생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춘공원 가면 자퇴한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대한 접근이나 방법들은 취약하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립인데.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생활을 한다거나, 10대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88만원 세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사람들이 학교 밖에서 어떻게 살

아갈 건지에 대한 것은, 쉽터 이상은 어렵다는 느낌이다.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성소수자 학생 관련 학생 인터뷰

Misty(미스티) (청소년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2009년 10월 31일, 신림역의 카페에서 면접)

Q. 사는 지역, 나이, 다니는 학교, 가정 상황,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 : 이름은 안 말해도 될까? Misty(미스티)로 활동하고 있다. 사는 곳은 관악구, 서울 관악구고 열아홉살이다. 다니는 학교는 시흥시다. 고등학생이다. 성정체성은 레즈비언이고, 지금 청소년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에 있다.

Q.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점, 불만사항,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느꼈던 것은?

미 :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게 제일 불편하다. 아예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학교가 조리학교인데, 조리 쪽에서 힘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남성 여성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학교에서 인사법이 따로 있는데 남학생이 먼저 선창을 하고 여학생이 뒤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 “경례!”하면 “성실, 봉사” 이런식으로 한다.

(남학생이 “성실”을 하면 여학생이 “봉사”를 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나도 성실하면 안 되냐고 선생님들한테

테 때를 썼다. 왜 그러냐고, 이해를 아예 못하시더라.

(힘을 쓸 일이 많다는 건 짐을 나르거나 할 때 남자들 나와 이런 것을 말하나요?)

그렇다. 체력. 그런 것들 많은데, 사소한 것도 항상 남학생이 1번이고 이런 것. 해마다 바뀌거나 하는 것 없이 남학생부터다. 중학교 때는 해마다 그게 바뀌었는데,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었다. 그 거에 대해 애들은 별 불만이 없더라.

그리고 성소수자라서 불편한 건 특별히 없었는데, 학교가 예배를 한다, 1주일에 한 번씩. 미션스쿨은 아닌데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셔서. 재단이 종교재단은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니깐 기독교를 믿는 선생님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저희 담임선생님도. 기독교 사상이 뿌리박혀 있으니까 성소수자 학생을 꺾어보질 않았을뿐더러 거의 “개네 미친 거 아냐?”식으로 무시할 뿐. 미션스쿨이라서 좀 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교복도 다 치마인가요 여학생은?)

그렇다. 그래서 한 번 바지교복 입으면 안 되냐고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머리가 정말 짧았는데 스포츠로, 애가 그냥 반항심에 그런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빨리 머리카 길러” 그리고 화만 내고 가더라. 도저히 이 머리로 치마 못 입겠어요 했더니 “머리를 그냥 기르라고” 이려고 하시더라구요. 학교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서, 내가 나서서 건의를 하고 하면 앞날에 문제가 많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건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좀 무모한 것이다.

그밖에도 말 같은 것들... 하리수 이야기 개그콘서트에 나와서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왕비호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f(x) 연예인 보면서 아 개 하리수 같은 애 아냐? 하면서 왕비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웃기겠지

사람들은. 라틴에, 왕비호 이상하다 미쳤다 이러면서 글이 막 올라왔다. 그런 거 보면서 아직도... 저희 학교 선생님은 태국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줬는데 태국 애들 쇼가 유명하다, 트랜스젠더 쇼. 개들은 약을 맞아서 일찍 죽는다, 개네는 잘라내고 붙이고 그랬다는 등,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등, 우스개소리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태국 가신 분은 아직 못 봤고 가려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남한테는 그냥 우스개소리가 된다. 개네들 보면 기분 이상하다면서... 뭐하러 보러 간 건지 모르겠다. 그걸 와서 교사가 아무 생각 없이 개네들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석에서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거면 몰라도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

남녀 짝짓는 것도 정말 안 하면 좋겠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앓힌다. 남자애들끼리 놀고 여자애들끼리 노니까 친해지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긴 한데 난 싫다 정말.

그리고 막 취업자리 같은 것도,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취업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지금은 취업을 또 희망하는 애들은 보내주는 거 같은데, 그때는 딱 잘라서 여자애들은 자리 없다고 딱 하는 거예요. 대학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특히 다른 사무직도 그렇겠지만 조리 쪽이 일을 하면 그런 게 정말 심하다. 여자 남자 봉급도 다르고 채용해주는 데도 다르고. 제일 심한 데가 63빌딩 베이커리에서 채용공고가 났는데 아예 기준이 남자였다. 애시당초 부를 생각이 없는 거다. 성소수자가 아니라 남녀 얘기지만...

Q. 학교에서 자신이 성소수자 학생이다, 또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인가요?

미 : 일단 친구들과하고는, 결혼 이야기할 때. 나중에 뭐 커서 나는 누구

랑 결혼할 거고 할 건데 너는 어때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게 선생님들도 여자 애들은 커서 시집을 잘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한테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나만 굉장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친구들이 커밍아웃한 친구들은 그래도 조심을 해주는데 전혀 안 친하거나 커밍아웃 안 한 친구들은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 저 호모 새끼 이런 욕 많이 한다. 그런 욕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수업내용이나 교과서 내용 같은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 그런데 이젠 내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학교 이야기인데, 다른 학교가 서울 학교이긴 한데, 종교 수업이 아예 있다. 교과서를 들고. 그 친구 아예 교과서를 가져와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써 있었다. 그래서 가져와서 보면서 “야 우리 안 된대.” 웃고 그랬다. 그렇게 아예 목사님이 종교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한다. 안 된다고.

(학교에서 성정체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나요? 교사나 학생들이?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 소외감 같은 걸 느낀다. 여자는 결혼해야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주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자체가 난 슬프다. 통계적으로 봐도 열에 한둘은 있는 건데 근데 내 곁에는 예외일 거야 그런 생각. 그런 소외감 때문에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도 시작하게 된 거다.

Q.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성소수자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주변의 다른 성소수자 친구들의 사례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미 : 커밍아웃한 친구들은... 처음 본 친구들은 그게 진짜 있구나 그러면

서 놀라기도 하고. 겪어본 친구들은, 나 말고 다른 성소수자를 만나본 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하면서 넘어가주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우호적이지만 아닌 애들은 정말 편견에 완전 찌들어 있다. 게이는 핑크색 옷만 입는다, 레즈비언은 다 머리 짧은 애들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여중 여고에 많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너는 왜 머리를 안 길러? 이런 이야기 맨날 하고 선생님들도 머리를 왜 안 기르냐고 계속 이야기한다. 여성성을 굉장히 강요하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과 관계에서 호모포비아 같은 것, 내가 성소수자라는 게 알려지면 적대시하거나 괴롭히거나 놀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나요?)

있다. 예전에 동성애 영화 쌍화점 같은 거, 애들이 학교에 가져와서 포스터 보면서 욕을 하는 거다. 어떤 애는 호모포비아라는 단어를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야 나 호모포비아야 재네 너무 싫어”라고 내 앞에서... “게이 새끼들 미친 거 같아” 욕을 하고. 아 그래 재를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다. 남학생이었다. 웃긴 거다 지들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Q. 학교 외에도 지역 사회(동네)나 가정에서 살면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미 :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셔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와서 아무래도 요리를 배웠으니까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딸이라서 요리를 잘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다. 그런 학교를 다닌다고 했더니, 그럼 “그 학교는 여자만 있겠네?”.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남녀 비율은?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셰프들은 전부 남자고. 그런데도 동네 아주머니들은 당연히 애가 딸이라서 요리를 잘 하는구나, 나중에 시집 잘 가

겠네, 당연히 이 말도 따라붙고. 엄마는 지금 어느 정도 내 정체성을 아는데,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한다. 그래서 나 혼자 살 건데요, 그러면 정말 어르신들 표정이 말로 설명을 못할 정도로 바뀐다. 왜? 어째서? 그런 표정? 이해를 아예 못하신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거나 가출하는 사례를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퀴어뱅에서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출해서 자기 혼자 일하고 애인하고 동거하고 그런 친구들이 신촌공원에 가면 정말 많다. 내 친구는 라틴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가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딸이 그렇게 라틴이라는 곳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라틴이 너를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는 등...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부모님과 계속 갈등이 심해지다가 결국 가출을 했다. 애인하고 내려가서 같이 동거를 하다가, 그런데 그것도 오래 안 간다. 문제는 그거다. 10대 이반들이 가출해서 어디서 살고 하면 그게 오래 가질 않는다, 항상. 그렇게 내려가서 살다가 결국 올라와서, 그러면 남은 건 그냥 ‘고등학교 중퇴생’ 그거밖에 안 남는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애를 해주질 못했고 자기는 자기 정체성도 너무 확고한데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 친구들도 이렇게 많은데 부모님이 이상한 애로 몰아가니까, 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고, 부모님도 개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출밖에 안 된다. 물론 주위에서는 참으라고 했다. 부모님이 나중에 이해해주실 거다. 그런데 부모님은 니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러고. 주위 이야기랑 부모님이랑 부딪치니까... 가출해서는 썩고생한다. 하루 한 끼 라면 먹고.

Q.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사나 보호자/부모에 대한 교육은?

미 : 일단, 애들이 성 이야기에 관해서 성교육을 정말 중학교 때도 틀에 박힌 성교육을 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성교육을 더 안 한다. 1년에 1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어디서 듣고 온 걸로만 성교육이 박히는 거다. 한 번 혼전순결 이야기로 토론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여자애들은 전부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쪽이고 남자애들은 다 반대쪽에 섰다. 그래서 나만 남자애들 쪽에 있었다. 여자애들이 그러다가 한번 인생 잘못된다고, 큰일난다고 그런 사고방식이 여자애들은 있는 거다. 너네들은 남자애들이라서 남의 일이라 그렇게 태연하다고. 솔직히 성관계 안 하는 학생이 적다기보다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섹스를 안전하게 하면 되지 안 하진 않는데, 그걸 단어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지켜야 한다고 아예 하면 안 된다고,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러고 있나 싶었다.

(성교육 내용은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 가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자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모르겠다 그때 자서 계속.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내용. 성소수자 그런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 이성교제 그러고 임신 과정 그런 건 과학 시간이나 인간발달 배울 때 배우는데 이성교제만 써있지 동성교제는 없다. 거기에 요즘 피임 콘돔 이런 건 잘 나와있는데 교과서로 보고 외우기만 하지 실제로 머리 속에 있는 거 같진 않다.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외운다.

(성교육 내용에 다양한 성정체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포함시킬 필요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성관계? 이런 걸 해야지 이 성교육이 아이들

의 보수적 현실하고도 떨어져 있고 이런 걸 조장하는 역할만 현재는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 미국에 사는 애가 얘기해준 게, 자기는 성교육 시간에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성병이 어떻게 하면 걸리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걸 자세히 가르쳐주는데, 한국 성교육은 왜 그러냐고 불만을 이야기하더라. 필요한 건 안 가르쳐주고 쓸데없는 것만 맨날 가르친다고.

그리고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자기 주위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간성이 그런 게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 차라리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알기라도 하는데. 그냥 내 이야기지만, 아는 게이 분한테 무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게 뭐냐고 한다. 그분들은 성관계, 사랑에 관심이 없고 대부분 섹스리스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이 어딴냐고, 그런 사람은 이상한 거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왜냐면 분명히 학생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 친구 중에도 있고, 그런 걸 교과서에 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관련해서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면, 성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고 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학생들 말고도 교사나 보호자들, 부모들 대상으로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이 좋을지요?)

그래서 이 책(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을 가져왔다. 부모님 것도 있었는데 부모님 거는 부모님을 드렸고. 교사용 지침서인데, 이걸 다 읽어봐야 한다 선생님들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한 기독교 맹신자시다, 거의. 그러니까 한 번 여자애들 모아놓고 이야기한다고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남자애들 사귀지 말라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더 이상한 거지 그런 애들 있으

면 그건 정말 사탄이라고, 악한 거라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댁에는 여자애들만 모아서 교육시킨다는 게 그런 말이다. 웬 쓸데없는 말인지... 여기 나와있는데,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신다 저희 선생님은. 나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커밍아웃한 사례는 거의 못 봤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꾸다.

(학교에 상담 교사 같은 건 있나요?)

없다. 보건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형식적이고 없다. 상담실도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쓴다. 거의 그런 식이다. 진로 상담은 개인적으로 선생님 만나서 많이 하긴 하는데 상담이 진로상담만 있는 게 아닌데...

(성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되어야 할까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어땠던 것 같나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아 나는 태어나서 처음 좋아한 사람이 동성이었어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왜 서서 오줌을 못 눌까 트랜스젠더 분은 그런 얘기, 나는 크면서 나한테 고추가 자랄 줄 알았는데 안 자라서 울었다, 그런 분도 있었다. 분명히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어릴 때 얘기도 친구한테 못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이 예를 들면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상한 거 같으니까 고쳐야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주위 환경도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고쳐야 하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고친다고 고쳐지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아저 ‘탈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정체성을 바꾸려고 해서 바뀌지는 게 아닐 텐데 탈반하고나서 이성애자처럼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쓰럽다. 선생님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선생님 아니더라도 책에 한 줄이 나와 있거나 한 마디를 듣는 게, 자신이 힘들 때 많이 도

움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 힘들어진다. 오히려 그런 거 나쁘다는 식으로 들으니까.

Q. 교육청은 학교를 감독하고 학교 운영 등을 바꿀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는 교육청이 꼭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 :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일단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걸 교사들도 알고 학생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이런 거 읽어보면 알 텐데, 보지도 않았을 거다. ‘맑음’이라는 친구가 어디였지? 세미나를 갔을 때, 교사들 직무연수 갔는데, 완전 진짜 노친네 아저씨들 와가지고 그런 학생이 있고 바이섹슈얼이 있고 레즈비언이 있고 게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레즈비언이랑 게이도 뭐가 다른 건데요? 이걸 뭐고뭐고 하면 그럼 그건 바이랑 뭐가 달라요? 이해를 전혀 못한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한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물론. 너무 많은 걸 안 바라고 용어 알고 학생들한테 그런 게 있다고 한 번 정도 설명해줬으면. 외모만 가지고 왕따 당하는 학생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만 짧으면 레즈비언이고, 남자라고 하고, 교과서에 한 번 외국인이 나오는데 커트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거기에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 써있는데, 아빠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교과서엔 전부 여자애들은 치마 입고 있고 남자애들은 바지 입고 있고. 전부 치마만 입진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라?

(교과서 내용이나 교육 내용을 교육청이 바꾸면 좋겠다? 학교 안에서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시정을 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 서울은 출석번호 매년 바뀌서 하거나 생년월일로 하는 데도 있다고, 이름순서로 하거나, 이제 이름순서로 해서 하더라도 한 1년은 남자 먼저 했다가 나중에는 뒤로 갔다가 그렇게 바뀌서 하는 데도 있던데, 경기도는 아직 안 그런 건지, 저희 학교만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만이라도 해줘도 좋겠다.

(제가 있었던 학교는 바뀌서 했는데... 공립은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사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것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이 남아선호사상이 되게 심하시다. 금년이었나 작년이었나 학생회 선거하는데 전부 회장 부회장이 한 팀으로 출마를 했는데 회장이 여자고 부회장이 남자로 출마하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터치를 했다. 나는 여자가 회장 되는 거 싫다고. 결국에는, 그 남자애는 부회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니가 회장 하고 내가 부회장 할게 개네 둘이는 정작 이야기가 된 건데, 교장 선생님 압박 때문에 남자애가 회장으로 바뀌서 출마했다. 참 어이가 없었다. 니네 왜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여자가 회장인 게 싫어서 그랬다고 한다. 인사할 때 차렷열중쉬어 하는데 목소리가 작은 게 싫으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모양도 안 나고 해서 싫으셨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걸 보면서도 여자애들은 당연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것도. 지들 편할 때는 레이디 퍼스트고, 자기들 하기 싫을 땐 남자애들 시키고. 레이디 퍼스트가 좋은 데서 온 게 아닌데도 그걸 남발을 하더라.

(구제기구는 어떨 것 같나요? 성차별, 남녀차별 범주는 구제 요구를 할 수 있을 듯한데, 성소수자란 게 드러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기구가 있다고 말만 해줘도 사실 도움이 된다. 라틴이나 쿼어벵이나... 요즘엔 다 인터넷 하니까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한다. 어디에 이런 데 들어가면 도움을 받

을 수 있다고 간단하게 유인물이라도 나눠주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거대한 기구 같은 건 안 바란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너무 적다. 모르겠다. 작은 기구라도 상담사들 연결해주고,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걸로도 큰 도움이 된다.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필요한 것 같다. 상담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자신이 간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나.

(학생들이 상담을 하려고 했을 때, 라틴에 글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 어디에다가 상담을 하나요?)

학생들이 지식인에, 네이버지식인에, 댓글이... 요즘은 좀 나운데 옛날에는 “제가 레즈인 거 같아요” 하고 올리면 “같이 다니지 마세요 옹아요” 이런 댓글 달리고. 그래서 라틴에서 지식인에 댓글 달기 많이 추진하고 있다. 지식인 답글 보고 왔어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 많아요, 그 말 한 마디면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옹아요 같이 다니지 마세요 한다.

Q.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미 : SMer인 친구가 있는데, 물론 청소년 SMer가 거의 없어서 청소년 SMer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 그 친구는 아쉬워하는데, SMer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그렇다고 한다. 자신들이 변태집단이라 숨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성소수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제 친구 하나만 아니라 청소년 SMer도 많은데, 그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나는 왜 때리는 게 좋지 맞는 게 좋지, 나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한다. 그 플레이를 안 하면 욕구가 해소 안 되는데, 호모새끼 하듯이 너 SMer 그런 거 아냐? 그러면서... SMer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민감하다 아직.

5. 한부모가정 전문가 심층면접

권○○(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 그룹홈을 맡아서 꾸려가고 있음.)

(2009년 10월 30일 군포여성민우회 사무실에서 면접)

Q. 어떤 일/연구를 해온 분인가요?

권 :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오래도록 일해오면서 현재는 “한부모 그룹홈”을 맡아서 꾸려가고 있다.

Q. 한부모 가정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인권침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겪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경우들이 있을까요?

권 : 아이들이 어린경우는 이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니는 데 별 어려움을 겪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담임선생님께 한부모 가정이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그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되는 친절이 문제인 것 같다. 너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임이 드러나서 더 힘들게 되는 일들도 있다. 그냥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라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배려와 관심 정도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Q. 그런 경험이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부모가정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느낀다고 이야기하나요?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리적 상처가 된다고.

권 :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성적도 떨어져 사람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는 등 심각하게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에 의해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집에서는 꼼짝하지 못하지만 집밖에서는 가정에서 받은 공포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Q.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지역 사회(동네)나 가정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과 학교생활 사이의 관계는?

권 :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작은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아이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봤다. 아빠가 없으니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싸움도 할 거라는 억측성 추측이다.

사회에는 아직도 이혼한 여성(남성)의 경우엔 남편(아내) 간수도 제대로 못한 모자란 여성(남성)이나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여성(남성),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킨 이기적인 여성(남성)으로, 사별한 여성(남성)의 경우엔 박복하고 팔자가 세서 남편(아내)를 먼저 잃은 것으로 여성(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엔 혼자 사는 것 자체로 인해 ‘주인 없는 물건’ ‘아무 남자나 찢러봐도 되는’ 무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한부모 가족이 되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가족은 가족과 가족내의 가치역할, 규범, 지위 등을 재구조화 한다.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성, 연령, 수입 등), 사회적 지원망, 지역사회

의 가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 학교에서는 동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인식으로 나뉘진다. 사별가정의 아이들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혼가정의 아이들은 부모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려하고, 그런 부모들의 태도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족상황이 친구들에게 알려 질까봐 스스로 외톨이가 되거나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학교생활에 소극적이고, 학교부적응 학생이 되기도 한다.

Q. 학교의 교육 내용이 학교에서 정상가족(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 가족), 결혼, 이혼,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전달하는 정보나 메시지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의 교육 내용이 아니더라도 매스미디어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권 : 가족형태를 배려하지 않는 양부모가정 중심의 교육과정의 문제다. 가족관련 교육이 주로 양부모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외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대부분 다루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또래 집단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의 아동 또는 청소년들은 한부모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감추고,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끼리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TV드라마에서도 양부모가정이 아닌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은연중에 양부모가 아닌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소개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한부모 가정을 비롯하여 정상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가정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교사나 보호자/부모에 대한 교육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권 : 인권교육은 학생 포함해 교사와 보호자들에게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기 위해서는 교사와 보호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학교, 지역사회, 회사 등에서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에 따라서는 대상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인권교육, 학교 인권교육(교사와 학생이 함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방식은 토론방식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것 같다.

Q.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아마 가정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정보 공개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한부모가정 학생의 인권 상황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권 : 가정환경조사서,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교관련 서류들에서 차별적이지 않게 서류들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아버지가 부재여도 있다고 이름을 기록해 넣는다. 급식지원비나 여러 가지 지원

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처지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대부분은 지원을 받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뭔가 사회적으로 다른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배려차원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스스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 교육들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Q. 그밖에 한부모가정 학생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

권 : 도움도 흘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떳떳하게 도움 받고, 받은 도움들을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풍토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들을 포함해 교사, 학부모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한부모 가족들은 배우자만 잃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관계망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의 가까운 인물들이 이혼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인정치 않거나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자의 우울감과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혼결정에 회의를 느낌으로써 자신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한부모 가족의 적응이란 개별 가족구성원들이 누군가의 상실에 대해 적응하고, 새롭게 획득한 생활양식에 대해 적응하면서 한부모 가족이라는 삶에 대해 만족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가족생활로부터 벗어나 자신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

6. 한부모가정 학생 관련, 학생·학부모 심층면접

A(경기도 거주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B(경기도 거주 어머니)

(2009년 10월 24일 한부모가정 관련 단체 사무실에서 집단 면접)

Q.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점, 불만사항,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느꼈던 것은?

A : 아직 친구들이 부모님이 이혼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통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집에 놀러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예전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다. 그냥 날 불쌍하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 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빠가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날 동정할 것 같다.

2. 학교에서 자신의 가정이 한부모가정이다. 또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인가요? (정보 공개나 학교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등등...)

A :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아빠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제대로 아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럴 땐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대화에서 빠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 가끔은 슬프기도 하고, 뭔가 아빠가 없다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 질까봐 걱정도 되고.... 아빠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괜히 우울해진다. 가족사진을

꾸미거나 부모님 직업 알아오기, 가족 족보 그려오기 등 가족 관련한 숙제를 해가야 할 때 사실은 좀 짜증난다.

Q.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도 가끔씩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교사가 당연히 학생들의 가정이 정상가족(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 가족)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언행이나 요구를 겪은 적이 있나요? 집이 한부모 가정이라서 학교에서 곤혹스러웠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보호자가 학교 운영에 참가하거나 간식을 사는 데 돈을 보태거나, 교사와 의사소통하거나 등등)을 처리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B : 담임선생님께서 한부모 가정인 것을 알고 계셔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그런데 다만 너무 많이 신경써주셔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엄마들끼리 급식·청소 당번을 정할 때조차 학교에 가는 게 싫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암담했다. 이웃에서 "집에 차 마시러 놀러 오세요"라고 할 때도 부담스러웠다.

Q.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편견(동정이나 놀림 등을 포함하여)을 겪거나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나요?

A :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특별히 친구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알게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다.

Q. 학교 외에도 지역 사회(동네)에서 살면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이

있다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겪는 것과 꼭 그렇진 않은 것들 모두를 포함하여

B : 그런 편견들 때문에 사실 이혼한 사실을 주변에서는 잘 모른다. 아빠가 외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아직은 이혼녀라는 시각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Q. 교육 내용, 교과서 내용 등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정상가족(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 가족)이 당연하고 건강한 것,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거나 학습시킨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한부모 가정을 비롯하여 정상가족(실제로 전체 가구수의 50%도 되지 않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가정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B :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과서도 그렇고 TV에서도 한부모 가정은 늘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비쳐진다. 사실 부모 혼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이 정말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세상엔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너무 쉽게 그들의 모습을 재미삼아 보여주듯 하는 것 같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것이 인권교육인 것 같다.

Q. 교육청은 학교를 감독하고 학교 운영 등을 바꿀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는 교육청이 꼭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B : 여성 한부모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비용들이 들지만 여성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이 별로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A : 급식비가 없으면 학교 다니기가 너무 창피하다. 급식비가 미납되면 이름이 공개되는 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7. 운동선수 학생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남○○(운동부 지도 경험 있는 학교 교사,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운영위원)

(2009년 10월 30일 대덕고등학교 교실에서 면접)

Q. 어떤 활동이나 연구를 해왔나요?

남 : 운동선수 학생 전문가는 아닌데... 그 쪽 분야 공부를 좀 했다. 최근에 인권 관련 지도자 폭력문제로 여기저기 불러 다니며 활동하다 보니 소개 받은 것 같다. 충남대학교 박사 스포츠 사회학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대덕고 교사 하고 있다. 운동부 지도는 전 학교에서 3년 정도. 육상도 좀 했었다. 그리고 지금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Q. 운동선수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인권침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겪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경우들이 있을까요? (학

교의 관행이나 제도, 교사의 언행, 학생들의 언행 등)

남 : 학생들과의 관계 문제가 우선 있다. 거의 어울리지 못한다. 친구의 폭이 제한된다. 인권침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학생들이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인식이다. 운동부는 당연히 열외 취급된다. 학급에 운동부가 들어오면 싫어한다. 평균점수가 낮아지므로,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 자체가 학생들을 열외시키고 있다. 모든 일에 예외 취급하고 단지 시험에서 우승하거나 할 때만 주목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아닌 운동하는 기계로 취급한다. 일반 학생, 운동선수 학생, 학교 모두 운동선수 학생에겐 공부가 아닌 운동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 학생들은 수업을 거의 안 들어온다. 계절 운동 같은 경우(스키) 교실에 있기도 하지만 오전 수업만 듣고 가거나 잔다. 선생님도 그냥 자라고 한다. 그렇게 배제시킨다. 합숙소 생활을 하다보니 수업을 같이 못 듣고 학교 생활에 참여한다. 합숙소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2001년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나서 국회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합숙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전면적 금지는 무리이고 차츰 줄여나가지만, 아직 행해지고 있다. 그런 데서 생활하다보니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숙소에서의 '섬 문화'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만날 기회나 인맥도 없고, 학창시절 기억도 없다.

Q. 운동선수 학생들이 운동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차별이나 인권침해, 어려움이 있나요? 수업 참여의 문제, 운동부 내에서의 폭력이나 지나친 훈련량이나 압박감 등등.

남 : 운동부 내부에서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지도자 폭력, 학생들간의 폭력이 있다. 지도자 폭력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인데, 무방비 상태이다. 선수들의 생사여탈권, 시험에 참가시

킬지 말지 같은 걸 지도자가 쥐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학부모도 침묵하고, 전국적으로 80%가 맞으며 운동한다. 때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맞으면 운동을 잘하려는 의욕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90퍼센트다. 동물을 기르는 것 같다. 상명하복이 중요히 여겨진다. 건방지다거나 지도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패듯 9패는 건 잘못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맞는다는 게 문제다.

(맞으면 운동할 의욕을 보인다는 것은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인가요?)

구조적 문제다. 성적이 나지 않으면 계약직인 지도자가 잘린다. 시스템 상 학교 선생이 감독이고 교사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코치를 체육회에서 계약한다. 성적을 잘 못 내면 잘린다.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체벌을 한다. 과학적 지식, 훈련 방식 보다는 경험에 의지해 체벌하며 가르친다. 성적에 대한 압박이 지도자한테 있으므로 체벌. 학생에게도 성적 압박이 있다. 전국 4강에 못 들면 대학에 못 들어간다. 전국대회 4강이나 전국수준 입상 경력이 없으면 대학에서 안 받아준다. 고교 졸업 후 갈 데가 없다. 운동선수 학생도 공부가 필요하다. 만약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운동외에 아무것도 없어진다. 방치 된다. 제도적인 문제이다. 성적 압박감이 심하다. 자살도 생각하고 약물 복용, 도핑이라고 하는 그런 거도 생각한다. 체고에는 전국동메달도 낮은 성적이다.

운동부에서도 성적경쟁이 심하다. 체육계에서도 합의된 사항은 승리至上주의가 팽배한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다.

(훈련 양이 무리가 가는 경우는 없나요?)

크게 보면 성적과 연관되어 있다. 체급 경기 같은 경우 낮은 단계 체급으로 들어가기 위해 감량한다. 체고에서 그러다 한 명이 훈련 중 사망

한 적이 있었다. 이 외에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야간 훈련.. 중고생들의 훈련량이 이렇게 많다. 훈련 양에도 재제가 가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오전 수업 필수에 일정시간 이후에는 훈련 못하도록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지역이 평준, 비평준 지역이 섞여있는데 운동선수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경력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는지? 즉 고교입시가 있는지)

대전지역은 대부분 연계성. 같은 종목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 대입이 문제이다. 고교에서의 훈련 양 압박, 성적 압박이 제일 심하다. 하지만 중학생들에게는 소년체전이 있다. 고교입시에도 성적 필요하고 나름 중요하다. 대입보다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도 굉장히 기형적이어서 소년체전 폐지론도 많이 나온다. 고교의 경우 전국체전의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출전 기회가 많아야 3번이고 보통 2번이나, 1번이다. 성적이 제일 중요하므로 체벌을 당해도 묵인한다. 단체 스포츠는 폭력이 더 심하다. 선후배간 폭력이 심하다. 선생님도 묵인, 혹은 장려한다.

(4강에 진출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대학 진학을 못한다. 샌드위치라는 것도 있다. 우수한 학생과 함께 한두 명의 학생을 대학에 끼워서 입학시켜 준다. 그럴 땐 학부모의 뇌물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운동하면서 비용은 많이 드나요?)

많이 든다. 엘리트 스포츠는 지도자 비용 때문에 많이 든다. 지도자 월급 이외엔 모든 훈련비가 학부모 부담하며 단체운동은 더 심하다. 시합 때는 일인당 100-200만원을 내기도 하는데 착복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선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스키나 골프처럼 장비 구입이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들도 있다.

Q. 그런 경험이 운동선수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운동선수인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느낀다고 이야기하나요?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리적 상처가 된다거나, 학교 졸업이나 진학 시의 문제 등.

남 : 폭력에 익숙해져서, 맞으면 사람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실질적으로 맞으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 두 번째로 가지는 생각은 복수심이다. 일반학생들에게도 폭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집단적 폭력도 형성되기도 한다. 계속 폭력의 재생산이다. 심한 우울증, 자살기도 사례도 있다. 규율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규율을 체벌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학부모들은 폭력을 방조하는데, 진학 때문이다. 학생들은 진학을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고 일탈을 꿈꾼다. 상위수준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면 조폭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비용의 낭비이다. 물론 최선은 운동을 잘 하는 건데 차선책이 없다. 무대책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좌절하고 극단적 수단을 쓰게 된다. 경비업체 등에 취직을 하기도 한다.

Q. 운동선수인 학생들이 지역 사회(동네)나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과 학교 생활 사이의 관계는?

남 : 지역은 몰라도 가정에서는 갈등이 있다. 보통 대학을 쉽게 가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잘 못하면 체대에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체육과로 진학하려는 일반계 고교생들은 성적과 운동 둘 중에 균형을 잡지 못해 힘들어 한다. 훈련이 힘들어도 그만 둘 수 없다. 부모도 힘들어 하면서도 대학 입시를 위해 운동을 강요한다. 부모들이 마음이 안 좋아도 체벌에 반발할 수 없다.

운동을 하는 것 자체에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유명선수

들이 각광을 받으니까 환상을 가지고 시키게 된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확률인데, 마스크이 무책임하게 계속 부추긴다. 가정의 문제는 참 잘 설명하기 힘들다.

그 외에 합숙소의 문제도 있다. 체육중, 체육고는 기숙사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주말에만 돌아간다. 부모와 애착관계가 없다. 민감한 시기에 운동만 하게 되고 돌봄이 부족해진다. 이것이 폭력적인 양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Q. 운동선수 학생들과 관련하여, 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입시 방식, 교육 시스템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나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남 :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지만 기본 소양은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한 최선책, 차선책의 문제도 있고 최소한은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전수업만이라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회 없는 기간은 전일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대회가 급박하면, 오전은 수업에 들어가고 오후 운동을 하도록 하고, 일주일 전 같이 시험 직전에는 모두 공결처리가 되더라도. 그리고 대회 뒤에 보강이 필요하다. 일선 선생들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하다. 동급생에 의한 과외를 해도 좋을 것 같다.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에서 시도했었던 방안이다. 공부하는 학생 운동선수 이런 모토를 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입시도 전국대회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건데 이걸 바꾸는 게 어렵다. 대교협과 대한체육회가 상의가 있어야 한다.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는지를 따져 봐야 하고, 전국대회 수준의 실적은 너무 높다. 체육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국회 공청회에서 지도자 폭력 관련 발제를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와서 많이 힘들다고 했다. 대교협에서는 대학들이 강경 반대하므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경쟁체제의 논리를 내세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답이 없다.

(대학에를 반드시 진학해야 하나요?)

실업계로 바로 가는 선수들이 있고, 대학에 가지 않고 프로로 가는 선수들이 있다. 프로가 되면 선수생활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 두고 지도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못 될 경우 개인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역시 어렵다.

Q. 성적에 따른 차별이나 운동선수에 관련하여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학생들, 교사들, 보호자/부모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남 : 폭력을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 선수 지도자에게 교육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방식은 강의형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여러 구 사람들을 싹 모았다면, 지역구별로 토의 조를 짜서 상담자 또는 사회자를 배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참여가 적극적이어서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합의될 수 있다. 조별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강의나 온라인 방법은 안 된다.

중요한 주제 또 하나는 학습권이다. 체육계 교수들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필요 없다고 느낀다. 유명 선수들은 좋은 실적으로 대학에 가지만 대학에 가서 하는 것이 없다. 대학도 선수도 문제이다. 운동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운동 이후의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교양서적 같은 것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권침해라는 생각도 없다. 이런 것

들에 대한 토의도 필요하다.

(다른 학생들이 두려워하거나 거리감 가지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가?)

필요하다. 막연하긴 하지만 교사의 인식이 바뀌면 교사의 태도에 의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사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 일반 학생들과 선수학생들의 어울림의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해도 풀릴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Q.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아마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차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운동선수인 학생의 인권 상황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남 :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짜는데 선수학생 차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이 있는지?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입시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역할을 할 때, 학생들의 조건에 따라 형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조례는 법적으로 효력이 낮다. 현재 교육청은 감시자의 역할일 뿐, 인권 관련 감이 없다. 어떤 것이 운동선수 학생에게 있어서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공청회 등의 소집을 위해 이야기를 해 봐야한다.

위반되었을 경우 구체절차 필요하다. 내 식구 감싸기 등의 가족문화에 젖지 않도록 감시기구에 외부사람이 개입될 필요가 있다. 구조자체의 변화는 무리지만 교육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 고문이 와서 해야 한다. 교수나, 학부모나, 단체사

람들이나.. 시민단체 꼭 필요, 대학,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들이 개입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가 있을 때는 학생들도 참가를 해서. 선수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좋다, 교육청 외부에 있어야 한다. 상시가 아니더라도 사건대응 식으로라도 운영되어야 한다.

또래상담소도 방법이다. 희망자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또래 상담을 실시한다. 운동부 대상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뭐 사실 운동부를 없애고 새로 다시 구성하는 게 제일 좋다. 운동선수 학생도 학생이란 점이 더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광고가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Q. 그밖에 운동선수 학생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

남 : 구조적인 고착화가 문제다. 대학 입시 때문에 바뀌기 힘들다. 전국 체전이라던가. 정말 안 바뀐다. 스포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 한국에서 스포츠라고 하면 메달 따기, 국위선양, 이런 거다. 메달 획득 국위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의 조레 등 밑에서 변화를 시켜야. 안 좋은 사례의 경우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학교간 성적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운동부학생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시적 영향은 없지만 더더욱 배제가 될 듯 하다. 학교의 성적이 중요해지면 평가 시험에 더욱 참여 보장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 학교장이 기피할 것이다. 체육 수업 시수가 줄어들 것이다. 운동권 학생들이 학습권에서 밀릴 것이다. 운동 실적(수상)을 더욱 강요당할 것이다.

8. 운동선수 학생 관련 학생 심층면접

김**, 이** (경기도 중학교에 다니는 운동선수 학생들)

(2009년 11월 9일 ***중학교 휴게실에서 집단 면접)

Q. 사는 지역, 나이, 다니는 학교 등

김 : 경기도 **시 **동에 살고 있으며, **중학교에 다닌다. 중학교 2학년이고, **부이고 16세다.

이 : 경기도 **시 **구 **동에 살고 있고, 같은 학교에 다닌다. 중학교 2학년이고, **부이고, 16세이다.

(16세인데 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죠?)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나이이다. 운동을 늦게 시작하면 시합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1년을 더 다니게 되었다. 시합일수가 부족하면 고등학교에 못가는 것은 아닌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작년에 한 해 더 다니기로 했다. 이렇게 한해 더 다니는 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다.

Q. 운동부로서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학기 중에는 새벽운동을 7:30~8:30까지 학교 중간에 수업 듣고, 오후운동을 3:30~6:00까지 한다. 야간운동은 7:30~9:00까지 한다. 정식 시합이 있을 때는 오전 10시부터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연습을 하고, 정식 시합이 아닌 연습시합이 있을 때는 수업을 빠지고 가기도 한다. 여름방학 때는 오전부터 야간까지 훈련을 하는데 오전10시부터 밤 9시까지 훈련을 한다. 겨울방학 때는 새벽부터 야간까지 훈련을 하는데 새벽 7:30부

터 밤 9시까지 훈련을 한다. 훈련양이 많아서 수업시간에는 피곤하고, 집중하기가 힘들다. 연습할 때는 코치선생님이 한분 계시고, 훈련할 때 드는 비용은 회비로 내서 함께 해결한다.

Q.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운동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특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답해주세요.

친구들을 많이 못사귀는 것이나 훈련을 많이 하는 것에는 불만은 없다. 운동 때문에 수업시간에 잘 때 다른 아이들이 “왜 저 애들은 안 깨워요”라고 하면 그건 짜증스럽다. 운동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 그리고 한 학년 더 다니면서 운동하는 것이 힘들긴 하다.

Q. 학교에서 자신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지?

한 학년을 다시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은 느낌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리고 다른 운동부 아닌 학생들과 같이 운동할 때 우리가 훨씬 잘하니 좋은 느낌이 든다.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깨우지 않고 그냥 수업하는 것이 섭섭하거나 하지는 않다.

Q. 운동부내에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학교는 코치선생님의 체벌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학교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때리는 일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 우리가 많이 잘못하면 그때는 코치선생님이 때린다. 성남쪽의 농구부는 코치선생님이 많이 때린다고 하더라. 코치선생님의 성격에 따라 학교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 경제적인 부담

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잘 모르겠다.

Q. 교육청이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데 여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운동부라서 항상 헤어스타일이 짧다. 두발을 자유화해주면 좋겠다.

9. 빈곤학생 관련 전문가 면접

김경희(부천 새롭 공부방)

(2009년 10월 27일 새롭 공부방에서 면접)

Q. 어떤 일/연구를 해온 사람인지 질문

김 :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인근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빈곤학생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학교교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수월하고 선생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공부방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 때 빈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92년 8월부터 17년간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빈민지역을 찾아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약대동은 빈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어서 86년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중 지역선교의 일환으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90년부터 놀이방과 탁아방을 운영하였고 점차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고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되고 아동복지시설이 되었다.

공부방에 참여하기 위해 약대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게 되었다. 지금은 약대동이 재개발되면서 잘사는 동네가 되었으나 시설을 찾는 아이들은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원래 45명이었다가 현재 2009년 29명을 감소하였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정 9명, 차상위계층가정 11명, 다문화가정 3명, 한부모가정 아동이 6명이다.

Q. 빈곤한 아동의 경우 경제력 문제 때문에 취학/진학하기 어렵거나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요?

김 : 빈곤아동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아빠가 일을 잘 못 하거나 엄마한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경제적인 빈곤이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가정불화가 이혼이나 가정해체로 이어졌다. 실제 목격한 한 아이도 부모가 이혼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문제아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학교를 졸업 못하고 보호관찰대상자가 되었다. 고등학교도 못가고... 단순히 돈이 없어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부모가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게 되고 탈선을 하게 되고 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시설에서 보면 도벽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갖고 싶은 건 많고 그러다 보니 훔치게 되고 그게 걸려서 경찰로 넘어가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모님의 무능력이 가장 크다. 학교에도 빈곤이 알려지게 되었다. 가정교육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갖고 싶은 건 그냥 갖는

습관이 생겼다.

(교육비 미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정보가 공개되거나 하진 않나요?)

아이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식들이 많이 나아졌다.

Q. 빈곤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겪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경우들이 있을까요? (학교의 관행이나 제도, 교사의 언행, 학생들의 언행 등)

김 :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목격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빈곤아동의 경우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경우가 있을 듯하다. 선생님 나름이 아니겠는가... 어떤 선생님은 좀 더 신경 써서 봐주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그런 아이를 너무 불편해하기도 할 것이다. 이건 개인적인 차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차원에서 인권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와서 어떤 선생님이 약대동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이 동네 애들은 못살고 부모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수준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서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선생님은 강남 가지지 왜 여길 왔느냐고 말씀 드렸다.

Q. 그런 경험이 빈곤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빈곤한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 심리적 상처, 저학력 유발 등...

김 :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왕따를 당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고 했는데, 집안이 어려운데 거기다 공부도 못해 그러면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선생님한테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을 것이다.

(교사가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아이들 느낌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 나쁘다고 한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으로서 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욕을 하느냐, 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하곤 한다.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면 당연히 아이는 어려워진다.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의 관계에서 비릇되기도 하지만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릇된다. 대인관계나 또래관계를 제대로 잘못해서 아이들한테 외면당하고 학교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실 거고 무시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벽이 있다는 친구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못 어울리고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다. 부모가 삶에 찌들거나 무기력하다보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아이한테 냄새가 난다거나 지저분하다보니 아이들이 더 안 놀아준다. 따돌리고 저리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부모들이 못 돌보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꼭 바쁘고 시간이 없거나 맞벌이어서가 아니다. 실업자이거나 수급권자인 부모님의 경우, 직장이 없으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한테 관심이 없는 것이다. 관심이 없다보니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뭐가 필요하지도 모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저희 센터의 한 아이는 5학년인데 이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작년에 저희 센터로 올 때 자기 이름만 간신히 쓸 수 있는 상태였는데, 아빠가 저 한글도 모르는 놈 밥도 주지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완전히 무시하고 어디 외출할 일이 있으면 그

아이만 빼놓고 다른 식구들만 나간다. 너무 지저분하면 동사무소나 저회 센터에서 목욕도 시키고 전화해서 씻겨주라고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한다. 작년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또래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전에는 빈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들도 공부시키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했는데 요즘엔 어려우면 애들을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요즘 개천에서 용 절대로 안난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부모님이 관심을 갖거나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알 수 없가 없다.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보고자란 것도 없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어려워한다. 점점 더 양극화가 극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상처받는 부분에 대한 치료, 심리치료나 놀이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Q. 학교의 교육 내용 중에서 빈곤 문제나 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빈곤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불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 : 유복한 가정의 엄마, 아빠를 예를 들게 되는데, 지금은 30%이상이다 해체가정일 텐데 기본내용이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의 직업을 손들고 물어보는 경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아빠가 없는 아이도 많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아빠가 일을 안 하고 계신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재네는 아빠가 없는가보다거나 재네는 아빠가 일을 안 하나보다 하고 애들이 다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는 것은 참 생각이 없어 보인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시간에 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 데... 좀 그렇다.

(요즘도 기초생활조사를 하나요?)

요새도 한다. 애들이 발표회나 학예회 때 가서 작품발표를 보는데 어떤 아이는 분명 엄마랑 둘만 사는 아인데 거기에 자기 작품에는 너무나 단란한 가정의 모습으로 엄마, 아빠랑 손을 잡고 어디 놀러 가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전혀 어려운 아이도 아니고 엄마랑만 있는 아이도 아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표현 안하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에 맞춰서 표현하니까 선생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

Q. 빈곤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교사나 보호자/부모에 대한 교육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김 :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적인 마인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교육적인 면은 강한데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살피지 않으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됐다면 왜 그런지 엄마나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해서 학교에서 또래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텐데,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아이들 볼 때 단지 아이들 성적, 복장이 단정하면 부모한테 관심을 받나보다 하고 잘 지내나보다 라고 판단할 뿐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를 판단하는 데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간혹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아이들, 해체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는 보는 눈들이 조금 달라지고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 얘기를 듣다보니 교사들도 지역적으로 의식수준차이가 있는 듯

한데...)

그럴 수 있다. 교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멀리 강남을 안가더라도 중동만 가더라도 잘사는 지역에 속하니까 그 근처 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때나 학기 초에 사물함이 좀 낡았네요, 그러면 엄마들이 사물함 새 걸로 짝 대령하고 뭐가 좀 그렇다 하면 또 짝 해주고 등등... 스승의 날 때도 선물 수준이 다르죠, 아무래도 좀 괜찮은 걸로 할 텐데 이 동네는 없다거나 좀 그런 선물로.. 그런 면에서도 다르다. 그러니 교사들도 서로 얘기할 때 다르게 얘기할 것 같다.

(부친은 평준화인가요?)

평준화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완전 평준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지명도가 있는 편이다. 부천여고나 부천고의 경우는 상위 1%에 들어가거나 1지망, 2지망 등으로 선택하면 성적순으로 정해지게 된다.

(서열화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거나 하면 어떤가요?)

얘네들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할 말도 안 된다. 고등학교만 가도 다행이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생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이쪽 중학교에 안 가려고 한다. 수준이 낮다고 그쪽 동네가 빈곤지역이었기 때문에... 제 딸이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되는대로 그냥 보낸 건데, 다른 엄마들, 아이한테 조금만 관심이 있는 엄마들의 경우 주소이전을 해서 다른 학교로 보냈는데 엄마는 나를 왜 그냥 거기서 보냈느냐고 할 정도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2~3년 전만 해도 너무 수준이 낮고, 집안 자체가 남의 집 살고 오래된 빌라,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 당연히 학원가는 아이들 별로 없고 공부 별로 신경 안 쓰고 학교가 깡패학교라고 소문이 나고 학생질이 안 좋다고 인식돼서 웬만한 가정에서 중동 쪽이나 다른 학교로 보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사회복지 마인드와 관련해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있을까요?)

하면 좋다. 꼭 필요하다. 보통 아이들만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경우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여서 아이들 그룹별로 하고 최근에는 성폭력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모여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인권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편이다.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보호자들도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할만한 데가 없네 싶다. 다음에 저희 기관에서 한번 해야겠다. 부모회를 하니까 일하시는 분은 못 오시더라도 그때 강사 모셔다가 하면 된다.

Q. 학생인권조례는 용의복장규제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교복이나 용의복장 규제의 폐지가 빈곤한 학생에게 더 많은 열패감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사는 애들은 더 좋은 옷을 입게 되고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다닐 것이고 아닌 애들은 오히려 더 표가 나지 않나. 안 그래도 요새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삼사십만원 하는데 그걸 입고 다니는 애들을 잘 사는 애들이고... 그걸 사주는 부모들은 입고 다니는데 그걸 못 입는 아이들은 더 따를 당한다고 한다. 교복이 획일화돼서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것 없이 자율복장을 한다면 문제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수학여행이나 소풍갈 때 체육복을 가져오라고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하지 않으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통제하기가 어렵다. 빈부의 격차가 더 드러날 것 같다.

(용의복자 규제폐지를 전제로 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하자면 어떨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때도 규정이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치마는 몇 센치, 머리는 몇 센치 등?

(노출의 문제보다 메이커 등의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요?)

메이커 있는 옷을 입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메이커 있다고 해도 세 일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일일이 통제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더 어려워진다.

(학교가 제기능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교육지책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다. 규제가 안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는 딱히 답이 없는 문제이고 교육이나 두발문제도 남들이 봤을 때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교육이 돼야 하고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요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지적이 들어가고 통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

Q.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빈곤한 학생의 인권 상황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김 :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어려운 아이들에겐 학원을 연결한다거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학습지원, 생활지원, 문화지원 등도 있을 수 있다.

(선생님이 아이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운영위원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지역 센터나 복지관에 있는 실무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다. 징계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전문가들이 들어간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우 보는 관점이 일반 교사와는 다른 면이 있다. 교사의 경우 애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말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말로 선도를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할 듯하다. 나의 경우, 운영위원 들어가서 나도 좋고 학교도 좋다. 좀 전에 절도를 한 아이는 선생님 지갑을 훔친 경우였는데, 만약 운영위원이 아니라면 학교 선생님들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면 연락하기가 어려울 텐데 나 같은 경우 바로 학교 연락해서 아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고 선처를 부탁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이러저러한 걸 당부하게 되니까 서로간의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아빠의 실직으로 도시가스 난방비를 못 내서 가스 끊겨서 난방 없이 겨울 지내면서 월세가 밀려 쫓겨나는 상황이 되자 아이를 데리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자거나 노숙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이 아이의 경우 학교를 자주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등학교는 재량으로 졸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서도 정보를 주게 된다. 급식비 미납하는 상황이니 면제를 부탁하고 출결상황을 다그치지 말고 잘 타일러 달라고 부탁해서 지금은 거의 결석 안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Q. 그밖에 빈곤한 학생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

김 : 아이들 교육이 참 중요하다. 교육을 다시 받으면 각성을 다시 하게 된다. 인권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교육을 받을 때마다 다시 다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학교교사들도 새로운 측면에서 교육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의식도 변화될 수 있고 행동이나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듯. 아이들 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면 집에서 아이들한테 욕하고 제대로 대우 못 받고 하니까 부모교육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10. 빈곤 학생 관련 전문가 면접

김○○(경기도지역 사회복지사)

(2009년 11월 13일 면접)

Q : 어떤 활동과 연구를 해온 사람인가요?

김 : 경기도 부천시 내 중학교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주로 수급권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연계, 상담, 멘토링 등의 자원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빈곤한 아동의 경우 경제력 문제 때문에 취학/진학하기 어렵거나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요?

김 : 빈곤 아동의 경우 특별한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어 예고에 진학하길 원해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일반아동들은 학교교육 외에도 사교육을 받지만 빈곤 아동

들은 공교육 외 다른 교육이나 지원을 받는 아동이 드물어 교육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며 이런 현상은 초, 중, 고를 졸업할수록 더욱 누적되고 심화된다. 또한 학습결손의 누적이 심한 경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Q : 빈곤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겪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경우들이 있을까요? (학교의 관행이나 제도, 교사의 언행, 학생들의 언행 등)

김 : 학년 초 급식지원이나 방과 후 수강권 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떼어와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요. 그런 서류를 떼어와야 할 때 학교가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따로 증명서를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매년 떼어서 제출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으며 그 일이 제일 싫고 반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이이기 할 때는 어떤 학생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출할 때에도 담당교사에 따라 비밀리에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누구누구 이 서류 안 떼어왔다고 말씀하시는 일도 있어, 학생의 개인적인 사항이 반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의 경우 "학부모님께" 라는 문구가 주로 많은데, 빈곤 가정 중에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의 학생도 많아 혼돈과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것 같으며, 외부강사나 교사의 경우도 은연중에 대화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발언들이 많아 학생들이 심리적

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Q : 그런 경험이 빈곤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빈곤한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 심리적 상처, 저학력 유발 등...

김 : 물론 학생들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민한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수치심과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담임선생님과 1년 동안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어 담임선생님과 관계형성에 문제를 일으켜 계속적으로 반항적으로 행동한다거나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많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양육자가 일터에 있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양육자에 의해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여 집 안에서 아이들이 방임되는 경우가 많고, 일탈행동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도 충실히 임하지 못하고 꿈이 없이 무기력하거나 여학생의 경우 일반학생에 비해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 성문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Q : 빈곤한 학생들이 지역 사회(동네)나 가정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과 학교 생활 사이의 관계는?

김 : 지역적인 낙인감이 있어, 이런 것들이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 주변에 영구임대주택이 밀집하여 있다보니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더욱 이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빈곤 아동들의 경우 특히 무기력하고 목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낙인감이 자아존중감

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학교생활에서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기 보다 내성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다.

Q : 학교의 교육 내용 중에서 빈곤 문제나 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빈곤한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불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 : 학교 안에 교육복지사업이 정착되어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빈곤아동들과 일반아동들의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RCY나 기타 교육활동에 빈곤 아동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학교과정안에서 비밀유지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과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 빈곤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교사나 보호자/부모에 대한 교육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김 : 필요하다.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사에 대하여 특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사와 접촉하는 시간도 더 많으며 때문에 인권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인권교육 강의를 의무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 학생인권조례는 용의복장규제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교복이나 용의복장 규제의 폐지가 빈곤한 학생에게 더 많은 열

패감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 : 교복의 폐지가 빈곤학생에게 더 열패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대신 교복을 입는 방법적인 것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교복을 입어도 여학생도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교복의 길이와 두발 같은 것은 자율화 시켜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Q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빈곤한 학생의 인권 상황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김 :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교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첨부 6.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아실현과 교육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한다.

1. 학교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
2. 학생 :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4. 인권 :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인권에 관한 제반 국제조약과 그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각 주체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하고 학생인권침해를 방지·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교육감은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에 대해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 및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1절 일반원칙

제7조(인권보장의 원칙) 이 장에 규정하는 권리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리라고 하여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침의 제시)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제1항의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언급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체벌, 학교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피해의 확대를 방

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권

제12조(수업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법률과 학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업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의 변칙적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참석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는 운동부 학생의 수업받을 권리 등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반하여 학생에게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 등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절 쉬고 여가활동을 누릴 권리

제14조(쉼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① 학교는 학생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에 있어서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제16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소지품검사 등) ① 교직원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 등을 위

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는 학교의 제 규정이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자기정보 관리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등

제20조(종교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④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구성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학교는 제4항의 학생자치기구 구성에 있어서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자격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⑥ 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절 복지권

제23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인간적인 교육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의 권리와 학생인권이 실현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최우선 자원 배정) 교육감과 학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

제25조(제반 법령의 이행) 교육감 및 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제반 법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한 학교급식) ①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교급식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절 학칙 및 징계 관련

제27조(학칙 및 제 규정) ① 학칙 및 학교의 제 규정은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② 학교는 학칙 및 학교의 제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및 제 규정의 제 ·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8조(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청문의 기회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이

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생은 징계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④ 학교는 제1항의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3장 인권교육

제29조(학교 내 인권교육 · 연수) ①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매년 2회 이상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30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 시에 학생인권에 관한 연수를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보호자 교육) 학교는 학생인권의 실현을 위한 보호자와의 협력을 위해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간담회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

제32조(인권실태조사) ① 제35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확정되는 즉시 공표되어야 한다.

제33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학생, 보호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계획의 이행상황을 2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제34조(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인권에 관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받은 자

2.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받은 자

3.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제1항의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3.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4. 기타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⑥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이 위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다만,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 1. 학생인권옹호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 ⑤ 학생인권 옹호관은 10인 이내로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이 복수인 경우에 그 중 1인을 대표옹호관으로 호선할 수 있다.
-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각자의 관할범위를 정해 활동하되, 중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6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4. 학생인권실태조사
- 5. 연차보고서 발행

6. 제2호 내지 제5호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기타 위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대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를 통해 정한다.

제39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력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제40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 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경기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그 권고내용대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7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문,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참여

- 제43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②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도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학교단위의 학생참여) ① 학교의 장은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장 보칙

제45조(민간활동에의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활동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6조(규정개정 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각 학교는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및 국내 법령과 이 조례에서 보장한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장,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학교에 내려 보낼 수 있다.

제47조(학교별 평가)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1. 제41조에 의한 학생인권침해구제신청을 방해한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에 의한 자료요청, 답변요구 및 현장방문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9조(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